

# 우리금융지주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System

본 공시는 '지배구조법령 및 감독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임종룡 임종룡



# 목 차

##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b>1. 지배구조 일반</b> .....	<b>1</b>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	1
나. 지배구조 현황 .....	4
다. 관련 규정 .....	8
<b>2. 이사회</b> .....	<b>9</b>
가. 역할(권한과 책임) .....	10
나. 구성(이사) .....	20
다. 활동내역 .....	32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	45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	47
<b>3. 임원후보추천위원회</b> .....	<b>48</b>
가. 역할(권한과 책임) .....	49
나. 구성 .....	50
다. 선임기준 .....	51
라. 활동내역 및 평가 .....	53
마. 대표이사 후보 추천 관련사항 .....	58
바. 감사위원 후보 추천 관련사항 .....	60
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사항 .....	67
아. 사외이사 재임 여부 및 평가결과 .....	75
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요약 .....	75
차.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75
<b>4. 사외이사 활동 및 보수</b> .....	<b>79</b>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	80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87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	88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	90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	99
바. 사외이사 평가 .....	100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	104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	105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108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	109
<b>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b>	<b>111</b>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	112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	112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	114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	114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	116
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	116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	117
<b>6. 감사위원회 .....</b>	<b>118</b>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19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	126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27
라. 감사보조조직 등 .....	134
<b>7. 리스크관리위원회 .....</b>	<b>136</b>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37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	139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40
<b>8.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b>	<b>148</b>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49
나. 협의 절차(운영현황) .....	149
다. 구성 .....	149
라. 활동내역 및 평가 .....	150
<b>9. ESG경영위원회 .....</b>	<b>158</b>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59
나. 구성(ESG경영위원회 위원) .....	159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61
<b>10. 그룹경영협의회 .....</b>	<b>165</b>
가. 역할 .....	166
나. 구성 .....	166
다. 운영현황 .....	167
라. 활동내역 .....	167

<b>11.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b>	<b>168</b>
가. 역할(권한과 책무)	169
나. 협의절차(운영현황)	169
다. 구성	170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71
<b>12.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b>	<b>183</b>
<b>13.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b>	<b>185</b>
가.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활동 내역	186

## 제2절 보상체계 연차보고서

<b>1. 보상위원회</b>	<b>188</b>
가. 총괄	189
나. 구성	189
다. 권한과 책임	191
라. 보상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93
<b>2. 보상체계</b>	<b>197</b>
가. 주요사항	198
나. 보상 세부사항	201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상 세부사항	202

[첨부] 관련 규정

[첨부] 중임 사외이사 검토보고서

# 제 1 절

##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 1

##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나. 지배구조 현황

다. 관련 규정

## 1. 지배구조 일반

###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고객, 주주, 시장의 깊은 신뢰를 받으며,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금융그룹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 우리금융그룹은 한국ESG기준원이 실시하는 ESG평가에서 종합등급 'A', MSCI 평가에서는 'AA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DJSI) 평가 Asia-Pacific 지수에 3년 연속 편입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등 2019년 우리금융지주회사 출범 후 기업지배구조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연도별 기업지배구조 평가등급 결과】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한국ESG 기준원	-	B+	A	A	A
MSCI	BBB	BBB	AA	AA	AAA

우리금융그룹은 다음과 같은 지배구조의 원칙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이며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효율적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1) 지배구조의 안정성 및 건전성

당사는 이사회 및 내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등의 외부법령과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이사회 규정 등의 내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사외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동 가이드라인은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woorifg.com>)

당사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경영진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법적 요건인 과반수를 훨씬 상회한 86%로,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비율을 평균 95%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담당하도록 규정으로 명문화하였고, 사외이사의 임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켜 당사에서 6년, 자회사 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합산 9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하여 이사회 · 경영진 · 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2)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정에 명문화된 다양성과 전문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당사 이사회 보유 전문분야】

- 필수 전문분야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재무, 법률
- 세부 전문분야 : ESG, 보험업, 증권업, VC

### 【Board Skills Matrix】

구분		사외이사						사내이사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임종룡
필수 역량	금융	●	●	●	●	●		●
	경제			●				●
	경영				●	●		
	회계		●			●		
	재무	●						
	법률						●	
세부 역량	ESG						●	
	보험업		●					
	증권업	●		●	●			
	VC					●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이사들로 어우러진 이사회는 열린 토론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통해 시장 및 금융환경에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 및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시 금융회사 경영에 적합한 전문성과 자질을 고려하고 상호 간의 전문성이 최대한 융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이사회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서 마련된 사외이사 다양성 가이드라인 (다양성 가이드라인 확인 사이트 주소 : <http://www.woorifg.com>)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시, 성별, 인종, 민족, 출신, 국가 또는 국적, 연령, 경험 및 문화적 배경, 종교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2019년 우리금융지주회사 출범 후 이사회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서 사외이사 상시후보군 구성시 여성사외이사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왔습니다.

**참고** 이사회 Gender 다양성 제고를 위한 여성 사외이사 후보군 변동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여성 사외이사 비율	12.5%	20.0%	28.8%	30.5%	41.0%
여성/사외이사 후보군	20명/160명	32명/160명	46명/160명	50명/164명	41명/100명

또한, 2023년 2월 24일 개최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효과적 이사회 기능수행 및 중장기 경영 전략 관점의 핵심역량 시너지 제고를 위한 디지털/ESG분야 상시후보군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 2023년 사외이사 후보군 중점 관리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대 비(%)
디지털 전문가	35명/164명 (21.3%)	24명/100명 (24.0%)	2.7%p↑
ESG 전문가	15명/164명 (9.1%)	12명/100명 (12.0%)	2.9%p↑

당사는 상기와 같이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주주, 금융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폭넓게 고려하여 중요한 결정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투명성**

당사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배구조 구현을 위해 내부규정에서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내부규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과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에 당사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이사회 규정,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일체의 규정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당사의 지배구조 체계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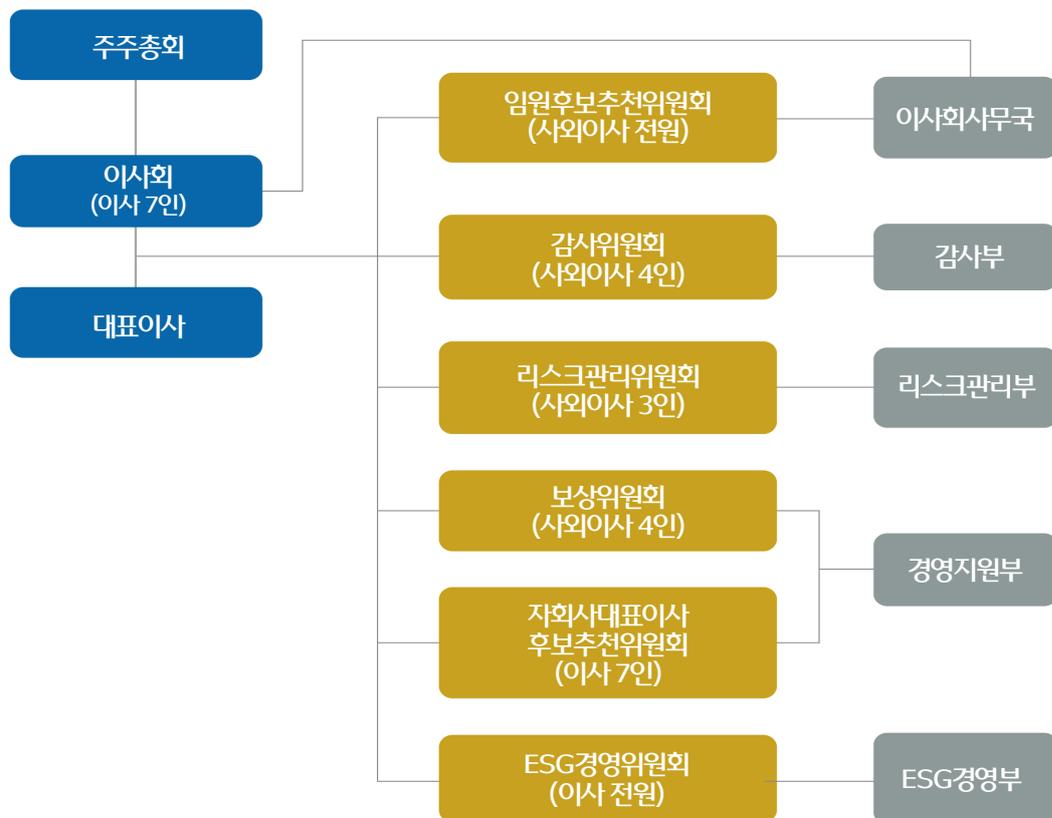
셋째,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 내역 등 지배구조에 관한 주요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시 독립성 및 전문성의 판단기준으로 참고하고 있는 사외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과 사외이사 다양성 가이드라인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내용 확인 사이트 주소 : <http://www.woorifg.com>)

## 나. 지배구조 현황

### (1) 조직도(2023.12월말 기준)



※ 2023.12.8. 이사회사무국을 전략기획부 산하에서 이사회 산하 독립조직으로 분리

## (2) 지배구조의 특징

### (가) 최고이사결정기구로서의 이사회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우리금융그룹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와 경영전략 등을 수립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능한 최고경영진을 육성·선임하는 경영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운영하고 있으며, 공식적이고 투명한 이사후보추천 및 이사선임절차를 마련하는 등 바람직한 기업문화와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이사회 지원 조직인 이사회사무국을 전략기획부에서 이사회 아래 독립조직으로 설치하여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나)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원 총 7인 중 6명이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구성(구성비율 86%)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재무, 법률, ESG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내 위원회 역시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므로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구성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구성원 4인이 모두 금융, 경영, 회계, 재무전문가인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또한 구성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과 대표이사로 구성되고, ESG경영위원회는 이사회 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은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다) 이사회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ESG경영위원회, 총 6개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배구조법 등 법령에 의거 설치가 의무화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외에, 2개의 내위원회는 지배구조의 안정적 운영과 ESG경영 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라) 고객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 준수**

우리금융지주는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으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투자사 결정시 사회책임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당사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수준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2023년 12월 제14차 임시이사회에서 승인된 그룹 중장기 경영전략 8대 핵심 Agenda에 ESG경영고도화 및 주주가치 제고가 포함되었으며, 24년의 7대 경영전략 중 하나로써 사회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상생금융 확대 및 ESG경쟁력 제고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내·외부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니즈를 경영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금융그룹의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향후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주주 이익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 역할 (주요 결의사항)	구 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위원장 (사내/사외이사)	관련규정
이사회	1. 경영목표와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 등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 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6/7	정찬형 (사외이사)	• 정관 • 지배구조내부 규범 • 이사회규정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1.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경영승계계획 수립·점검·보완 3. 후보자 선정원칙 및 자격요건 설정 4. 상시적 후보군 관리 및 검증	6/6	지성배 (사외이사)	• 지배구조내부 규범 •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1. 이사 및 경영진 직무집행 감사 2. 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감사 3.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요청 4.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개폐 5. 감사업무 관련 내규의 제정·개폐	4/4	윤수영 (사외이사)	• 정관 • 지배구조내부 규범 • 감사위원회규정
리스크관리 위원회	1. 그룹 리스크 종합관리 및 통제 등 2.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3.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리스크 한도 설정 및 한도초과 승인 사항 5.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3/3	윤인섭 (사외이사)	• 지배구조내부 규범 •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보상위원회	1. 성과보상체계 설계·운영 적정성 평가 및 심의 2. 보상체계와 재무상황, 감독규정 및 지주회사 내규준수 여부 상시점검 3. 매년 정기적 보상체계 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4/4	신요환 (사외이사)	• 지배구조내부 규범 • 보상위원회규정

내부기관	주요 역할 (주요 결의사항)	구 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위원장 (사내/사외이사)	관련규정
자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관련법령 결격사유 해당여부 검증 3.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수립·변경	6/7	임종룡 (사내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배구조내부 규범</li> <li>자회사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li> </ul>
ESG 경영위원회	1. ESG경영 전략 방향 및 정책 수립 2. ESG경영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6/7	송수영 (사외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배구조내부 규범</li> <li>ESG경영위원회 규정</li> </ul>

### 다. 관련 규정

- 첨부1. 우리금융지주 정관
- 첨부2. 우리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
- 첨부3.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규정
- 첨부4.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첨부5. 우리금융지주 감사위원회 규정
- 첨부6.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 첨부7. 우리금융지주 보상위원회 규정
- 첨부8.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첨부9. 우리금융지주 ESG경영위원회 규정
- 첨부10. 우리금융지주 그룹경영협의회 규정
- 첨부11. 우리금융지주 경영승계 규정

# 2

##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나. 구성(이사)

다. 활동내역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 2. 이사회

### 가. 역할(권한과 책임)

#### (1) 총괄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의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의 수립 등 회사의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의 이해를 해칠 소지가 있거나 법적·절차적·윤리적 측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경영진이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재무, 법률, ESG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들로 구성하여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견제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회사 내·외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에의 구체적인 역할을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 제2항 및 이사회규정 제7조 제1항에 정하고 있으며, 동 내용은 당사 정관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당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하고 평가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제14차 임시이사회에서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 및 2024년 그룹 경영계획(案)’을 아래의 과정을 통해 결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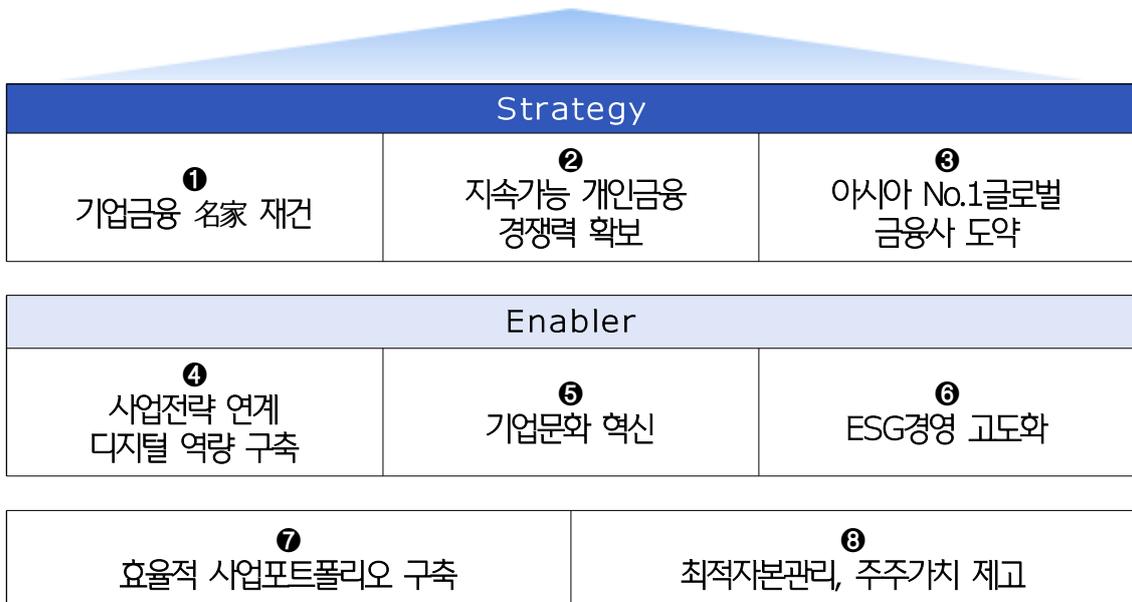
2023년 10월에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11월 23일 전 임원과 사외이사가 참여한 그룹 경영계획 수립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 개최된 제14차 임시이사회에서 2024년 그룹 경영계획(案)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룹 중장기 경영전략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그룹 중장기 Vision을 「핵심역량 집중과 시너지 극대화로 금융평가 완성」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핵심 Agenda를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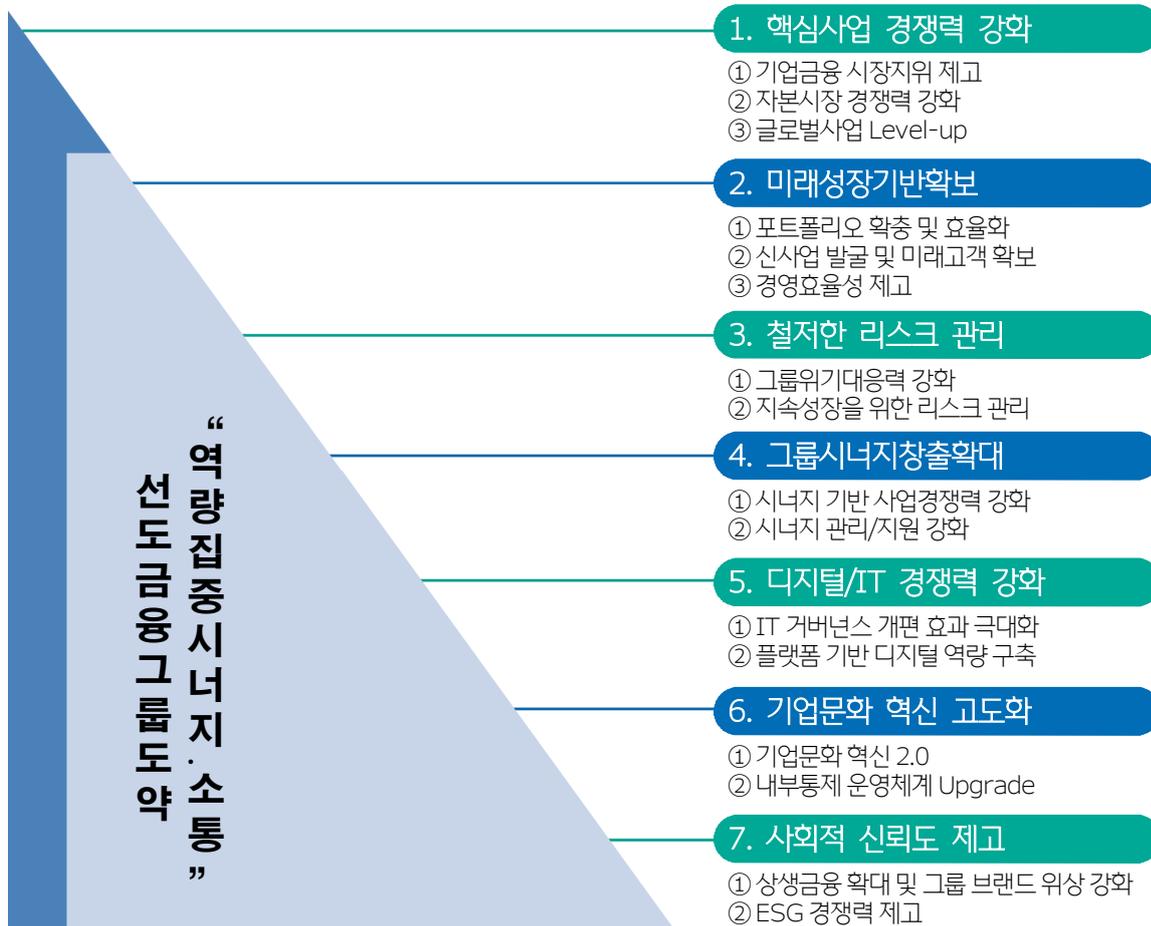
[중장기 Vision 및 8대 핵심 Agenda]

핵심역량 집중과 시너지 극대화로 금융평가 완성



2) 2024년 경영목표는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된 「선도 금융그룹 도약 “역량집중·시너지·소통”」으로 수립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경영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7대 경영전략]



[관련 규정]

-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제2항 제1호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이사회규정 제7조(결의사항 등) 제1항 제2호 가목 그룹 경영목표, 경영전략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정관변경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이사회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중요한 규정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 이사회규정, 이사회내위원회규정, 경영승계규정, 경영진운영규정, 그룹내부통제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규정을 적시하고 기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규정까지 포함하여 해당 규정의 제정 및 폐기 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3일 개최된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변경된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관 제59조(이익배당), 제60조(분기배당) 정관 변경을 통하여 결산배당 기준일 확정절차 변경 및 분기배당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31일, 금융위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발표 및 상장사 정관 개정 등 권고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것입니다.

둘째, 정관 제48조(위원회)에서 이사회내 위원회 중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삭제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검토체계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4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정관변경(案)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이사회와 권한과 책임) 제2항 제2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사회규정 제7조(결의사항 등) 제1항 제7호 중요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2024년도 예산계획의 수립과정은 상기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서 기재한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2023년 12월 개최한 제14차 임시이사회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예산은 경비예산 673억원(전년대비 27억원 증가), 자본예산 20억원(전년수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경비예산은 인건비 472억원, 물건비 201억원으로 수립하였고 자본예산은 IT투자예산 16억원, 업무용 부동산 4억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예산계획과 더불어 결산안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결산안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책임자가 2023년 1월에 초안을 마련하였고, 2023년 2월 8일에 개최한 제2차 정기이사회 결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2023년 3월 외부감사인 검토를 거쳐 2023년 3월 3일 개최한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 제4기 결산 회계감사 결과를 확정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하였고, 2023년 3월 24일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이사회와 권한과 책임) 제2항 제3호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이사회규정 제7조(결의사항 등) 제1항 제2호
  - 가. 그룹 경영목표, 경영전략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2023년 12월 15일 개최한 제14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 자회사 제외(案) 안건이 결의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우리자산운용(존속법인) - 우리글로벌자산운용(소멸법인) 간 합병을 통하여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을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에서 제외하면서 각기 보유한 전문역량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 경영 효율성 증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2항 제4호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이사회규정 제7조(결의사항 등) 제1항 제3호
  - 가. 해산, 영업양도, 합병 및 분할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 나. 자회사 등의 편입 또는 제외에 관한 사항
- 이사회규정 제7조(결의사항 등) 제1항 제4호
  - 가. 주식의 발행 또는 소각
  - 다. 자본금의 변경, 준비금의 자본전입
- 이사회규정 제7조(결의사항 등) 제1항 제6호
  - 나.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 및 자금지원

**(마) 내부통제기준 수립·평가**

우리금융지주의 내부통제기준은 내부통제체제 구축, 내부통제 운영원칙, 준법감시인 제도, 재산운용 및 위험관리, 임직원 행동규범, 기준 준수 점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규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개정은 감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이사의 의결로서 진행됩니다. 내부통제체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은 산하 전담조직의 운영 및 조직별 준법감시담당자를 지정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취약부분을 개선하고, 그 위반자는 내규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3일 개최한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차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내부통제 체제 개편 관련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이사회 의결 후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기타 중요 사항으로 2023년 3월 3일 개최한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2년 자금세탁방지 업무 적정성 평가결과'를 각각 보고받았습니다. 2023년 5월 26일 개최한 제7차 임시이사회에서는 '2022년 내부통제 활동 보고' 및 2023년 10월 26일 개최한 제11차 정기이사회에서는 '2023년 상반기 내부통제 활동 보고'를 각각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회사는 분기 1회 법규준수 점검을 통한 고객정보의 관리 강화 및 지주사 및 계열회사의 고객

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제한사항 분기 점검결과인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2항 제5호 내부통제기준 및 리스크관리기준의 재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이사회규정 제7조(결의사항 등) 제1항 제7호 나목

**(바) 리스크관리기준 수립·평가**

이사회규정 제7조 제1항은 관련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나. 지배구조 현황-(2)지배구조 특징-(다)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이사회 권한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을 개별 이사회 내 위원회에 분산하여 위임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심도있게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이사회규정 제7조 제1항 제11호 라목은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 중 재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사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내 위원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며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운영하되, 이사회내 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전문적 의사결정을 요하는 ‘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다수의 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5조(결의사항) 및 제6조(심의·보고사항)를 통해 다음과 같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5조(결의사항)**

- ①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리스크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가.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나.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라. 그룹리스크관리규정,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폐
    - 마.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2. 리스크측정기준 및 측정방법의 수립 및 변경
  3.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리스크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 승인에 관한 사항
  5.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자금조달계획
  6.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등 적립 기준

- 7.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 대상 신용평가 시스템 및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 사항
- 8.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의사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절차 또는 세부기준 등을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 하거나,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1호 라목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감독당국 규정 등 상위규정의 변경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단순한 용어·자구 수정은 리스크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하며,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6조(심의·보고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이사회 규정 제7조(결의사항 등)에서 정한 결의 대상 중 다음 각 호 등을 포함한 그룹 차원의 중요 경영사항에 수반되는 리스크
  - 가. 조직의 변경
    - (1) 지주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분할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 (2) 자회사등이 실행주체인 조직의 변경과 관련하여 자회사등에 대한 자본 출자 및 신용공여
  - 나. 신사업 진출
    - (1) 자회사등의 설립 또는 편입을 통한 신사업 진출
    - (2) 신사업 진출을 위한 타 금융기관 등과의 업무제휴 또는 자본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협약 체결
  - 다. 대규모 투자
    - (1)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이사회 규정 제7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 신용공여 또는 투자
    - (2)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중요한 계약 체결(차입포함. 단 용역계약은 제외)
- 2.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부문별 리스크관리 상태 및 한도관리 현황
  - 2.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가 심의·결의한 사항
  - 3.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
  - 4. 위원회가 심의·결의하거나 지시한 사항에 대한 진행 현황
  - 5. 그룹의 리스크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 6. 그룹 내부등급법 대상 신용평가 시스템 및 신용리스크 측정요소에 대한 적합성 검증(Validation) 결과
  - 7.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타 중요사항으로 2023년 9월 22일 개최한 제10차 임시이사회에서 우리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수립(案)을 의결하였습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경영위기 상황 대비 자구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작성 지침에 의거 지배구조 수립, 중요자회사 선정 등 7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2023년 10월 10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이사회 의 권한과 책임) 제2항 제5호 내부통제기준 및 리스크관리기준의 재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이사회규정 제7조(결의사항 등) 제1항 제8호 윤리강령,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폐기

### (사) 경영승계 업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육성하고 선임하는 경영승계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기업문화와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 및 제도에 따라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연차보고서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 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경영승계업무'를 이사회의 권한으로 두고 있으나, 상기 (바) 리스크관리기준 수립·평가와 마찬가지로 사유로 다수의 내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7조(결의사항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7조(결의사항 등)

- ①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2. 경영승계규정에 따른 경영승계계획의 수립·점검·보완
  - 3. 후보자의 선정원칙 및 자격요건의 설정
  - 4. 후보자 발굴,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 ② 위원회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후보자 발굴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내용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3년 1월 6일 개최한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 후보 추천 및 심사를 위한 외부 자문기관 선정안 안건을 결의하였으며, 2023년 1월 18일 개최한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승계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상시 관리하는 내부 후보군 보고를 위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보완 및 후보군 관리·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을 결의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후보군은 그룹 경영의 안정적 지배구조 유지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대표이사 후보군(Long-List) 선정안을 의결하여 지주 대표이사 후보군 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 1월 27일 개최한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된 대표이사 후보군 8명(Long-List) 중 전문성, 공정성,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Short-list 4명을 압축, 선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 2월 1일 개최한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된 4명의 Short-list 후보군을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소극적 자격요건 및 적극적 자격요건충족여부를 포함한 자격심사(PT/면접)를 실시하고 동일한 4명을 최종 면접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2월 3일 개최한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의된 4명의 최종 후보군을 대상으로 시행된 2차 심층 면접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대표이사 후보추천안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2월 8일 개최한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점검 및 보완하였으며,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및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임종룡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하였습니다. 임종룡 대표이사 후보는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동일자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3년 3월 7일 개최한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6조 제4항에 의거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후보군 관리자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2항 제6호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이사회규정 제7조(결의사항 등) 제1항 제9호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아)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의 이해상충행위에 대해 감독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을 위하여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상의 기준에 따른 다양한 절차 및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주주·임원과의 거래 등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점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임원과의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이사회는 업무 진행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8일 개최한 제2차 정기이사회와 2023년 7월 21일 개최한 제9차 정기이사회에서는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간 이해상충행위 점검결과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간 이해상충행위 점검은 2020년 12월 18일 제14차 이사회에서 그 감독 방안을 수립하여 결의하였으며, 점검방법으로는 대상자와의 거래내역 취합 후 이사회 사전승인 누락 여부 점검,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점검, 필요시 대상자로부터 확인서 등을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점검이 아닌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상충의 행위 유형을 구체적 항목을 통해 매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2항 제7호 대주주 임원 등과 지주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이사회규정 제7조(결의사항 등) 제1항 제10호 대주주·임원 등과 지주회사 간의 이해상충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자) 주요 이사회 보고사항**

첫째, 이사회규정 제7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와 그 실적', '각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기별로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서 상/하반기 이사회 결의사항 집행결과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매분기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서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실적 전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8일 개최한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는 '2022년 4분기 각 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동 이사회에서 '2022년 하반기 이사회 결의사항 집행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2023년 3월 3일 개최한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이사회 및 내위원회 평가결과'를 통해 차기 이사회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2022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가 도출되었습니다. 2023년 7월 21일 개최한 제9차 정기이사회에서 '2023년 상반기 이사회 결의사항 집행결과' 및 '2023년 2분기 각 위원회 활동 내역'을 보고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개최한 제11차 정기이사회에서 '2023년 3분기 각 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이사회규정 제7조 제3항 제7호에서 '그 밖에 이사회가 보고를 요구하거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3일 개최한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 이사회에서 '2022년 자금세탁방지업무 적정성 평가결과' 및 '2022년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5월 26일 개최한 제7차 임시이사회에서 '2022년 내부통제 활동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2023년 10월 26일 개최한 제11차 정기이사회에서 '2023년 상반기 내부통제 활동 보고'를 통하여 내부통제 체계 및 현황, 주요 이슈를 두루 점검함으로써 이사의 컴플라이언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셋째, 사외이사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3일 개최한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군관리(案) 보고'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군 상시 관리를 통한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이사회 운영 도모 및 선임절차의 객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의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 나. 구성(이사)

### (1) 총괄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의 이사 총원 수는 15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정관 제35조 제1항,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조 제2항, 이사회 규정 제4조) 이 중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이는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최소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배구조법 제12조 제1항)

최소 인원을 3명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의 최소 이사회 총원(상법 제383조 제1항)을 반영한 것이며, 최대 인원수를 15명으로 규정한 것은 의사결정 지연 등 운영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이사회는 모두 7명의 이사(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6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19년 우리금융지주 설립 이후 이사회 구성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 1월 지주 설립 시 : 7명의 이사(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5명, 비상임이사 1명)
  - 2020.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 9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6명, 비상임이사 1명)
    - \* 사내이사 1명(이원덕 이사), 사외이사 1명(첨문약 이사) 신규 선임
  - 2021.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 9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6명, 비상임이사 1명)
    - \* 사외이사 5명 및 사내이사 1명 재선임  
(노성태 이사, 박상용 이사, 정찬형 이사, 전지평 이사, 장동우 이사, 이원덕 이사)
  - 2021.12월 말 : 7명의 이사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 비상임이사 1명)
    - \* 사외이사 2명 사임 (2021. 8월 전지평 이사 사임, 2021. 9월 첨문약 이사 사임)
  - 2022. 1월 임시주주총회 이후 : 9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6명, 비상임이사 1명)
    - \* 사외이사 2명 신규 선임 (윤인섭 이사, 신요환 이사)
  - 2022.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 9명의 이사(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7명, 비상임이사 1명)
    - \* 비상임이사 1명 사임 (2022. 2월 김홍태 이사 사임)
    - 사내이사 1명 사임 (2022. 3월 이원덕 이사 사임)
    - 사외이사 1명 신규 선임 (2022. 3월 송수영 이사 선임)
    - 사외이사 4명 재선임 (2022. 3월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이사 선임)
    - 비상임이사 1명 선임 (2022. 3월 이원덕 이사 선임)
  - 2023.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 8명의 이사(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6명, 비상임이사 1명)
    - \* 사외이사 3명 퇴임 (2023. 3월 노성태, 박상용, 장동우 이사 임기만료)
    - 사내이사 1명 퇴임 (2023. 3월 손태승 이사 임기만료)
    - 사외이사 2명 신규 선임 (2023. 3월 윤수영, 지성배 이사 선임)
    - 사내이사 1명 신규 선임 (2023. 3월 임종룡 이사 선임)

- 2023. 7월 말 : 7명의 이사(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6명)
- \* 비상임이사 1명 사임 (2023. 7월 이원덕 비상임이사 사임)

2023년 12월말 현재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총 7명으로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6명의 사외이사와 임종룡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임기는 2년 이내이고 1년 이내로 연임이 가능하며 최대 재임기간이 6년으로 제한됩니다.

(상법 제383조 제2항,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정관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되고, 재임 중 자격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 ① 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 단,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 ② 이사는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는 투철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며, 지주회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고와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③ 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규정에 따른 대표이사(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관련하여 경영승계규정 제5조에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신규 선

임 및 재선임시 연령은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적극적 요건으로 정관 제38조 제1항,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2항에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전문성(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및 정보기술 등 관련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직무공정성(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윤리책임성(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 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충실성(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이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세우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회사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사회 후보군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활동 역시 특정한 직업군이나 전문성에 편중되지 않은 이사회를 구성하려는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규정하고 매년 1회 이상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군 관리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부서인 이사회사무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수행한 후보군 평가 및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후보군의 주요성과 등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에 부의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결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3년 2월 24일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의 자격요건과 후보군 관리방법 등을 논의하였으며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案)을 결의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7일 개최한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및 다양성 제고를 위해 법률전문가 및 여성 사외이사 후보군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2023년 2월 24일 개최한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디지털/ESG분야 전문가 후보군을 확대하였습니다.

2023년 말 현재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가 보유한 전문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이사회 보유 전문분야】**

- 필수 전문분야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재무, 법률
- 세부 전문분야 : ESG, 보험업, 증권업, VC

(2) 구성원

연차보고서 대상기간인 2023년 중 당사의 이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찬형 (이사회 의장 / 사외이사)

정찬형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로서 2019년 1월 11일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23년 사업 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정찬형 이사회 의장은 2023년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우리금융그룹의 이사회와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 소속 및 주요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내 위원회 (2023년 말)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보상 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ESG경영 위원회
의장	위원	위원	-	위원	위원	위원

■ 주요 경력

1981년~2001년	한국투자신탁 기획부, 국제부, 시흥동지점장
2001년~2003년	한국투자증권 상무 (경영지원, IB)
2003년~2005년	한국투자신탁운용 전무
2005년~2007년	한국투자증권 경영기획실 전무
2007년~2014년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사장
2015년~2018년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2018년~현재	우리은행 사외이사
2019년~현재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② 윤인섭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

윤인섭 이사는 사외이사로서 2022년 1월 27일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이사회내 위원회 소속 및 주요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내 위원회 (2023년 말)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보상 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ESG경영 위원회
이사	위원	-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주요 경력

1987년~1990년	라이나생명보험 근무
1990년~1992년	ING생명보험 자금관리부장
1993년~1994년	ING생명보험 자금관리부 이사
1994년~1995년	ING생명보험 수석 부사장
1995년~2001년	ING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
2002년~2004년	그린화재해상보험 사장
2004년~2004년	KB생명 설립사무국장
2004년~2007년	KB생명 대표이사 사장
2007년~2008년	하나생명 대표이사 사장
2008년~2010년	하나HSBC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
2010년~2017년	한국기업평가 총괄 대표이사
2018년~2021년	푸본현대생명 이사회 의장
2022년~현재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③ 신요환 (보상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

신요환 이사는 사외이사로서 2022년 1월 27일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이사회내 위원회 소속 및 주요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내 위원회 (2023년 말)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보상 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ESG경영 위원회
이사	위원	위원	-	위원장	위원	위원

■ 주요 경력

1988년	신영증권 입사
1996년	신영증권 상품주식운용 팀장
2001년~2003년	신영증권 인사/총무부장
2004년~2011년	신영증권 파생상품본부 담당임원/본부장
2011년~2015년	신영증권 리테일영업본부 본부장
2015년~2017년	신영증권 경영총괄 임원
2017년~2020년	신영증권 대표이사(사장)
2022년~현재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④ 송수영 (ESG경영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

송수영 이사는 사외이사로서 2022년 3월 25일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이사회내 위원회 소속 및 주요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내 위원회 (2023년 말)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보상 위원회	지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ESG경영 위원회
이사	위원	-	위원	-	위원	위원장

■ 주요 경력

2003년~2004년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2010년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2010년~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2019년~현재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
2021년~현재	동반성장위원회 협력사 ESG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022년~현재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⑤ 윤수영 (감사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

윤수영 이사는 사외이사로서 2023년 3월 24일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이사회내 위원회 소속 및 주요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내 위원회 (2023년 말)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보상 위원회	지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ESG경영 위원회
이사	위원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 주요 경력

2000년 ~ 2002년	키움닷컴증권(주) 이사대우
2002년 ~ 2005년	키움닷컴증권(주) 상무
2006년 ~ 2007년	키움증권(주) 영업지원본부 전무
2007년 ~ 2010년	키움증권(주) 경영기획실장, 영업지원본부, 자산운용본부 총괄전무

2010년 ~ 2015년	키움자산운용 대표이사
2016년 ~ 2019년	키움증권(주) 부사장 (리테일총괄본부장 / 전략기획본부장)
2023년~현재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⑥ 지성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

지성배 이사는 사외이사로서 2023년 3월 24일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이사회내 위원회 소속 및 주요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내 위원회 (2023년 말)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보상 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ESG경영 위원회
이사	위원장	위원	-	-	위원	위원

■ 주요 경력

1991년 ~ 1997년	삼일회계법인
1997년 ~ 2000년	CKD창업투자 심사역
2000년 ~ 2000년	아시아벤처금융 심사역
2000년 ~ 2023년	(주)아이엠엠 대표이사
2021년 ~ 2023년	제14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2001년 ~ 현재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2023년 ~ 현재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⑦ 임종룡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사내이사)

임종룡 사내이사는 2023년 3월 24일에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이사회내 위원회 소속 및 주요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내 위원회 (2023년 말)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보상 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ESG경영 위원회
이사	-	-	-	-	위원장	위원

■ 주요 경력

2008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2009년~2010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2010년~2011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1년~2013년	국무총리실 실장
2013년~2015년	NH농협금융지주 회장
2015년~2017년	제5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3년~현재	우리금융그룹 회장

⑧ 노성태 (사외이사) [2023년 3월 임기 만료 퇴임]

노성태 이사는 사외이사로서 2019년 1월 11일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제4기 정기주주총회일 (2023.3.24.)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였습니다. 노성태 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재임 기간 중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이사회내 위원회 소속 및 주요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내 위원회 (2022년 정기주주총회 이후~2023.3.24)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보상 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내부통제관리 위원회	ESG경영 위원회
의장	위원	위원	-	위원	위원	-	위원

■ 주요 경력

2000년	외교통상부장관 자문위원
2001년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 인선위원회 위원
2001년~2004년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이사
2003년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2004년~2005년	명지대 경영대 학장
2004년~2006년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2005년~2007년	한국경제연구원장
2007년~2012년	한화생명 경제연구원장
2012년~2014년	한화생명 고문
2018년~현재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2019년~2023년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⑨ 박상용 (사외이사) [2023년 3월 임기 만료 퇴임]

박상용 이사는 사외이사로서 2019년 1월 11일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제4기 정기주주총회일 (2023.3.24.)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였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 소속 및 주요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내 위원회 (2022년 정기주주총회 이후~2023.3.24.)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보상 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내부통제관리 위원회	ESG경영 위원회
이사	위원	-	위원	위원	위원	위원장	위원

■ 주요 경력

2000년~2002년	연세대학교 재무처장
2002년~2005년	증권연구원 (現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2004년~2005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국회의장 추천)
2004년~2005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2004년~2005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 위원장
2007년~2008년	한국금융학회 회장
2009년~2011년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2009년~2012년	연세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2013년~2015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2017년~2023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2019년~2023년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⑩ 장동우 (사외이사) [2023년 3월 임기 만료 퇴임]

장동우 이사는 사외이사로서 2019년 1월 11일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제4기 정기주주총회일 (2023.3.24.)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였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 소속 및 주요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내 위원회 (2022년 정기주주총회 이후~2023.3.24.)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보상 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내부통제관리 위원회	ESG경영 위원회
이사	위원장	위원	-	-	위원	-	위원

■ 주요 경력

1991년~1994년	영화회계법인 감사본부 재직
1996년~1997년	삼일회계법인 ABAS Leader-AKT 재직
1997년~1998년	동방페레그린 채권팀 재직
1998년~2002년	아이엠엠투자자문 대표 파트너 재직
2003년~현재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재직
2017년~2018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2019년~2023년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⑩ 손태승 (사내이사) [2023년 3월 임기 만료 퇴임]

손태승 이사는 대표이사로서 2019년 1월 11일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제4기 정기주주총회일 (2023.3.24.)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였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 소속 및 주요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내 위원회 (2022년 정기주주총회 이후~2023.3.24.)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보상 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내부통제관리 위원회	ESG경영 위원회
이사	-	-	-	-	위원장	위원	위원

■ 주요 경력

2003년 ~ 2006년	우리은행 전략기획부 부장
2006년 ~ 2010년	우리은행 L.A지점 지점장
2010년 ~ 2012년	우리금융지주 상무대우
2012년 ~ 2014년	우리은행 관악동작영업본부 영업본부장
2014년 ~ 2014년	우리은행 자금시장사업단 상무
2014년 ~ 2015년	우리은행 글로벌사업본부 부행장
2015년 ~ 2017년	우리은행 글로벌그룹 그룹장
2017년 ~ 2017년	우리은행 글로벌부문 부문장
2017년 ~ 2020년	우리은행 은행장
2019년 ~ 2023년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⑫ 이원덕 (비상임이사) [2023년 7월 사임]

이원덕 이사는 비상임이사로서 2022년 3월 25일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2023년 7월 3일 사임하였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 소속 및 주요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내 위원회 (2022년 정기주주총회 이후~2023.7.3.)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보상 위원회	지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내부통제관리 위원회	ESG경영 위원회
이사	-	-	-	-	-	-	위원

■ 주요 경력

- 2009년 ~ 2012년                      우리은행 자금부장
- 2012년 ~ 2013년                      우리금융지주 글로벌전략부장
- 2013년 ~ 2013년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장
- 2013년 ~ 2014년                      우리금융지주 전략기획부장
- 2014년 ~ 2014년                      우리은행 전략사업부 부장대우
- 2014년 ~ 2017년                      우리은행 미래전략부 본부장
- 2017년 ~ 2017년                      우리은행 미래전략단장(상무)
- 2017년 ~ 2018년                      우리은행 경영기획그룹장(상무)
- 2018년 ~ 2020년                      우리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 2020년 ~ 2022년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
- 2022년 ~ 2023년                      우리은행 은행장

(3) 요약

성명	사내/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sup>1)</sup>	재임 기간 <sup>2)</sup>	담당 위원회 <sup>3)</sup>
정찬형	사외이사	이사회위원장	15~18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07~14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05~07 한국투자증권 경영기획실 전무	2019. 1.11	2024. 정기주총	60개월	임추위 감사위 보상위 자추위 ESG위
윤인섭	사외이사	리스크위 위원장	18~21 푸본현대생명 이사회 의장(회장) 10~17 한국기업평가 대표이사 08~10 하나HSBC생명보험 대표이사사장 07~08 하나생명 대표이사사장 04~07 KB생명 대표이사사장	2022. 1.27	2024. 정기주총	24개월	임추위 리스크위 보상위 자추위 ESG위
신요환	사외이사	보상위 위원장	17~20 신영증권 대표이사 15~17 신영증권 경영총괄 임원 11~15 신영증권 리테일 영업본부 본부장	2022. 1.27	2024. 정기주총	24개월	임추위 감사위 보상위 자추위 ESG위
송수영	사외이사	ESG 위원장	10~現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21~現 동반성장위원회 협력사 ESG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07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2022. 3.25	2024. 정기주총	22개월	임추위 리스크위 자추위 ESG위
윤수영	사외이사	감사위 위원장	16~19 키움증권(주) 부사장 10~15 키움자산운용 대표이사 07~10 키움증권(주) 경영기획실장, 영업지원본부/자산운용본부 총괄전무	2023. 3.24	2025. 정기주총	10개월	임추위 감사위 리스크위 보상위 자추위 ESG위
지성배	사외이사	임추위 위원장	21~23 제14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01~現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00~23 (주)아이엠엠 대표이사	2023. 3.24	2025. 정기주총	10개월	임추위 감사위 자추위 ESG위
임종룡	사내이사 (대표이사)	자추위 위원장	23~現 우리금융그룹 회장 15~17 제5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13~15 NH농협금융지주 회장 11~13 국무총리실 실장 10~11 기획재정부 제1차관 09~10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2023. 3.24	2026. 정기주총	10개월	자추위 ESG위

아래는 2023년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및 중도 사임한 이사 명단입니다.

성명	사내/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sup>1)</sup>	재임 기간 <sup>2)</sup>	담당 위원회 <sup>3)</sup>
노성태	사외이사	이사회위원장	18~現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07~12 한화생명 경제연구원장 05~07 한국 경제연구원장	2019. 1.11	2023. 3.24	51개월	임추위 감사위 보상위 자추위 ESG위
박상용	사외이사	내부통제위 위원장	13~15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09~12 연세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07~08 한국금융학회 회장	2019. 1.11	2023. 3.24	51개월	임추위 리스크위 보상위 자추위 내부통제위 ESG위

성명	사내/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sup>1)</sup>	재임 기간 <sup>2)</sup>	담당 위원회 <sup>3)</sup>
장동우	사외이사	임추위 위원장	03~現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98~02 아이엠엠투자자문 대표 파트너	2019. 1.11	2023. 3.24	51개월	임추위 감사위 자추위 ESG위
손태승	사내이사 (대표이사)	자추위 위원장	20~23 우리금융그룹 회장 19~20 우리금융그룹 회장 兼 우리은행 은행장 17~19 우리은행 은행장	2019. 1.11	2023. 3.24	51개월	자추위 내부통제위 ESG
이원덕	비상임이사	-	22~23 우리은행 은행장 20~22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 18~20 우리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2022. 3.25	2023. 7.3	17개월	ESG위

주1) 2023.정기주총=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2024.정기주총=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주2) 재임기간은 최초 선임일 ~ 2023년 12월말 기준

주3) 임추위(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감사위원회), 리스크위(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보상위원회),  
자추위(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통제위(내부통제관리위원회), ESG위(ESG경영위원회)

## 다. 활동내역

### (1) 활동내역 개요

2023년에는 총 14회의 이사회(정기이사회 4회, 임시이사회 10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100%로(2023년 12월말 재임이사 기준) 이사로서 충실한 직무수행과 실질적인 이사회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 (가) 2023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 2023.1.6 (09:00~09:10)

[안건 통지일 : 2023.1.3.(동의서 징구 후 소집통지 단축)]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비고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송수영	손태승	이원덕	
1. 이사 성명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송수영	손태승	이원덕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리스크관리책임자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 의결안건

가) 리스크관리책임자 선임(案):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사 설립 시점부터 CRO로서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오며 전문성 및 실무경험을 축적한 정석영 부사장을 리스크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습니다.

(나) 2023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 2023.2.8. (10:30~11:30)

[안건 통지일 : 2023.2.3.(동의서 징구 후 소집통지 단축)]

항 목	이사회 활동내역									비고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한	장동우	송수영	손태승	이원덕	
1. 이사 성명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한	장동우	송수영	손태승	이원덕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2022년 그룹 재무실적 보고	특이사항 없음	
나. 2022년 결산배당 및 향후계획(案)	특이사항 없음	
다. 2022년 4분기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보고	특이사항 없음	
라.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 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음	
마. 2022년 4분기 각 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	특이사항 없음	
바. 2022년 하반기 이사회 결의사항 집행결과	특이사항 없음	
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보완 및 후보군 관리·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4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 등의 승인(案)	찬성	가결									
나. 전략기획·재무관리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案)	찬성	가결									
다. 이사 후보 확정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 가) 2022년 그룹재무실적 보고: 2022년 그룹의 종합적인 경영분석 및 재무관리 방향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이후 자회사 우리은행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등으로 인한 그룹 연결재무제표관련 당기 순이익 변동으로 제2023-3차 임시이사회 때 제4기(2022.1.1.~2022.12.31)재무제표 등의 변경 승인(案)을 결의하였습니다.
- 나) 2022년 결산배당 및 향후계획(案): 보통주비율 구간 별 총주주환원율을 고려하고 배당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주주환원정책을 보고하였습니다.
- 다) 2022년 4분기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보고: 법규준수 점검을 통한 고객정보의 관리 강화를 위해, 2022년 4분기 지주사 및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제한사항 분기별 점검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라)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행위 점검결과: 2022년 하반기 中 대주주·임원(사외이사 포

- 함)과 지주회사간 거래내역 등 이행상충 여부를 점검하여 보고하였으며 점검결과 이해상충 우려는 없었습니다.
- 마) 2022년 4분기 각 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 2022년 4분기 이사회내 위원회 개최 현황, 결의 및 보고사항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 바) 2022년 하반기 이사회 결의사항 집행결과: 2022년 하반기 이사회에서 결의한 안건의 추진실적, 변동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 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보완 및 후보군 관리·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규정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점검 및 보완하였으며,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 의결안건

- 가) 제4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 등의 승인(案): 2022년 제4기 재무제표 등의 이사회 결의를 얻어 주주총회 6주간 전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배연결당기순이익은 3조 1,693억원으로 전기 대비 5,81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 이후 자회사 우리은행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등으로 인한 그룹 연결재무제표관련 당기순이익 변동으로 제2023-3차 임시이사회 때 제4기(2022.1.1~2022.12.31)재무제표 등의 변경 승인(案)을 결의하였습니다.
- 나) 전략기획·재무관리 주요업무집행 선임(案): 전략기획, 재무관리의 주요업무집행자 선임 관련하여 이사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다) 이사 후보 확정: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및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임종룡님을 대표이사 후보자로 확정하였습니다. 2023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동일자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다) 2023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 2023.3.3 (11:20~11:50)

[안건 통지일 : 2023.2.27.(동의서 징구 후 소집통지 단축)]

항 목	이사회 활동내역									비고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송수영	손태승	이원덕	
1. 이사 성명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송수영	손태승	이원덕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특이사항 없음									
나.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특이사항 없음									
다. 2022년 자금세탁방지업무 적정성 평가결과	특이사항 없음									
라. 2022년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특이사항 없음									
마. 2022년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바. 이사회 및 內위원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특이사항 없음									
사. 사외이사 후보군관리(案)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4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 등의 변경 승인(案)	찬성	가결									
나. 「배당 관련」정관 일부 개정(案)	찬성	가결									
다. 이사 후보 확정	찬성	가결									
라. 이사 보수한도(案)	찬성	가결									
마. 제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案)	찬성	가결									
바. 그룹 탄소배출량 측정시스템 구축 및 관리체계 이행 관련 공동사업 비용분담(案)에 대한 결의	찬성	의결권 제한	가결								
사. 내부통제 관련 정관 등 일부 개정(案)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 가)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매년 점검(설계 및 운영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2022년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유의한 미비점 및 중요 취약점이 없음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나)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법률 및 당사의 내규에 의거하여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적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다) 2022년 자금세탁방지업무 적정성 평가결과: 당사는 그룹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2022년 지주사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양호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라) 2022년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2년 지주회사 감사부의 감사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였습니다.
- 마) 2022년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 점검 결과 보고: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 관련 규제 143개 항목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바) 이사회 및 내위원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차기 이사회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2022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가 도출되었습니다.
- 사) 사외이사 후보군관리(案) 보고: 사외이사 후보군 상시 관리를 통한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이사회 운영 도모 및 선임절차의 객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의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 **의결안건**

- 가) 제4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 등의 변경 승인(案): 제2023-2차 이사회에서 승인한 “제4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 등”에 일부 변경사항(자회사 우리은행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등)이 있어, 이를 반영한 재무제표 등에 대해 수정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① 2022년 그룹 당기순이익은 3조3,240억원으로 역대 최고실적을 시현하였습니다.
  - ② 2022년말 그룹 총자산 480.5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33.3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③ 2022년 은행 당기순이익 2조8,922억원, 비은행부문 당기순이익 5,615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 나) 「배당 관련」 정관 일부 개정(案): 분기배당 실시근거 마련 및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 결의하였습니다.
- 다) 「이사 후보 확정」: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심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정찬형, 신요환 이사는 본인 추천 안건에 대해 이사회 규정 제8조 제3항에 의거 의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 라) 이사 보수한도(案): 우리금융지주 정관 제49조에 따라 이사 보수한도를 전년대와 동일한 32억원으로 책정하여 주주총회에 부의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 마) 제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案): 2023년 3월 24일(금) 제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회의 목적사항을 보고하고 이사회 결의를 하였습니다.
  - 바) 그룹 탄소배출량 측정시스템 구축 및 관리체계 이행 관련 공동사업 비용분담(案)에 대한 결의: 그룹사가 공동으로 탄소배출량 측정시스템 구축 및 관리체계 이행을 추진함에 따라 비용분담(案)은 각사의 사업추진 범위에 따라 비중은 상이하나, 그룹사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원덕 이사는 특별 이해관계자로 이사회규정 제8조 제3항에 의거 의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 사) 내부통제 관련 정관 등 일부개정(案):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내부통제 체계 개편 관련 정관 및 규정 개정을 이사회 의결 후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라) 2023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 2023.3.7. (15:30~15:50)**

[안건 통지일 : 소집통지 생략 동의서 징구]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비고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송수영	손태승	이원덕	
1. 이사 성명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송수영	손태승	이원덕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후보군 관리·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경영진 운영규정 일부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전략기획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리스크관리책임자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준법감시인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 가)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후보군 관리·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자회사대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6조 제4항에 의거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후보군 관리·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 **의결안건**

- 가) 경영진 운영규정 일부 개정(案): 「상무보」 직위 신설 및 「사장, 수석부사장」 직위 폐지로 경영진 운영 규정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 나) 전략기획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정수 상무를 전략기획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하였습니다.
- 다) 리스크관리책임자 선임(案):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박장근 상무를 리스크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습니다.
- 라) 준법감시인 선임(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재화 상무보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마) 2023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 2023.3.24. (13:10~13:20)**

[안건 통지일 : 2023.3.20.(동의서 징구 후 소집통지 단축)]

	이사회 활동내역								비고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임종룡	이원덕	
1. 이사 성명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임종룡	이원덕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임원 선임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대표이사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가결
나. 이사회 의장 선임 등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 가) 임원 선임 보고: 선임된 임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였으며, 디지털/IT부문 전무 옥일진, 미래사업추진부문 상무 김건호, 리스크관리부문 상무 박장근, 전략부문 상무 이정수, 준법감시인 상무보 전재화 등 5명이 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의결안건**

- 가) 대표이사 선임: 2023년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임종룡 이사를 임기 3년의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임종룡 이사는 특별 이해관계자로 이사회규정 제8조 제3항에 의거 의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 나) 이사회 의장 선임 등의 건: 과거 금융회사 CEO 출신으로 금융업에 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식견 통찰력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 및 경륜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정찬형 사외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이사회 의장 유고시 직무대행 순위,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순위, 내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바) 2023년도 제6차 정기이사회 : 2023.4.21. (13:20~14:20)

[안건 통지일 : 2023.4.13.]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비고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임종룡	이원덕	
1. 이사 성명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임종룡	이원덕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출장)	
3. 보고안건									
가. 2023년 1분기 그룹 재무실적 보고	특이사항 없음								
나. 임원 선임 보고	특이사항 없음								
다. 2023년 1분기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특이사항 없음								
라. 2023년 1분기 각 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나.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 가) 2023년 1분기 그룹 재무실적 보고: 2023년 1분기 당기순이익 9,110억원, 2023년 3월 末 그룹 총자산 645.0조원, 우리은행 당기순이익 8,590억원, 비은행 부문 당기순이익 1,03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 나) 임원 선임 보고: 우리금융지주 브랜드부문 장광익 부사장의 임원 선임을 보고하였습니다.
- 다) 2023년 1분기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법규준수 점검을 통한 고객정보의 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1분기 지주사 및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제한사항 분기별 점검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라) 2023년 1분기 각 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 2023년 1분기 이사회내 위원회 개최 현황, 결의 및 보고사항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 의결안건

- 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案): 주주환원정책 다변화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방식, 계약금액 1,000억원, 계약기간 6개월 (2023년 4월 24일 ~ 2023년 10월 24일), 계약기관 한국투자증권의 내용으로 결정하였으며, 취득한 자사주는 신탁계약기간 종료 후 소각하였습니다.
- 나)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규정 개정(案): 우리벤처파트너스(주)의 그룹사 편입에 따라 규정의 적용대상 추가 목적으로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사) 2023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 : 2023.5.26. (13:10~13:40)

[안건 통지일 : 2023.5.18.]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비고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임종룡	이원덕	
1. 이사 성명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임종룡	이원덕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2022년 내부통제 활동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주)우리금융지주-우리종합금융(주) 주식교환계약 체결(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주)우리금융지주-우리벤처파트너스(주) 주식교환계약 체결(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결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가) 2022년 내부통제 활동 보고: 이사회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그룹내부통제규정에 의거 내부통제 체계 개선, 점검활동 등 2022년 내부통제 활동을 보고하였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윤인섭 사외이사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내부통제 활동이 아닌 세심하게 내부통제 미비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의결안건

가) (주)우리금융지주-우리종합금융(주) 주식교환계약 체결(案): 경영효율성 제고, 그룹 일체성 강화 등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상법 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소규모) 교환 방식으로 우리종합금융(주)을 (주)우리금융지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案) 결의를 득하였습니다.

나) (주)우리금융지주-우리벤처파트너스(주) 주식교환계약 체결(案): 그룹내 수익유보, 효율적 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포괄적(소규모) 주식교환방식으로 우리벤처파트너스(주)를 (주)우리금융지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 체결(案) 결의를 득하였습니다.

다)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결정(案):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각각 진행되는 (주)우리금융지주-우리종합금융(주) 및 (주)우리금융지주-우리벤처파트너스(주)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을 결정하였습니다.

(아) 2023년도 제8차 임시이사회 : 2023.6.23. (10:10~10:50)

[안건 통지일 : 2023.6.15.]

항 목	이사회 활동내역								비고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임종룡	이원덕	
1. 이사 성명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임종룡	이원덕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출장)	
3. 의결안건									
가. 경영진 운영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안건

가) 경영진 운영규정 개정(案): 경영진 휴가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경영진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자) 2023년도 제9차 정기이사회 : 2023.7.21. (10:30~11:30)

[안건 통지일 : 2023.7.13.]

항 목	이사회 활동내역								비고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임종룡		
1. 이사 성명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임종룡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2023년 상반기 그룹 재무실적 보고	특이사항 없음								
나. 2023년 2분기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보고	특이사항 없음								
다. 2023년 상반기 이사회 결의사항 집행결과	특이사항 없음								
라. 2023년 2분기 각 위원회 활동 내역	특이사항 없음								
마.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의 이해상충행위 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3년 2분기 배당 실시(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원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주)우리금융지주-우리종합금융(주) 포괄적(소규모) 주식교환 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주)우리금융지주-우리벤처파트너스(주) 포괄적(소규모) 주식교환 승인(案)	찬성	가결						
마. 우리금융그룹 윤리강령 일부 개정(案)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 가) 2023년 상반기 그룹 재무실적 보고: 2023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1조 5,390억원, 2023년 6월 末 그룹 총자산 648.8조원, 우리은행 당기순이익 1조4,720억원, 비은행 부문 당기순이익 1,78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 나) 2023년 2분기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보고: 법규준수 점검을 통한 고객정보의 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2분기 지주사 및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제한사항 분기별 점검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다) 2023년 상반기 이사회 결의사항 집행결과: 2023년 상반기 이사회에서 결의한 안건의 추진실적, 변동사항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 라) 2023년 2분기 각 위원회 활동 내역: 2023년 상반기 이사회내 위원회 개최 현황, 결의 및 보고 사항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 마)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의 이해상충행위 점검결과: 2023년 상반기 中 대주주·임원(사외이사 포함)과 지주회사간 거래내역 등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하여 보고하였으며 점검결과 이해상충 우려는 없었습니다.

■ **의결안건**

- 가) 2023년 2분기 배당 실시(案): 2023년 2분기 배당 실시를 결의하였습니다. 주당 180원의 배당을 통해 총액 총 배당금 약 1,307억원을 2023년 8월 9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 나) 원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案): 적정 자본비율 관리를 위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발행금액은 2,000억원, 금리 5.04%, 만기 없음(영구채 / 콜옵션 5년)으로 2023년 9월 7일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송수영 사외이사는 ESG채권이 발행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그린워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염두 하여 ESG채권이 발행목적에 맞게 충실히 사용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 다) (주)우리금융지주-우리종합금융(주) 포괄적(소규모) 주식교환 승인(案): 2023년 5월 26일 이사회 승인을 얻어 2023년 6월 1일 체결된 (주)우리금융지주와 우리종합금융(주)간 주식교환계약서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결의를 득하여 2023년 8월 8일 지주-종금 소규모 주식교환을 완료하였습니다.
- 라) (주)우리금융지주-우리벤처파트너스(주) 포괄적(소규모) 주식교환 승인(案): 2023년 5월 26일 이사회 승인을 얻어 2023년 6월 1일 체결된 (주)우리금융지주와 우리벤처파트너스(주)간 주식교환계약서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결의를 득하여 2023년 8월 8일 지주-벤처파트너스 소규모 주식교환을 완료하였습니다.
- 마) 「우리금융그룹 윤리강령」 일부 개정(案): 대외적으로 우리금융그룹의 강화된 윤리적 행동기준을 표명하고 대내적으로 그룹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윤리적 기준 제시 및 임직원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우리금융그룹 윤리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AI윤리기준’ 및 ‘협력사 행동규범’을 신설하였고, ‘그룹사간 윤리’ 신설을 통해 상호존중, 협력, 배려를 통한 그룹가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차) 2023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 : 2023.9.22. (10:30~11:30)**

[안건 통지일 : 2023.9.14.]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비고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임종룡	
1. 이사 성명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임종룡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예금보험공사 소유 당사 잔여지분 매입 추진의 건	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								
가. 우리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수립(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가) 예금보험공사 소유 당사 잔여지분 매입 추진의 건: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를 완성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잔여지분 추가 매각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 해소와 당사의 지속적인 주주환원정책의 효율성 및 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잔여지분 매입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 의결안건

가) 우리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수립(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경영위기 상황 대비 자구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지침에 의거 지배구조 수립, 중요자회사 선정 등 7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23년 10월 10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윤수영 이사는 금융사고는 해결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카) 2023년도 제11차 정기이사회 : 2023.10.26. (10:20~11:40)**

[안건 통지일 : 2023.10.18.]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비고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임종룡	
1. 이사 성명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임종룡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2023년 9월까지 그룹 재무실적 보고	특이사항없음							
나. 2023년 상반기 내부통제 활동 보고	특이사항없음							
다. 2023년 3분기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보고	특이사항없음							
라. 2023년 3분기 각 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	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								
가. 2023년 3분기 배당 실시(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 가) 2023년 9월까지 그룹 재무실적 보고: 2023년 9월까지 당기순이익 2조4,380억원, 2023년 9월 末 그룹 총자산 654.6조원, 우리은행 당기순이익 2조2,900억원, 비은행 부문 당기순이익 2,870억원 달성하였습니다.
- 나) 2023년 상반기 내부통제 활동 보고: 이사회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그룹내부통제 규정에 의거 내부통제 혁신과제 실시, 자회사 점검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 등 2023년 상반기 내부통제 활동을 보고하였습니다.
- 다) 2023년 3분기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보고 법규준수 점검을 통한 고객정보의 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3분기 지주사 및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제한사항 분기별 점검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라) 2023년 3분기 각 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 2023년 3분기 이사회내 위원회 개최 현황, 결의 및 보고사항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 의결안건

- 가) 2023년 3분기 배당 실시(案): 2023년 3분기 배당 실시를 결의하였습니다. 주당 180원의 배당을 통해 총액 배당금 약 1,353억원을 2023년 11월 10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타) 2023년도 제12차 임시이사회 : 2023.11.24. (11:00~11:30)**

[안건 통지일 : 2023.11.16.]

항 목	이사회 활동내역								비고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임종룡		
1. 이사성명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임종룡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성과보상환수규정 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안건

- 가) 성과보상환수규정 제정(案):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요건 충족을 위해 성과보상환수 방법, 보고 및 공시, 면책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파) 2023년도 제13차 임시이사회 : 2023.12.8. (09:50~10:00)**

[안건 통지일 : 2023.12.6.(동의서 징구 후 소집통지 단축)]

항 목	이사회 활동내역								비고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임종룡		
1. 이사성명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임종룡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경영진 운영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안건**

가) 경영진 운영규정 개정(案): 전무 직위 삭제 및 직위 개편을 반영하고자 경영진운영규정 일부 개정을 결의를 하였습니다.

**(하) 2023년도 제14차 임시이사회 : 2023.12.15. (15:00~15:50)**

[안건 통지일 : 2023.12.7.]

항 목	이사회별 활동내역							비고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임종룡	
1. 이사성명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임종룡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2022년도 부실정리계획 관련 정리장애요인 해소 조치 결과보고	특이사항없음							
나. 임원 선임 보고	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								
가.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 및 2024년 경영계획(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원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일괄신고서 제출을 통한 원화 선순위채 발행(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우리종합금융 유상증자 참여(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 자회사 제외(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2024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계획(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가) 2022년도 부실정리계획 관련 정리 장애요인 해소 조치 결과보고: 핵심기능의 분리가능성 제고, 일시정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정리 장애요인 해소 조치를 이행하고 이사회에 조치 결과 보고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임원 선임 보고: 선임된 임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였으며, 디지털혁신부문 부사장 옥일진, 리스크관리부문 부사장 박장근, 전략부문 상무 이정수, 홍보실 부사장 정찬호, 성장지원부문 부사장 송운홍, 준법감시인 부사장 전재화, 감사부문 부사장 정규황, 경영지원부문 상무 이해광 등 8명이 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의결안건**

가)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 및 2024년 경영계획(案): 핵심역량 집중과 시너지 극대화로 「금융名家」

완성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에 대한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룹 중장기 8대 전략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업금융 名家 재건
- ② 지속가능 개인금융 경쟁력 확보
- ③ 아시아 No.1 글로벌 금융사 도약
- ④ 사업전략 연계 디지털 역량 구축
- ⑤ 기업문화 혁신
- ⑥ ESG경영 고도화
- ⑦ 효율적 사업포트폴리오 구축
- ⑧ 최적 자본관리, 주주가치 제고

2024년 7대 경영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
- ② 미래 성장기반 확보
- ③ 철저한 리스크관리
- ④ 그룹 시너지 창출 확대
- ⑤ 디지털/IT경쟁력 강화
- ⑥ 기업문화혁신 고도화
- ⑦ 사회적 신뢰도 제고

- 나) 원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案): 적정 자본비율 관리를 위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발행 예정입니다.
- 다) 일괄신고서 제출을 통한 원화 선순위채 발행(案): 일괄신고서 제출을 통한 원화 선순위채 발행에 대한 결의를 득하였습니다.
- 라) 우리종합금융 유상증자 참여(案):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에 대한 출자를 결의하였습니다. 증자 참여금액은 약 5천억원이며 주당 발행금액은 983원, 발행주식수는 508,646,999주입니다.
- 마)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 자회사 제외(案):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의 주주로서 양사간 합병에 동의하고 우리자산운용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에서 합병을 인가하였고, 2024년 1월 29일 합병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성배 이사는 합병 후 연락처를 위해 사무공간의 물리적인 통합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경영 효과성을 위해 중복되는 사업 부문은 조기에 정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바) 2024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계획(案): 2024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개최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립된 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 (1) 이사회 평가

이사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4조(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의거 연1회 이사회의 개최 및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결의하고 연간계획과 이사회 운영 내역을 기초로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 및 감독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매년 2월에 이사회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이사회 평가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평가 세부내용】**

평가주체	이사 전원
평가근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4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제2항
평가주기	1년(매년 2월 평가)
평가기준	① 이사회 구성 (전문성, 다양성, 독립성) ② 이사회 기능과 역할 (경영진 감독, 기업가치 제고) ③ 이사회 운영 (부의 안건 적절성, 안건 검토시간 제공) ④ 사외이사와 경영진간 의사소통
평가방식	설문조사에 의한 절대평가 방식 (5점 척도 설문 평가)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구성 규모가 적정하며, 금융·경제·경영·회계·재무·법률·ESG 등 전문성 및 다양성을 갖춘 이사회구성 과 최대주주, 특수관계인과 관련이 없는 자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확보</li> <li>○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영전략 등을 설정하고, 이를 경영진이 이행하고, 리스크관리 정책과 내부통제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는지 감독하고 있으며, 주주전체의 이익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li> <li>○ 이사회 정기적 개최 및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충실히 운영</li> <li>○ 사외이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시성 있는 경영정보가 제공되고, 이사회 안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고 있으며, 지주 이사회와 자회사간 원활한 교류 및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음</li> <li>○ 보완 및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룹의 시너지효과 확대를 위하여 이사회와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그룹의 주요 자회사의 실질적인 교류 확대가 필요</li> <li>- 공식적 이사회 뿐만 아니라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심도깊은 논의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li> </ul> </li> </ul>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사외이사 평가는 매년 초(2월)에 실시합니다. 사외이사는 자기평가(본인평가), 동료평가(본인을 제외한 사외이사 전원)에 대한 평가) 및 임원평가(지주 상무 이상 임원)로 구성됩니다. 임원평가 시 이사회 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대표이사는 평가자에서 제외됩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역량 및 전문성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회사전략 및 사업계획의 이해도, 회사의 주요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제시를 평가
직무공정성 및 윤리책임성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평가
그룹 발전 기여도	그룹 경영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조언 제시 여부, 경영진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 있는 이견이나 새로운 관점 제시 여부 등을 평가
충실성	이사회 출석률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객관화를 위해 정량지표로 평가

사외이사 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연차보고서 “4.사외이사 활동 및 보수 - 바.사외이사 평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정찬형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해당이 없습니다.

# 3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나. 구성

다. 선임기준

라. 활동내역 및 평가

마. 대표이사 후보 추천 관련사항

바. 감사위원 후보 추천 관련사항

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사항

아. 사외이사 재임 여부 및 평가결과

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요약

차.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며, 후보 추천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사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 및 권한에 대해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3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3조(역할 및 권한)

- ① 위원회는 관련법령, 내규 등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 및 역량을 갖춘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심사·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② 위원회는 지주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임원 후보군 탐색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지주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임원 후보자가 관련법령, 내규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공정하게 검증하여야 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할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전문성 및 다양성 제고를 위해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디지털/IT 및 ESG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범위 내의 취득 가능한 공개정보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후보군의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및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과 소극적 자격요건 부합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조에 따라 전문성과 다양성의 관점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이나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군 관리 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후보군 발굴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내역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관 제36조에 따라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며, 후보군의 관리와 검증을 통하여 압축을 한 후,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거쳐 추천 결의를 하는 등 단계별로 임원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게 됩니다.

당사는 2023년도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총 7회 개최하였는데, 2023.2.3.에 개최된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여 2023년 3월 24일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동일자로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2023.3.2.에 개최된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가 추천되어 2023년 3월 24일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조, 제16조 및 정관 제36조
-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3조 및 제7조

**나. 구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하며, 위원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6조 제1항).

이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주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독립적인 임원 후보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를 규정에 반영한 것입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23년 12월 현재, 위원장 포함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외이사로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위원 중 1인의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중 재임하였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現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장동우	사외이사	위원장	2022.3.25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노성태	사외이사	위원		
박상용	사외이사	위원		
윤인섭	사외이사	위원		
정찬형	사외이사	위원		
신요환	사외이사	위원		
송수영	사외이사	위원		

**【2023.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現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지성배	사외이사	위원장	2023.3.24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윤인섭	사외이사	위원		
정찬형	사외이사	위원		
윤수영	사외이사	위원		
신요환	사외이사	위원		
송수영	사외이사	위원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대표이사 후보는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가 자격요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는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추가 자격요건으로서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및 충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군 자격요건】**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전문성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者	지배구조법 제6조제3항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제3항
공정성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者	
윤리성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한 者	
충실성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 者	

당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외이사 후보 선임원칙 및 후보군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23년도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상세 자격요건은 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의 임원후보 추천 관련 사항에서 기술하였습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바.감사위원후보 추천, 사.사외이사후보 추천 관련사항 참조]

**(2) 후보 추천 절차**

당사는 다양한 분야의 실무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디지털 및 ESG 등 총 9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후보군을 관리하고,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임원, 주주, 외부자문 등을 통해 후보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내부규정은 물론 외부법령에서 요구하는 독립성·전문성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검증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진을 연간 기준으로 개별적 선출 혹은 재선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자, 감사위원,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추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 방식은 경영진이 배제된 채,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 보상위원회는 재무 및 비재무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체계 결정 및 결과 심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례로서, 2023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상위원회에서 임원 성과평가지표 결의시 보통주자본 비율, RAROC,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의 지표가 반영되어 당사의 보상체계가 재무상황 및 위험과 적절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년간 장기성과평가 후 장기성과급 지급 시 만 3년 이상의 이연기간을 적용하여 경영진이 과도하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성과보수의 원칙, 이연지급과 같은 보상체계 관련 법규 전반에 관해 내규 및 운용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년간 장기성과평가 후 장기성과급 지급 시에는, 만 3년 이상의 이연기간을 적용하여 경영진이 과도하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성과보수의 원칙, 이연지급과 같은 보상체계 관련 법규 전반에 관해 내규 및 운용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상위원회에서 연차보상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동 평가에서 당사의 보상정책 및 운영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보상위원회의 구성, 보상 제도의 설계 및 운영, 성과평가기준의 구성, 보상기준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4. 사외이사 활동 및 보수 등 - 바. 사외이사 평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3조 2항, 3항 및 4항
-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34조 1항, 2항, 3항 및 제38조 2항
- 정관 제51조 3항
-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7조 2항 및 11조
- 보상위원회 규정 제4조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3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회가 개최되어,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결의안건 9건이었으며,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5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2회 개최되었습니다.

당사는 2023년 말 기준, 총 100명의 사외이사 상시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3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3.1.6 (09:10~09:40)

[안건통지일 : 2023.1.5(동의서 징구 후 소집통지 단축)]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장동우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송수영	
1. 이사 성명	장동우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대표이사 후보 추천 및 심사를 위한 외부 자문기관 선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가) 대표이사 외부후보군을 추천 의뢰할 국내 주요 서치펌 中 업계 평판, 신뢰도 등을 감안하여 복수 업체 선정에 관한 의결

2023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 추천 및 심사를 위한 외부 자문기관 선정안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동 외부 자문기관은 국내 주요 서치펌 중에서 업계 평판 및 신뢰도 등을 감안하여 복수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나) 2023년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3.1.18. (14:00~18:00)

[안건통지일 : 2023.1.16(동의서 징구 후 소집통지 단축)]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장동우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송수영	
1. 이사 성명	장동우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보완 및 후보군 관리·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대표이사 후보군(Long-list) 선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가) 그룹경영의 안정적 지배구조 유지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보완 및 후보군의 관리·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나) 대표이사 내·외부 후보군(Long-list) 8명 선정

2023년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승계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상시 관리하는 내부 후보군 보고를 위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보완 및 후보군 관리·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그룹경영의 안정적 지배구조 유지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대표이사 내·외부 후보군(Long-List) 8명 선정을 결의하였습니다.

**(다) 2023년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3.1.27. (14:00~17:30)**

[안건통지일 : 2023.1.25(동의서 징구 후 소집통지 단축)]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이사 성명	장동우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대표이사 후보군(Short-list) 선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가) 지주 대표이사 내·외부 후보군 4명 선정

2023년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주 대표이사 내·외부 후보군 8명(Long-List) 중 전문성, 공정성,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Short-list 4명을 압축, 선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라) 2023년도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3.2.1. (13:00~18:00)**

[안건통지일 : 2023.1.31(동의서 징구 후 소집통지 단축)]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이사 성명	장동우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대표이사 후보군(Short-list) 자격심사 및 최종 면접자 선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가) 4명의 내·외부 후보군을 대상으로 자격심사(PT/면접)를 실시하고 동일한 4명에 대해 최종 면접자로 선정

2023년도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된 Short-list 4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포함한 자격심사(PT/면접)를 실시하고 동일한 4명에 대해 최종 면접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마) 2023년도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3.2.3. (13:30~18:00)**

[안건통지일 : 2023.2.2(동의서 징구 후 소집통지 단축)]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장동우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송수영	
1. 이사 성명	장동우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대표이사 후보 추천(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가) 후보군 대상 2차 심층 면접 실시하였고 임종룡 후보를 대표이사로 추천

2023년도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의된 4명의 최종 후보군을 대상으로 시행된 2차 심층 면접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및 최종 대표이사 후보추천안을 결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최종 대표이사 후보로 임종룡 후보가 결의되었습니다.

**(바) 2023년도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3.2.24. (09:20~09:40)**

[안건통지일 : 2023.2.23(동의서 징구 후 소집통지 단축)]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장동우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송수영	
1. 이사 성명	장동우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案)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가) 사외이사 후보군(100명) 관리(案) 결의

2023년도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분야별 적정규모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디지털 및 ESG 각 전문 분야의 사외이사 후보군 100명에 대한 관리안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디지털/ESG’분야의 전문가를 확대하였습니다.

**(사) 2023년도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3.3.2. (10:50~11:10)**

[안건통지일 : 2023.2.27(동의서 징구 후 소집통지 단축)]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장동우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송수영	
1. 이사 성명	장동우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감사위원 후보 추천(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가)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정찬형, 윤수영, 지성배
- 나)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감사위원 후보 추천: 정찬형, 신요환, 윤수영, 지성배

2023년도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와 감사위원 후보 추천안이 결의되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정찬형, 윤수영, 지성배 후보가 결의되었으며, 정찬형 본인에 대한 안건은 이사회 규정 제8조 이해관계자 의결권 제한에 의거 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후보로는 정찬형, 신요환, 윤수영, 지성배 후보가 결의되었으며 정찬형, 신요환 본인에 관한 안건은 이사회 규정 제8조 이해관계자 의결권 제한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3) 평가 및 평가결과**

우리금융지주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2월 전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평가기준에는 구성(전문성), 기능과 역할, 운영, 위원회와 경영진간 의사소통 등이 포함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 세부내용】**

평가주체	위원 전원
평가근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2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제2항, 제3항
평가주기	1년(매년 2월 평가)
평가기준	구성/기능과 역할/운영/위원회와 담당 임원간 의사소통
평가방식	설문조사에 의한 절대평가 방식 (5점 척도 설문 평가)

2023년도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측면에서는, 이사들의 역량 및 경험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수가 효과적인 토의와 활동을 하기에 적당하고, 특정 이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영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임원 후보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정교하고 고도화된 경영승계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측면에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적정하게 개최되고 있으며, 동 위원회 규정이 마련되고, 동 규정에 따라 충실히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경영진간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임원후보 추천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위원 요청시 적시성 있는 추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측면에서는,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금융/경제/경영’ 분야의 후보군을 축소하고, ‘글로벌 분야’를 신설하여 후보군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마. 대표이사 후보 추천 관련사항

### (1) 대표이사 후보 (임종룡)

#### (가) 후보자 인적사항

- ① 성명 : 임종룡
- ② 출생연도 : 1959년
- ③ 출신학교 : 영동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미국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 ④ 경력
 

2008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2009년~2010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2010년~2011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1년~2013년	국무총리실 실장
2013년~2015년	NH농협금융지주 회장
2015년~2017년	제5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3년~현재	우리금융그룹 회장

**(나) 후보제안자**

- ① 후보제안자 :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② 후보자와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후보자 추천이유**

- ① 추천이유
 

후보자는 재경부(現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금융 분야의 공직에서 다양한 국가 정책들을 총괄한 바 있으며, 농협금융지주 회장직을 맡아 재무실적을 크게 개선하고 증권사 인수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관에서 두루 금융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임종룡 후보자가 금융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우리금융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더불어 과감한 조직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임종룡 후보자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 ② 후보자 추천 경로
 

우리금융지주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후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동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선임시 적용된 법령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며,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이사의 자격요건) 및 경영승계규정 제5조(자격요건)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임종룡 후보자에 대한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23년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임종룡 후보자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기까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6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세부 진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일 자	회의체	세부내용
2023. 01. 0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향후 임추위 일정 등에 대해 논의</li> <li>- 후보군 범위 및 선정절차, 자격기준</li> <li>- 외부 자문기관 선정 등</li> </ul>

일 자	회의체	세부내용
2023. 01. 06	2023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이사 후보 추천 및 심사를 위한 외부 자문기관 선정(案)」 결의</li> <li>- 국내 주요 서치펌 中 업계 평판, 신뢰도 등을 감안 복수업체 선정</li> </ul>
2023. 01. 18	2023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보완 및 후보군 관리·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결의</li> <li>- 승계절차 전반 점검 및 상시관리 대상 내부 후보군 보고</li> <li>「대표이사 후보군(Long-list) 선정(案)」 결의</li> <li>- 8명 선정 (내부 5명, 외부 3명)</li> </ul>
2023. 01. 27	2023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이사 후보군(Short-list) 선정(案)」 결의</li> <li>- 4명 선정 (내부 2명, 외부 2명)</li> </ul>
2023. 02. 01	2023년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이사 후보군(Short-list) 자격심사 및 최종 면접자 선정(案)」 결의</li> <li>- 후보군 대상 자격심사(PT 및 면접) 실시</li> <li>- Short-list 4명에 대해 최종 면접자로 선정</li> </ul>
2023. 02. 03	2023년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이사 후보 추천(案)」 결의</li> <li>- 후보군 대상 2차 심층 면접 실시</li> <li>- 최종 대표이사 후보 추천 (임종룡)</li> </ul>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임종룡 후보가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및 풍부한 업무 경험, 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대표이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임종룡 후보자를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임종룡 후보자는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동일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바. 감사위원 후보 추천 관련사항

### (1) 감사위원 후보 (정찬형)

####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 성명 : 정찬형

② 출생연도 : 1956년

- ③ 출신학교 : 광주일고,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고려대 경영대학원 재무론 석사,  
일리노이주립대 국제경영자과정 수료

④ 경력

1981년~2001년	한국투자신탁 기획부, 국제부, 시흥동지점장
2001년~2003년	한국투자증권 상무 (경영지원, IB)
2003년~2005년	한국투자신탁운용 전무
2005년~2007년	한국투자증권 경영기획실 전무
2007년~2014년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사장
2015년~2018년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2018년~현재	우리은행 사외이사
2019년~현재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나) 후보제안자

-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성명: 박상용 (추천 당시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 ② 후보자와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후보자 추천이유

- ① 추천이유
 

후보자 정찬형은 기업 경영인으로서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업 전반에 대한 높은 지식과 업무 이해도가 탁월합니다. 특히 지난 4년간 감사위원장으로 감사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내부통제시스템 적정성, 경영성과 평가 및 개선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며 안정적으로 감사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앞으로도 회사의 건전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선임 추천하였습니다.
- ② 후보자 추천 경로
 

우리금융지주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동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선임시 적용된 법령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후보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과 제6조(사외이사 자격요건)의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정찬형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23년 3월 2일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제7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정찬형 후보가 감사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금융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찬형 후보자를 감사위원 후보자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8조 제2항에 의거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인 의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2) 감사위원 후보 (신요환)**

**(가) 후보자 인적사항**

- ① 성명 : 신요환
- ② 출생연도 : 1962년
- ③ 출신학교 : 부평고,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금융공학석사(MSF)

**④ 경력**

1988년	신영증권 입사
1996년	신영증권 상품주식운용 팀장
2001년~2003년	신영증권 인사/총무부장
2004년~2011년	신영증권 파생상품본부 담당임원/본부장
2011년~2015년	신영증권 리테일 영업본부 본부장
2015년~2017년	신영증권 경영총괄 임원

2017년~2020년	신영증권 대표이사(사장)
2022년~현재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나) 후보제안자**

-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성명: 송수영 (추천 당시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 ② 후보자와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후보자 추천이유**

- ① 추천이유
 

후보자 신요환은 증권사에서 32년간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영업, 인사, 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파생상품본부, 리테일영업본부 등을 두루 거치면서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감사위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하였습니다.
- ② 후보자 추천 경로
 

우리금융지주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동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선임시 적용된 법령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후보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과 제6조(사외이사 자격요건)의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신요환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23년 3월 2일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제7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신요환 후보가 감사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금융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요환 후보자를 감사위원 후보자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8조 제2항에 의거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인 의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 (3) 감사위원 후보 (윤수영)

#### (가) 후보자 인적사항

- ① 성명 : 윤수영
- ② 출생연도 : 1961년
- ③ 출신학교 : 용문고,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 ④ 경력
 

2000년~2002년	키움닷컴증권(주) 이사대우
2002년~2005년	키움닷컴증권(주) 상무
2006년~2007년	키움증권(주) 영업지원본부 전무
2007년~2010년	키움증권(주) 경영기획실장, 영업지원본부, 자산운용본부 총괄전무
2010년~2015년	키움자산운용 대표이사
2016년~2019년	키움증권(주) 부사장 (리테일총괄본부장 / 전략기획본부장)
2023년~현재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 (나) 후보제안자

-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성명: 윤인섭 (추천 당시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 ② 후보자와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다) 후보자 추천이유

- ① 추천이유
 

후보자 윤수영은 증권 및 자산운용 분야에 30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자산운용, 영업지원, 경영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리테일총괄본부, 전략기획본부 등을 두루 거치면서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금융전문가입니다. 또한, 키움자산

운용 대표이사과 키움증권 부사장을 역임하는 등 기업 경영인으로서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그룹의 내부통제 사안을 보다 전문적, 객관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심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우리금융지주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동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선임시 적용된 법령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후보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과 제6조(사외이사 자격요건)의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윤수영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23년 3월 2일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제7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윤수영 후보가 감사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금융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윤수영 후보자를 감사위원 후보자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4) 감사위원 후보 (지성배)**

**(가) 후보자 인적사항**

- ① 성명 : 지성배
- ② 출생연도 : 1967년
- ③ 출신학교 : 동대전고,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④ 경력

1991년~1997년	삼일회계법인
1997년~2000년	CKD창업투자 심사역
2000년~2000년	아시아벤처금융 심사역
2000년~2023년	(주)아이엠엠 대표이사
2021년~2023년	제14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2001년~현재	IMM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2023년~현재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나) 후보제안자**

-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성명: 박상용 (추천 당시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 ② 후보자와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후보자 추천이유**

- ① 추천이유
 

후보자 지성배는 20년 이상 사모펀드 대표로 재임 중인 전문경영인으로서 금융업 전반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로 다년간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당사의 재무 및 회계관련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② 후보자 추천 경로
 

우리금융지주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동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선임시 적용된 법령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후보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과 제6조(사외이사 자격요건)의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지성배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23년 3월 2일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제7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지성배 후보가 감사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금융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성배 후보자를 감사위원 후보자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 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사항

#### (1) 사외이사 후보 (정찬형)

##### (가) 후보자 인적사항

- ① 성명 : 정찬형
- ② 출생연도 : 1956년
- ③ 출신학교 : 광주일고,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고려대 경영대학원 재무론 석사,  
일리노이주립대 국제경영자과정 수료

##### ④ 경력

1981년~2001년	한국투자신탁 기획부, 국제부, 시흥동지점장
2001년~2003년	한국투자증권 상무 (경영지원, IB)
2003년~2005년	한국투자신탁운용 전무
2005년~2007년	한국투자증권 경영기획실 전무
2007년~2014년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사장
2015년~2018년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2018년~현재	우리은행 사외이사
2019년~현재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 ⑤ 당사 사외이사 경력
  - 근무 기간 : 2019.1.11 ~ 현재
  - 근무 기간 중 출석률(2022년 말 기준)

구분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ESG경영 위원회
개최	56	16	50	17	35	8
참여	56	16	49	17	35	8
참석률	100%	100%	98%	100%	100%	100%

(나) 후보제안자

-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성명: 노성태(추천 당시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 ② 후보자와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후보자 추천이유

- ① 추천이유
 

후보자 정찬형은 기업 경영인으로서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업 전반에 대한 높은 지식과 업무 이해도가 탁월합니다. 금융회사 CEO 출신으로 금융업에 대한 실무경험을 기반으로 균형잡힌 의견을 제시하는 등 그룹 재무 및 감사관련 논의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위원장으로서는 그룹 재무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등 회사의 건전경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세심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적극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선보이며 사외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재선임을 추천하였습니다.

- ② 후보자 추천 경로
 

2023년 2월 24일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후보군의 자격요건과 후보군 관리방법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3년 3월 2일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찬형 이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라) 우리금융지주와의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 회사와의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특이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특이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선임시 적용된 법령기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 평가

후보자는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② 우리금융지주가 정한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 자격요건

우리금융지주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 공정성 :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윤리성 :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충실성 :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평가

후보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③ 사외이사 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적극적요건 충족	충족함
3) 현재 겸직 업무	우리은행 사외이사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정찬형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을 위해 2023년 3월 2일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동 제7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정찬형 후보가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우리 금융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찬형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8조 제2항에 의거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인 의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후보 (윤수영)**

(가) 후보자 인적사항

- ① 성명 : 윤수영
- ② 출생연도 : 1961년
- ③ 출신학교 : 용문고,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④ 경력

2000년~2002년	키움닷컴증권(주) 이사대우
2002년~2005년	키움닷컴증권(주) 상무
2006년~2007년	키움증권(주) 영업지원본부 전무
2007년~2010년	키움증권(주) 경영기획실장, 영업지원본부, 자산운용본부 총괄전무
2010년~2015년	키움자산운용 대표이사
2016년~2019년	키움증권(주) 부사장 (리테일총괄본부장 / 전략기획본부장)
2023년~현재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 ⑤ 당사 사외이사 경력  
- 해당사항 없음

(나) 후보제안자

- ① 후보제안자 : 키움증권 (주주)
- ② 후보자와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후보자 추천이유

① 추천이유

후보자 윤수영은 증권 및 자산운용 분야에 30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자산운용, 영업지원, 경영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리테일총괄본부, 전략기획본부 등을 두루 거치면서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금융전문가입니다. 키움자산운용 대표이사과 키움증권 부사장을 역임하는 등 기업 경영인으로서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그룹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강화 등 그룹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2023년 2월 24일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후보군의 자격요건과 후보군 관리방법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3년 3월 2일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윤수영 이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라) 우리금융지주와의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 회사와의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특이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특이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선임시 적용된 법령기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 평가
 

후보자는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② 우리금융지주가 정한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 자격요건
 

우리금융지주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 공정성 :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윤리성 :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충실성 :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평가  
후보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③ 사외이사 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적극적요건 충족	충족함
3) 현재 겸직 업무	해당사항 없음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 결과

윤수영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을 위해 2023년 3월 2일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동 제7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윤수영 후보가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우리 금융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윤수영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3) 사외이사 후보 (지성배)

(가) 후보자 인적사항

- ① 성명 : 지성배
- ② 출생연도 : 1967년
- ③ 출신학교 : 동대전고,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④ 경력

1991년~1997년	삼일회계법인
1997년~2000년	CKD창업투자 심사역
2000년~2000년	아시아벤처금융 심사역

2000년~2023년	(주)아이엠엠 대표이사
2021년~2023년	제14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2001년~현재	IMM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2023년~현재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 ⑤ 당사 사외이사 경력
  - 해당사항 없음

(나) 후보제안자

- ① 후보제안자 :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주) (주주)
- ② 후보자와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후보자 추천이유

- ① 추천이유
 

후보자 지성배는 당사의 재무 및 회계관련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년 이상 사모펀드 대표로 재임 중인 전문경영인으로서 금융업 전반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을 역임한 VC시장의 전문가로서 당사의 신사업 진출 및 M&A 관련하여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하였습니다.
- ② 후보자 추천 경로
 

2023년 2월 24일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후보군의 자격요건과 후보군 관리방법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3년 3월 2일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성배 이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라) 우리금융지주와의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 회사와의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특이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특이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선임시 적용된 법령기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 평가
 

후보자는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② 우리금융지주가 정한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 자격요건
 

우리금융지주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 공정성 :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윤리성 :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충실성 :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평가
 

후보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③ 사외이사 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적극적요건 충족	충족함
3) 현재 겸직 업무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 결과

지성배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을 위해 2023년 3월 2일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동 제7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지성배 후보가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우리 금융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성배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 아. 사외이사 재임 여부 및 평가 결과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 총 4명 중 1명(정찬형)이 연임하였으며, 사외이사로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개월)	연임여부	이사회 등 출석률(%)	평가결과
정찬형	48	연임	99%	적합

\* 재임기간은 최초 선임 이후 ~ 2022년말 기준

\*\* 이사회 등 출석률은 최초 선임 이후 ~ 2022년말까지 이사회 및 내위원회 출석 기준

### 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요약

#### (1) 사외이사 후보 정찬형

정찬형 사외이사는 기업 경영인으로서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업 전반에 대한 높은 지식과 업무 이해도가 탁월합니다. 특히 정보수집력과 분석력이 뛰어나고 경영 현안 관련 이슈 및 의사결정이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잡힌 의견을 제시하는 등 그룹 재무 및 감사관련 논의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위원장으로 그룹 재무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차.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1) 사외이사 후보군 현황

##### (가) 사외이사 후보군 개요

우리금융지주는 주주 및 외부 자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있으며, 추천된 후보군 중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의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자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고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진을 연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선출 혹은 재선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ESG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후보군을 선정하여 전문 분야별로 후보군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절차의 객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은 외부법령 및 내부규범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며, 후보군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부,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충실성을 체크하여 특이사항 발견 시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선정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성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사외이사 전문분야 검증과 교체 대상 사외이사 인원을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사회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다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젠더 다양성을 고려하여 상당수의 여성 후보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나)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우리금융지주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세우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회사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사회 후보군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활동 역시 특정한 직업군이나 전문성에 편중되지 않은 이사회를 구성하려는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규정하고, 매년 1회 이상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군 관리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부서인 이사회사무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수행한 후보군 평가 및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후보군의 주요성과 등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에 부의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결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3년 1월 18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자격요건과 후보군 관리방법 등을 결의하였으며 2023년 2월 24일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案)을 결의하였습니다.

-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에 관해 전문성 분야별 후보군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 이해도, 전문성, 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을 기반으로 하는 세부수립 평가기준 항목을 활용한 적합성 판단
- 사외이사 소극적 자격요건에 관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를 기준으로 후보군 포함

-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후보 추천경로 및 후보의 전문분야를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구성
- 정기적인 외부자문기관 의뢰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검증을 진행하며, 현 임원, 주주, 이사회사무국 등 다른 사외이사 후보 추천경로 활성화 병행
- 이사회 독립성,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재선임후보에 대한 ① 역량 및 전문성, ② 직무공정성 및 윤리책임성, ③ 그룹발전 기여도, ④ 충실성에 근거한 서면조사 및 절대평가
- 젠더(Gender) 다양성 제고 위해 여성 후보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회 전문성 강화 위해 전문분야별 실무 경험 보유자 우대
- 사외이사 선임원칙 및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후보 제외

2023년 2월 24일 개최한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디지털/ESG분야의 전문가를 후보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 후보군 현황**

2023년 3월 2일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의 자격요건과 후보군 관리방법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案)을 결의하였습니다.

2023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주요 사항으로는 2019년~2022년까지 매년 약 160명의 후보군을 상시 관리 중이었으나, 실효성 있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하여 100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젠더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여성 후보군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 및 지속성장과 부합하도록 '디지털/ESG' 분야의 후보군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2023년 사외이사 후보군 중점 관리 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대 비(%)
여성 사외이사	50명/164명 (30.5%)	41명/100 (41.0%)	10.5%p↑
디지털 전문가	35명/164명 (21.3%)	24명/100명 (24.0%)	2.7%p↑
ESG 전문가	15명/164명 (9.1%)	12명/100명 (12.0%)	2.9%p↑

**【2023년 사외이사 후보군 전체 관리 현황】**

구 분	후보군 數 (백분율)		대 비(%)
	2022년	2023년	
금융/경제/경영 전문가	51 (31.1%)	23 (23.0%)	8.1%p↓
법률/회계 전문가	39 (23.8%)	23 (23.0%)	0.8%p↓
소비자보호 전문가	10 (6.1%)	8 (8.0%)	1.9%p↑
디지털 전문가	35 (21.3%)	24 (24.0%)	2.7%p↑
ESG 전문가	15 (9.2%)	12 (12.0%)	2.8%p↑
기타	14 (8.5%)	10 (10.0%)	1.5%p↑
합 계	164	100	-

**【2023년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경로】**

구 분	2022		2023		전년 후보군수	대비 비율
	후보군 수	비율	후보군 수	비율		
1. 주주	6	3.7%	9	9.0%	3↑	5.3%p↑
2. 외부자문기관	38	23.1%	37	37.0%	1↓	13.9%p↑
3. 역대 사외이사(임원)	10	6.1%	10	10.0%	-	3.9%p↑
4. 지원부서(이사회사무국)	110	67.1%	44	44.0%	66↓	23.1%p↓
합 계	164	100%	100	100%	-	-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2023년 3월 3일 개최된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군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3)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사외이사 지원부서인 전략기획실은 2023년 2월 24일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 관리 현황 및 대상 등이 포함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案)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 4

## 사외이사 활동 및 보수

-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 바. 사외이사 평가
-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 4. 사외이사 활동 및 보수

###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 (1)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진행한 주요 발언 및 토의 내용은 하기의 해당 소단원 목차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 소단원 목차 알림
이사회	•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2. 이사회> 다. 활동내역> (2) 회의 개최내역 참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라. 활동내역 및 평가> (2) 회의 개최내역 참조
감사위원회	•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6. 감사위원회> 다. 활동내역 및 평가> (2) 회의 개최내역 참조
리스크관리위원회	•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7. 리스크관리위원회> 다. 활동내역 및 평가> (2) 회의 개최내역 참조
자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8.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라. 활동내역 및 평가> (2) 회의 개최내역 참조
ESG경영위원회	•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9. ESG경영위원회> 다. 활동내역 및 평가> (2) 회의 개최내역 참조
그룹경영협의회	•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0. 그룹경영협의회> 라. 활동내역 및 평가> (2) 회의 개최내역 참조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1.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라. 활동내역 및 평가> (2) 회의 개최내역 참조
보상위원회	• 제2절 보상체계 연차보고서> 1. 보상위원회> 라. 보상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2) 회의 개최내역 참조

(2) 사외이사 개인별 활동내역

(가) 요약 주<sup>1)</sup>

2023년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6인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시간 실적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으며 다음의 소단원에서 개별 사외이사별로 세부설명을 기술하였습니다.

구분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시간 <sup>주2)</sup> (단위: 시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정찬형	14	14	7	7	11	11	-	-	2	2	11	11	3	3	409.7
윤인섭	14	14	7	7	-	-	9	9	2	2	11	11	3	3	398.1
윤수영	10	10	-	-	8	8	8	8	1	1	7	7	3	3	302.1
신요환	14	14	7	7	8	7	1	1	2	2	11	10	3	3	383.2
지성배	10	10	-	-	8	8	-	-	-	-	7	7	3	3	252.8
송수영	14	14	7	7	-	-	9	9	-	-	11	11	3	3	392.6

주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임기 내 개최횟수 기준 기재

주2) 회의참여시간, 사전 간담회 시간, 안건검토시간 등 포함

(나) 사외이사 정찬형

사외이사 정찬형은 2023년 중 개최된 이사회 14회(참석률 1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7회(참석률 100%), 감사위원회 11회(참석률 100%), 보상위원회 2회(참석률 100%),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11회(참석률 100%), ESG경영위원회 3회(참석률 100%)를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안건 및 경영현안 설명을 위한 사전간담회,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그룹 경영계획 수립 토론회, 사외이사 연수 등에 충실히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발언 및 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분야	주요 발언 및 토의 내용
재무관리	주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중요한 네 가지 재무적 관점으로 첫째,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함 둘째, 비이자수익의 확대를 통한 이자수익 의존도 축소 셋째, 국내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글로벌 손익비중 확대 필요 넷째, C/I Ratio 지표의 지속적인 개선을 조언하였음
	'1등 금융그룹' 목표에 다가서기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재 무실적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함
	우수한 재무실적을 성취하기 위해 저원가성 예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 요하며 동시에 경비 절감도 필요함을 강조함
디지털/IT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중요하지만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야 함. 특히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해외시장 진출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ESG	ESG 평가지표도 중요하지만 금융소비자들에게 우리금융그룹이 사회적으로 필요하 고 공공의 선을 실천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사업포트폴리오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의 합병 추진 관련, 합병의 연착륙을 위해 두 회 사간 사업분야 독립성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룹차원의 관리를 당부함
IT거버넌스	IT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사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서별 역할 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산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도 적합하게 설 계할 것을 당부함
그룹 경영계획	향후 경기 둔화로 신용리스크 증가가 예상되는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경쟁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자산성장 달성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
그룹 시너지	그룹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은행과 은행 외 자회사가 상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조율을 담당하는 지주 시너지관리 부문의 역할이 중요함을 상기 시킴

정찬형 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균형감 있는 회의 진행을 통해 원활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냈으며,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 및 경영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정찬형 이사는 과거 금융회사 CEO 출신으로 금융업에 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식견과 통찰력으로 당사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으며, 경륜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리금융그룹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정찬형은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3년 중 총 409.7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윤인섭**

사외이사 윤인섭은 2023년 중 개최된 이사회 14회(참석률 1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7회(참석률 100%), 리스크관리위원회 9회(참석률 100%), 보상위원회 2회(참석률 100%),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11회(참석률 100%), ESG경영위원회 3회(참석률 100%)를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안건 및 경영현안 설명을 위한 사전간담회,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그룹 경영계획 수립 토론회, 사외이사 연수 등에 충실히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발언 및 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분야	주요 발언 및 토의 내용
재무관리	당사 보통주 자본비율과 관련,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함 자산건전성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재무관리부와 리스크관리부 간 협업 강화를 강조함
	우량자산 중심의 자산성장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추가로 RORWA 관리를 통한 균형있는 RWA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리스크관리	지주사 자체정상화계획 수립(案)과 관련하여 건전한 자산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리스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함
내부통제	금융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이상거래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갖추 것을 조언함 내부신고제도와 같이 전반적으로 조직에 긴장감을 주는 조치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함
기업문화	기업문화 혁신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업문화협의회 소속 임직원 대상으로 기업문화의 중요성과 추진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IT거버넌스	IT거버넌스 개편으로 많은 인력이 동시에 이동하게 되므로 조직 개편 초기에는 가급적 전산개발을 자제하며 시스템 안정화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함
그룹 경영계획	그룹 경영계획과 관련하여 영업현장 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한 고객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금융상품, 모바일 UI 등을 개선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를 당부함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위한 핵심 요소는 양질의 인적 자원이며 역량을 갖춘 CIB 인재 양성을 통하여 고객에게 기업금융 관련 종합 솔루션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윤인섭 사외이사는 다수의 금융사 대표이사를 역임한 전문경영인으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국내 금융업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금융전문가입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현재 우리금융그룹의 성장에 대한 경영 노하우 전수와 건전 경영에 대한 감독역할,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이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원활한 이사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외이사 윤인섭은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3년 중 총 398.1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라) 사외이사 윤수영**

사외이사 윤수영은 2023년 중 개최된 이사회 10회(참석률 100%), 감사위원회 8회(참석률 100%), 리스크관리위원회 8회(참석률 100%), 보상위원회 1회(참석률 100%), 자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7회(참석률 100%), ESG경영위원회 3회(참석률 100%)를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안건 및 경영현안 설명을 위한 사전간담회,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그룹 경영계획 수립 토론회, 사외이사 연수 등에 충실히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발언 및 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분야	주요 발언 및 토의 내용
리스크관리	지주사 자체정상화계획 수립(案)과 관련하여 금융사고 발생 후 수습을 위한 해결 방법보다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당부함
재무관리	그룹재무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4분기에는 실적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2024년 영업에 대비하여 자산클린화를 통해 리스크를 제거해야 함을 강조함 NIM 수치 등 여러 재무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영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우리금융그룹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IT거버넌스	IT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하여 새로운 직원들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면 회사의 보안 사항이 유출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한 세심한 대책을 세울 것을 조언함

윤수영 이사는 증권 및 자산운용 분야에 30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자산운용, 영업지원, 경영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리테일총괄본부, 전략기획본부 등을 두루 거치면서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 경영인으로서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그룹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강화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언과 균형잡힌 시각을 제시하는 등 이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윤수영은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3년 중 총 302.1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마) 사외이사 신요환**

사외이사 신요환은 2023년 중 개최된 이사회 14회(참석률 1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7회(참석률 100%), 감사위원회 7회(참석률 87.5%), 리스크관리위원회 1회(참석률 100%), 보상위원회 2회(참석률 100%),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10회(참석률 91%), ESG경영위원회 3회(참석률 100%)를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안건 및 회사 경영현안 설명을 위한 사전간담회 등에 충실히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발언 및 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분야	주요 발언 및 토의 내용
재무관리	우리금융그룹의 보통주 자본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 보통주 자본비율의 적정성을 유지하여 잘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배당 기준일 검토(案)와 관련하여 배당금액을 기준일보다 먼저 확정하면 배당락과 배당금액 간의 오차가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며 연말 배당락에 익숙했던 투자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체계 강화를 당부함
ESG	금융 탄소 감축 목표 이행 활동을 통해 우리에게 발생하는 예상손실과 효용성을 정량적으로 계산해보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 갈지 그룹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사업 포트폴리오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 추진과 관련하여 합병된 회사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경영관리를 당부함

신요환 이사는 증권사에서 32년간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영업, 인사, 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쌓은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금융그룹 발전과 이사회 의 활발한 토의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신요환은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3년 중 총 383.2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바) 사외이사 지성배**

사외이사 지성배는 2023년 중 개최된 이사회 10회(참석률 100%), 감사위원회 8회(참석률 100%),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7회(참석률 100%), ESG경영위원회 3회(참석률 100%)를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안건 및 경영현안 설명을 위한 사전간담회,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그룹 경영계획수립 토론회, 사외이사 연수 등에 충실히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발언 및 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분야	주요 발언 및 토의 내용
사업 포트폴리오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간 합병 추진과 관련하여 합병 후 연락처를 위하여 사무공간의 물리적인 통합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함 합병의 효과성을 위하여 두 회사의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면 조기에 정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IT거버넌스	IT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하여 우수한 인력이 우리금융그룹을 이탈하지 않도록 인력관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
사업 포트폴리오	증권업 진출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되 소형사 등 인수 가능한 증권사를 먼저 확보하고 우리종합금융과 합병 후 중대형사를 추가 인수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킴

지성배 이사는 IMM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당사의 M&A 등 신사업 추진이 실제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시의성 있는 경영 현안처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지성배는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3년 중 총 252.8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사) 사외이사 송수영**

사외이사 송수영은 2023년 중 개최된 이사회 14회(참석률 1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7회(참석률 100%), 리스크관리위원회 9회(참석률 100%),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11회(참석률 100%), ESG경영위원회 3회(참석률 100%)를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안건 및 회사 경영 현안 설명을 위한 사전간담회 등에 충실히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발언 및 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분야	주요 발언 및 토의 내용
ESG	금융 탄소배출량 측정시스템 구축 후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조직과 감독하는 조직 등 업무별 역할 분담을 리스크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명확하게 정리해야 함을 조언함
	원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ESG채권이 발행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마치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ESG 채권이 실제 ESG 목적에 부합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함

관련 분야	주요 발언 및 토의 내용
디지털/IT	IT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하여 IT인프라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막대한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기본 전산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그룹 경영전략	IB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기근무가 필요하지만 장기근무 시 금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역효과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면서 금융사고 리스크는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함

송수영 이사는 법률 및 ESG 전문가이자 젊은 여성 사외이사로서 향후 우리금융그룹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집합적 전문성 제고, ESG 경영 고도화, 그룹의 주력 사업인 디지털과 MZ 마케팅 저변 확대 등 그룹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우리금융그룹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송수영은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3년 중 총 392.6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당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임시의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요 보상하는 손해

#### (가) 임원의 배상책임

임원의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주주나 제3자(종업원, 소비자, 경쟁업체 등)가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당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상

부당행위(Wrongful Act)란, 임원으로서의 의무위반, 태만, 과실, 누락, 허위진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진술을 행하였거나 또는 행하였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임원으로서 배상청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

#### (나) 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Company Reimbursement)

상기 배상청구에 대하여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의 배상책임을 회사가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보상

(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임원의 의도적인 사기행위,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인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함으로 취한 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부정직행위로서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불법으로 사적인 이익 또는 혜택을 획득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타인의 신체장애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 전문직업 수행으로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3) 임원배상책임보험 내역

보험가입은 당사 및 자회사 임원을 포함하여 일괄 가입하고 있으며, 총 보상한도는 500억원(계열사 일괄적용 한도)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해당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기간, 총보상한도, 담보지역
보험기간	2023년 10월~2024년 11월
총보상한도	500억원
담보지역	World-wide (미주 포함)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2023년 우리금융지주 6인의 사외이사들의 교육 및 연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사외이사 구성 기준)

사외이사 성명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최초 선임일자	2019.1.11	2022.1.27	2023.3.24	2022.1.27	2023.3.24	2022.3.25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2023-1.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 2. 7. (3시간) (교육 분야: 경제·금융) - 내용: 2023년 경제·금융정책 방향과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시사점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참석	참석	취임전	참석	취임전	참석
2023-2.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 3. 2. (3시간) (교육 분야: 디지털) - 내용: 차세대 챗봇서비스 ChatGPT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참석	참석	취임전	참석	취임전	참석
2023-3.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 3. 24. (2시간) (교육 분야: 사외이사 Orientation) - 내용: 우리금융그룹 현황, 지배구조 관련 관계법령, 이사회운영 등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023-4.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 4. 20. (3시간) (교육 분야: 리스크관리) - 내용: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시사점 및 자산부채종합관리 대응 방안					

사외이사 성명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최초 선임 일자	2019.1.11	2022.1.27	2023.3.24	2022.1.27	2023.3.24	2022.3.25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023-5.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 4. 21. (3시간) (교육 분야: ESG) - 내용: ESG경영의 이해와 국내외 ESG 금융 동향_온라인 교육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023-6.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 5. 25. (3시간) (교육 분야: 기업문화) - 내용: 우리금융그룹이 지향해야 할 기업문화 사례와 시사점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023-7.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 6. 20. (2시간) (교육 분야: 지배구조) - 내용: [금융연수원 주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대상아님	대상아님	대상아님	대상아님	참석	참석
2023-8.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 6. 22. (3시간) (교육 분야: 경제, 금융, 리스크) - 내용: 23년 하반기 경영환경과 금융산업 전망 23년 하반기 그룹 리스크관리 방향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023-9.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 6. 27. (2시간) (교육 분야: 지배구조) - 내용: [금융연수원 주관]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성과보상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대상아님	대상아님	대상아님	대상아님	참석	참석
2023-10.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 7. 4. (2시간) (교육 분야: 지배구조, 내부통제) - 내용: [금융연수원 주관] 내부통제와 준법경영 핵심 이슈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대상아님	대상아님	대상아님	대상아님	참석	참석
2023-11.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 7. 11. (2시간) (교육 분야: 지배구조) - 내용: [금융연수원 주관] 금융산업의 혁신과 주요 이슈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 감독방향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대상아님	대상아님	대상아님	대상아님	참석	참석
2023-12.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 7. 18. (2시간) (교육 분야: 지배구조, 리스크) - 내용: [금융연수원 주관]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대상아님	대상아님	대상아님	대상아님	참석	참석
2023-13.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2023. 10. 4~11.3 (3시간, 온라인) (교육 분야: 자금세탁방지) - 내용: 자금세탁방지 연수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023-14.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 10. 27. (1시간) (교육 분야: ESG) - 내용: 2024년 국내외 ESG 환경 변화 전망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023-15.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 11. 23. (1시간) (교육 분야: 회계) - 내용: 내부회계 관리제도 연수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023-16.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 12. 8. (3시간) (교육 분야: 경제) - 내용: 2024년 연간 경제 전망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 누적 교육 시간	28	28	22	28	32	38

##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 (1) 사외이사 정찬형

#### (가) 소극적 자격요건

정찬형 사외이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나) 적극적 자격요건

정찬형 사외이사는 당사에서 정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전문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3항에서는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사외이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정찬형 사외이사는 기업 경영인으로서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업 전반에 대한 높은 지식과 업무 이해도가 탁월합니다. 사외이사 선임 후 뛰어난 분석력과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 등 이사회 의사결정의 전문성 제고와 토론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 ㉡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3항에서는 사외이사는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찬형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가 없으며,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한 내역은 없습니다.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 ㉢ 윤리성, 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3항에서는 사외이사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찬형 사외이사는 책임하면서 이사회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㉞ 충실성

당사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14회 참석(참석률 1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7회 참석(참석률 100%), 감사위원회 11회 참석(참석률 100%), 보상위원회 2회 참석(참석률 100%), 자회사대표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 11회 참석(참석률 100%), ESG경영위원회 3회 참석(참석률 100%)을 함으로써 사외이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지배구조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지배구조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증권), 재무분야의 충분한 역량 및 전문성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2) 사외이사 윤인섭

(가) 소극적 자격요건

윤인섭 사외이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나) 적극적 자격요건

윤인섭 사외이사는 당사에서 정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㉞ 전문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3항에서는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사외이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윤인섭 사외이사는 공인회계사로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금융사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한 금융 전문가입니다.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금융그룹의 성장에 대한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사회 운영 관련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이사회 전문성 제고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3항에서는 사외이사는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인섭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가 없으며,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한 내역은 없습니다.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3항에서는 사외이사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인섭 사외이사는 재임하면서 이사회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 충실성

당사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14회 참석(참석률 1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7회 참석(참석률 100%), 리스크관리위원회 9회 참석(참석률 100%), 보상위원회 2회 참석(참석률 100%), 자회사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11회 참석(참석률 100%), ESG경영위원회 3회 참석(참석률 100%)함으로써 사외이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지배구조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지배구조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보험), 회계 분야의 충분한 역량 및 전문성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 (3) 사외이사 윤수영

#### (가) 소극적 자격요건

윤수영 사외이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나) 적극적 자격요건

윤수영 사외이사는 당사에서 정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전문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3항에서는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사외이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윤수영 사외이사는 증권 및 자산운용 분야에 30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자산운용, 영업지원, 경영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리테일총괄본부, 전략기획본부 등을 두루 거치면서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 경영인으로서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경영방향성 및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여러 조언을 해주셨으며, 이사회 운영 관련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이사회 전문성 제고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 ㉡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3항에서는 사외이사는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가 없으며,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한 내역은 없습니다.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

임 후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3항에서는 사외이사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수영 사외이사는 재임하면서 이사회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 충실성

당사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10회 참석(참석률 100%), 감사위원회 8회 참석(참석률 100%), 리스크관리위원회 8회 참석(참석률 100%), 보상위원회 1회 참석(참석률 100%),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7회 참석(참석률 100%), ESG경영위원회 3회 참석(참석률 100%)함으로써 사외이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지배구조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지배구조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증권), 경제 분야의 충분한 역량 및 전문성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4) 사외이사 신요환

(가) 소극적 자격요건

신요환 사외이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나) 적극적 자격요건**

- 신요환 사외이사는 당사에서 정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전문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3항에서는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사외이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신요환 사외이사는 일리노이 주립대학 금융공학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증권사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한 금융전문가입니다. 32년간 증권사에서 근무하며 영업, 인사, 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기업 경영 전반에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기업 경영인입니다. 사외이사 선임 후 자본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이사회 전문성 제고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3항에서는 사외이사는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요환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가 없으며,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한 내역은 없습니다.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3항에서는 사외이사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요환 사외이사는 재임하면서 이사회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 충실성**

당사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14회 참석(참석률 1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7회 참석(참석률 100%), 감사위원회 7회 참석(참석률 87.5%), 리스크관리위원회 1회(참석률 100%), 보상위원회

2회 참석(참석률 100%),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10회 참석(참석률 91%), ESG경영위원회 3회 참석(참석률 100%) 함으로써 사외이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지배구조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지배구조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증권), 경영 분야의 충분한 역량 및 전문성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5) 사외이사 지성배**

**(가) 소극적 자격요건**

지성배 사외이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나) 적극적 자격요건**

지성배 사외이사는 당사에서 정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전문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3항에서는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사외이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지성배 사외이사는 공인회계사로 다년간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20년 이상 사모펀드 대표로 재임 중인 전문경영인으로 금융업 전반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벤처캐피탈 협회장을 역임한 VC시장의 전문가입니다. 전문적 시각을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 관련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하여 이사회 전문성 제고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3항에서는 사외이사는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성배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가 없으며,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한 내역은 없습니다.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당사 내부규범 제7조 제3항에서는 사외이사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성배 사외이사는 재임하면서 이사회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 충실성

당사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10회 참석(참석률 100%), 감사위원회 8회 참석(참석률 100%),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7회 참석(참석률 100%), ESG경영위원회 3회 참석(참석률 100%) 함으로써 사외이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지배구조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지배구조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VC), 회계 분야의 충분한 역량 및 전문성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 (6) 사외이사 송수영

### (가) 소극적 자격요건

송수영 사외이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나) 적극적 자격요건

송수영 사외이사는 당사에서 정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전문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3항에서는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사외이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송수영 사외이사는 사법연수원 제39기를 수료하고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 및 ESG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 및 ESG 전문가입니다. 사외이사 선임 후 법률과 ESG 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안정적인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의견을 개진하여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 ㉡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3항에서는 사외이사는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수영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가 없으며,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한 내역은 없습니다.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㉔ 윤리성, 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3항에서는 사외이사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수영 사외이사는 재임하면서 이사회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㉕ 충실성

당사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14회 참석(참석률 1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7회 참석(참석률 100%), 리스크관리위원회 9회 참석(참석률 100%),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11회 참석(참석률 100%), ESG경영위원회 3회 참석(참석률 100%) 함으로써 사외이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지배구조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지배구조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법률 및 ESG 분야의 충분한 역량 및 전문성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당사 이사회규정 제7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연차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인 2023년 말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전원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바. 사외이사 평가

### (1) 평가 개요

당사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제한하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대 6년간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0조 제5항, 제6항, 제7항)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역량·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매년 이사회에 의한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9년 이사회 규정 제정시 사외이사 평가기준에 대한 외부기관 자문 및 사외이사 외부평가 도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2) 내부평가

#### (가) 개요

- ① 평가 주체 : 이사회는 전년도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를 익년도 초(2월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 평가 기준 : 사외이사별로 역량 및 전문성(금융산업 이해도, 대내외 경제환경 이해도), 직무공정성 및 윤리책임성(전체 주주이익 제고, 고객이익 제고 및 건전성 관리), 그룹 발전 기여도(경영 조언, 경영진 의사소통), 충실성(이사회 출석률)에 대해 설문조사에 의한 절대평가를 실시합니다. 단, 평가항목 객관화를 통한 실질적 평가를 위해 충실성 항목은 출석률로 평가합니다.
- ③ 평가 절차 : 이사회이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와 본인 평가, 동료 평가, 직원 평가를 통해 진행합니다.
- ④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 평가주체·기준·방법 등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료평가, 직원 평가(지주 상무 이상 임원)등 다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충실성 항목은 이사회(내위원회 포함) 출석률로 평가합니다.

#### (나)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 ① 총론

2023년도 당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 본인평가, 동료평가(본인을 제외한 사외이사 전원에 대한 평가), 직원평가(지주 상무 이상 임원)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12월 말 기준 재임 중인 6명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 역량 및 전문성, 기여도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실력 및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당사 내부 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할 때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충분한 자격요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2024년 2월 실시)

1) 사외이사 정찬형

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 주요내용
역량 및 전문성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업 전반에 대한 높은 지식과 업무 이해도가 탁월함</li> <li>이사회 의 전문성 제고와 토론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li> </ul>
직무공정성 및 윤리책임성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중이며 이사회 등에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에 참여함</li> <li>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li> </ul>
그룹 발전 기여도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의장으로서 부드러운 성품과 온화한 지도력을 겸비하였으며, 이사회 결집을 도모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 중</li> <li>직무에 대한 윤리책임성이 강하고,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등 회사의 건전경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음</li> </ul>
충실성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 100%로 사외이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함</li> </ul>

2) 사외이사 윤인섭

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 주요내용
역량 및 전문성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금융회사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금융그룹의 성장에 대한 경영 노하우 전수 및 이사회 운영 관련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으로 이사회 전문성 제고에 기여함</li> </ul>
직무공정성 및 윤리책임성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중이며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li> <li>이사회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에 참여함</li> </ul>
그룹 발전 기여도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룹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그룹 경영 발전에 크게 기여</li> <li>리스크관리위원장으로 불확실한 금융시장환경 속에서 건전 경영에 대한 감독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며 리스크중심의 기업문화 형성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강조</li> </ul>
충실성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 100%로 사외이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함</li> </ul>

3) 사외이사 윤수영

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 주요내용
역량 및 전문성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권 및 자산운용 분야에 30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자산운용, 경영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li> <li>기업 경영인으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방향성 및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여러 조언 및 이사회 운영 관련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이사회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li> </ul>
직무공정성 및 윤리책임성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li> <li>이사회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한 의견 개진 및 이사회 등에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도출함</li> </ul>
그룹 발전 기여도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룹 재무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등 회사의 건전경영에 크게 기여</li> <li>금융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여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이사회 의 활발한 토론 문화를 주도하였으며 구성원의 화합을 추구하는 등 강한 책임의식을 보유함</li> </ul>
충실성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 100%로 사외이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함</li> </ul>

4) 사외이사 신요환

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 주요내용
역량 및 전문성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권사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한 금융전문가임</li> <li>32년간 증권사에서 근무하며 영업, 인사, 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기업 경영 전반에 폭넓은 경험을 가진 기업 경영인임</li> </ul>
직무공정성 및 윤리책임성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중임</li> <li>이사회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도출함</li> </ul>
그룹 발전 기여도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룹 경영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등 회사의 건전한 보상체계 확립에 기여함</li> <li>보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익성과 건전성의 균형잡힌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그룹 발전에 기여</li> </ul>
충실성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 96%로 우수하며 사외이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함</li> </ul>

5) 사외이사 지성배

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 주요내용
역량 및 전문성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인회계사로 다년간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년 이상 사모펀드 대표로 재임 중인 전문경영인으로 금융업 전반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갖추</li> <li>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을 역임한 VC시장의 전문가이며, 이사회 운영 관련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하여 이사회 전문성 제고에 큰 기여도를 보여줌</li> </ul>
직무공정성 및 윤리책임성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중임</li> <li>이사회 의안을 충실하게 사전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중이며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도출함</li> </ul>
그룹 발전 기여도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원추천후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룹의 지배구조 안정화를 위해 경영승계프로그램 내실화, 후보군 관리 체계화 등 부여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li> <li>전문경영인 출신으로 당사의 신사업 진출 및 M&amp;A 관련 의견을 개진하며 이사회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함</li> </ul>
총실성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 100%로 사외이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함</li> </ul>

6) 사외이사 송수영

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 주요내용
역량 및 전문성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법연수원 제39기 출신으로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중이며 금융 및 ESG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 및 ESG 전문가이며 당사 이사회 전문성 제고에 큰 기여도를 보여줌</li> </ul>
직무공정성 및 윤리책임성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중임</li> <li>이사회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도출</li> </ul>
그룹 발전 기여도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SG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ESG사업 추진 및 방향성에대해 실질적 조언과 의견개진으로 ESG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그룹의 지속성장에 크게 기여함.</li> <li>그룹의 ESG 경영 고도화 및 그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IT거버넌스 혁신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그룹의 발전방향 설정에 기여함</li> </ul>
총실성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 100%로 사외이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함</li> </ul>

### (3) 외부평가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이사회규정 제정시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에 대한 근거를 반영하였으며 향후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시에는 '사외이사 외부평가' 또는 '평가기준에 대한 외부기관 자문'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2023년도 당사는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고 있어, 별도의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중 추가 요청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건 부의 부서에 자료 요청 등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2023년 12월말 기준, 당사의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이사회 소속의 이사회사무국에서 총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업무 지원
-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 이사회 및 이사의 평가에 관한 실무 지원
- 이사 선임 관련 실무 지원
- 경영승계프로그램 운영 지원
-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들이 참석하는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충실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현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와 개별 방문을 통해 사외이사들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산업 관련 연수를 진행하고, 사외이사들의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와 이사회내 위원회의 지시사항을 유관부서에 전파하고, 이행결과를 간담회에서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회사 조직 전반에 탄력있고 긴장감있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정찬형

(가) 재직기간

2019년 1월 11일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2023.1.1. ~ 2023.12.31.)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87백만원	-
기본금	54백만원	월 4.5백만원
상여금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수당	22.5백만원	회의참가수당: 이사회, 내위원회 및 간담회 참가시 지급 (동일일자 2개이상 회의 개최시 1회만 지급)
	10.5백만원	이사회 의장 <sup>주1)</sup> 수당 100만원 × 9회 내위원회 위원장 <sup>주2)</sup> 수당 50만원 × 3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해당사항 없음	-
건강검진 지원	연1회 제공	-
차량제공	회의 참석시 제공	-
사무실제공	해당사항 없음	-
기타 편익제공	해당사항 없음	-

주1) 직책 중복수행시 중복지급 없이 1회만 지급(정찬형 이사의 경우 이사회 의장 수당 기준으로 지급)

주2) 직책 중복수행시 중복지급 없이 1회만 지급

(2) 사외이사 윤인섭

(가) 재직기간

2022년 1월 27일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2023.1.1. ~ 2023.12.31.)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83백만원	-
기본금	54백만원	월 4.5백만원
상여금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수당	23백만원	회의참가수당: 이사회, 내위원회 및 간담회 참가시 지급 (동일일자 2개이상 회의 개최시 1회만 지급)
	6백만원	내위원회 위원장 <sup>주1)</sup> 수당 50만원 × 12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해당사항 없음	-
건강검진 지원	연1회 제공	-
차량제공	회의 참석시 제공	-
사무실제공	해당사항 없음	-
기타 편익제공	해당사항 없음	-

주1) 직책 중복수행시 중복지급 없이 1회만 지급

(3) 사외이사 윤수영

(가) 재직기간

2023년 3월 24일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2023.3.24. ~ 2023.12.31.)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59.4백만원	-
기분금	42.4백만원	월 4.5백만원
상여금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수당	12.5백만원	회의참가수당: 이사회, 내위원회 및 간담회 참가시 지급 (동일일자 2개이상 회의 개최시 1회만 지급)
	4.5백만원	내위원회 위원장 <sup>주1)</sup> 수당 50만원 × 9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해당사항 없음	-
건강검진 지원	연1회 제공	-
차량제공	회의 참석시 제공	-
사무실제공	해당사항 없음	-
기타 편익제공	해당사항 없음	-

주1) 직책 중복수행시 중복지급 없이 1회만 지급

**(4) 사외이사 신요환**

**(가) 재직기간**

2022년 1월 27일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2023.1.1. ~ 2023.12.31.)**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83백만원	-
기본금	54백만원	월 4.5백만원
상여금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수당	23백만원	회의참가수당 : 이사회, 내위원회 및 간담회 참가시 지급 (동일일자 2개이상 회의 개최시 1회만 지급)
	6백만원	내위원회 위원장 <sup>주1)</sup> 수당 50만원 × 12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해당사항 없음	-
건강검진 지원	연1회 제공	-
차량제공	회의 참석시 제공	-
사무실제공	해당사항 없음	-
기타 편익제공	해당사항 없음	-

주1) 직책 중복수행시 중복지급 없이 1회만 지급

**(5) 사외이사 지성배**

**(가) 재직기간**

2023년 3월 24일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2023.3.24. ~ 2023.12.31.)**

해당사항 없음

(지성배 이사가 대표펀드매니저로 있는 펀드의 내부 규약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보수 미지급)

(6) 사외이사 송수영

(가) 재직기간

2022년 3월 25일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2023.1.1. ~ 2023.12.31.)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83백만원	-
기본금	54백만원	월 4.5백만원
상여금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수당	23백만원	회의참가수당: 이사회, 내위원회 및 간담회 참가시 지급 (동일일자 2개이상 회의 개최시 1회만 지급)
	6백만원	내위원회 위원장 <sup>주1)</sup> 수당 50만원 × 12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해당사항 없음	-
건강검진 지원	연1회 제공	-
차량제공	회의 참석시 제공	-
사무실제공	해당사항 없음	-
기타 편익제공	해당사항 없음	-

주1) 직책 중복수행시 중복지급 없이 1회만 지급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2023년 당사와 사외이사 등(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소속기관	거래내역
송수영 사외이사	법무법인(유한)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기타 기본 자본 인정 여부 등 법률 검토 ('23.02.01~'23.02.10, 7백만원(VAT별도), 재무관리부)</li> <li>•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기타 기본 자본 인정여부 등 법률 검토 ('23.08.21~'23.09.07, 7백만원(VAT별도), 재무관리부)</li> </ul>

☞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은 매 반기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간 이해상충행위 점검' 실시 후 이사회에 그 내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점검 결과 2023년도에는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상기 법무법인(유한) 세종과의 거래내역은 거래의 지속성, 거래규

모 및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시 주된 법률자문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문료가 통상적인 수준으로 적정합니다. 또한, 지주회사가 현저하게 불리한 거래를 하거나 소속 사외이사로부터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받은 바 없습니다.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sup>주1)</sup>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sup>주2)</sup>	직위	경력
노성태	'19.1.11	'23.3.24	51개월	임추위('19.1.11~'23.3.24) 감사위('19.1.11~'23.3.24) 보상위('19.1.11~'23.3.24) 자추위('19.1.11~'23.3.24) ESG위('21.3.26~'23.3.24)	이사회위원장 ( '19.1월~'23.3월) ESG경영위 위원장 ( '21.3월~'22.3월)	한국 경제연구원장
박상용	'19.1.11	'23.3.24	51개월	임추위('19.1.11~'23.3.24) 리스크('19.1.11~'23.3.24) 보상위('19.1.11~'23.3.24) 자추위('19.1.11~'23.3.24) 내통위('20.3.25~'23.3.24) ESG위('21.3.26~'23.3.24)	리스크관리위 위원장 ( '19.1월~'22.3월) 내부통제관리위 위원장 ( '20.3월~'23.3월)	연세대 교수
정찬형	'19.1.11	'24. 정기주총	60개월	임추위('19.1.11~) 감사위('19.1.11~) 보상위('19.1.11~) 자추위('19.1.11~) 리스크('21.9.10~'22.1.27) ESG위('21.3.26~)	감사위 위원장 ( '19.1월~'23.3월) 보상위 위원장 ( '19.1월~'22.3월)	포스코 기술투자 사장
전지평	'19.1.11	21.8.31 사임	32개월	임추위('19.1.11~'21.8.31) 리스크('19.1.11~'21.8.31) 보상위('19.1.11~'21.8.31) 자추위('19.1.11~'21.8.31) ESG위('21.3.26~'21.8.31)	-	북경 FUPU DAOHE 투자관리 유한공사 부총경리
장동우	'19.1.11	'23.3.24	51개월	임추위('19.1.11~'23.3.24) 감사위('19.1.11~'23.3.24) 보상위('19.1.11~'22.3.25) 자추위('19.1.11~'23.3.24) ESG위('21.3.26~'23.3.24)	임추위 위원장 ( '19.1월~'23.3월)	아임엠엠 인베스트먼트 대표
첨문악	'20.3.25	21.9.16 사임	18개월	임추위('20.3.25~'21.9.16) 리스크('20.3.25~'21.9.16) 보상위('20.3.25~'21.9.16) 자추위('20.3.25~'21.9.16) ESG위('20.3.25~'21.9.16)	-	중국푸본은행 부회장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sup>주1)</sup>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sup>주2)</sup>	직위	경력
윤인섭	'22. 1.27	'24. 정기주총	24개월	임추위('22.1.27~) 리스크('22.1.27~) 보상위('22.1.27~) 자추위('22.1.27~) 내통위('22.1.27~'22.3.25) ESG위('22.1.27~)	리스크관리위 위원장 ('22.3월~)	푸분현대생명 이사회 의장 (회장)
신요환	'22. 1.27	'24. 정기주총	24개월	임추위('22.1.27~) 리스크('22.1.27~) 보상위('22.1.27~) 자추위('22.1.27~) 내통위('22.1.27~'23.3.24) ESG위('22.1.27~)	보상위 위원장 ('22.3월~)	신영증권 대표이사
송수영	'22. 3.25	'24. 정기주총	22개월	임추위('22.3.25~) 자추위('22.3.25~) 리스크('22.3.25~) 내통위('22.3.25~'23.3.24) ESG위('22.3.25~)	ESG경영위 위원장 ('22.3월~)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변호사
윤수영	'23. 3.24	'25. 정기주총	9개월	임추위('23.3.24~) 감사위('23.3.24~) 리스크위('23.3.24~) 보상위('23.3.24~) 자추위('23.3.24~) ESG위('23.3.24~)	감사위 위원장 ('23.3월~)	키움증권(주) 부사장
지성배	'23. 3.24	'25. 정기주총	9개월	임추위('23.3.24~) 감사위('23.3.24~) 자추위('23.3.24~) ESG위('23.3.24~)	임추위 위원장 ('23.3월~)	아임엠엠 인베스트먼트 대표

주1) '24정기주총 =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25정기주총 =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주2) 감사위(감사위원회), 보상위(보상위원회), 임추위(임원후보추천위원회), ESG위(ESG경영위원회), 자추위(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리스크관리위원회), 내통위(내부통제관리위원회)

# 5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 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우리금융그룹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 을 위해 2019년 1월 11일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고 경영승계규정에 대한 최근의 개정은 2020년 1월 2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 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육성프로그램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입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은 이사회가 연 1회 이상 점검하 고 있습니다.

###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 (1) 일반

당사는 2019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내 위원회로 설치하여 그룹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점검함으로써 그룹경영의 안정적 지배구조 유지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 (가) 최고경영자 자격요건

당사는 경영승계규정 제5조에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 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 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신규 선임 및 재선임시 연령 은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나)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당사는 선임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승계규정 제6조에 의거 다양한 추천 경로를 통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시후보군은 법 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우리금융그룹의 5대 리더상인 통찰, 도전, 혁신, 신뢰, 소통에 부합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보유한 후보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습 니다.

우리금융그룹의 5대 리더상을 반영한 적극적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통찰: 금융시장 이해, 전략적 사고, 경영성과 달성, 업무 경험
- (2) 도전: 도전 정신, 위기 관리, 조직문화 개선, 신사업 발굴
- (3) 혁신: 문제해결능력, 글로벌 진출, 미래 성장성
- (4) 신뢰: 도덕성, 원칙 준수, 내부통제, 동반 성장, 객관성
- (5) 소통: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시너지 창출, 책임 경영

또한, 최고경영자 상시 내부후보군에 대한 교육을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회와 상시 내부후보군의 주기적인 교류를 위한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 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유 및 시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대표이사 임기 만료 4개월 전 경영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 추천에 관한 업무를 종료합니다.

#### (라) 최종후보자 추천 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법령, 내규 및 경영승계계획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하고, 우리금융그룹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고려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심의합니다.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후보자에 대한 단계별 면접·심사 등의 평가/검증을 거쳐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3조에서 정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로 최종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 (마) 경영승계절차

추천된 최종후보자는 이사회에서 후보 확정 후 당사 정관 제36조 및 제40조에 의거 주주총회 결의로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후속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경영승계절차가 종료됩니다.

#### (바) 후보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 후보군 대상 기존 임원과 차별화된 육성프로그램 운영으로 연중 최고경영자로서의 역량 개발 및 이사회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무 전문성 및 조직관리, 리더십 등 비업무분야 관련 역량 강화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코칭 등을 활용하며, 경영현황보고/전략과제 발표 형식의 경영성과 및 역량 검증 기획 마련을 위해 Board Succession Day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평가 결과는 Long list 선정 시 활용됩니다.

### (2) 비상계획

당사는 최고경영자가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사회 의장은 사유 발생 24시간 내 즉각 이사회를 소집하고 7영업일 내 선임절차 및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한 일정을 확정하고 30일 내 신입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하여 승계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또한 최고경영자 유고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24일 개최된 제5차 임시이사회에

서 ① 비상임이사, ② 경영진 中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 순위를 결의하였습니다.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일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하되, 상법 제408조에서 규정한 회사의 상무(常務)에 한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 (1) 소극적 요건

당사는 임종룡 후보를 2023년 2월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하였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2) 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① 자격요건

당사 경영승계규정에서는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 만 70세 미만

#### ② 충족사유

대표이사 회장 추천후보로 추천된 임종룡 후보자는 민관을 두루 거친 금융전문가로 꼽히며,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및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조직관리 역량과 검증된 경영능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종룡 후보자가 금융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우리금융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과감한 조직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내역

당사는 대표이사 손태승 회장의 임기가 2023년 3월 만료됨에 따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4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향후 후보군 범위 및 선정절차, 자격기준, 외부 자문기관 선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후 2023년 1월 6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 후보 추천 및 심사를 위한 외부 자문기관 선정(案)」을 결의하였

습니다.

2023년 1월 18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승계절차 전반 점검 및 상시관리하는 내부후보군 보고를 위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보완 및 후보군 관리·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을 결의하였으며, 추가로 「대표이사 후보군(Long-list) 선정(案)」을 결의하였습니다. 2023년 1월 27일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 후보군(Short-list) 선정(案)」을 결의하였고, 2023년 2월 1일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후보자 대상 자격심사(PT 및 면접)를 심사 후 「대표이사 후보군(Short-list) 자격심사 및 최종 면접자 선정(案)」을 결의하였습니다.

2023년 2월 3일 후보군 대상 2차 최종 면접 실시 후 '임종룡 후보자'를 최종 대표이사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였고, 2023년 3월 24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회의체	세부내용
2023. 1.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향후 임추위 일정 등에 대해 논의</li> <li>- 후보군 범위 및 선정절차, 자격기준 / 외부 자문기관 선정 등</li> </ul>
2023. 1. 6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이사 후보 추천 및 심사를 위한 외부 자문기관 선정(案)」 결의</li> <li>- 국내 주요 서치펌 中 업계 평판, 신뢰도 등을 감안 복수업체 선정</li> </ul>
2023. 1. 18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보완 및 후보군 관리·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결의</li> <li>- 승계절차 전반 점검 및 상시관리하는 내부 후보군 보고</li> <li>• 「대표이사 후보군(Long-list) 선정(案)」 결의</li> <li>- 8명 선정 (내부 5명, 외부 3명)</li> </ul>
2023. 1. 27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이사 후보군(Short-list) 선정(案)」 결의</li> <li>- 4명 선정 (내부 2명, 외부 2명)</li> </ul>
2023. 2. 1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이사 후보군(Short-list) 자격심사 및 최종 면접자 선정(案)」 결의</li> <li>- 후보군 대상 자격심사(PT 및 면접) 실시</li> <li>- Short-list 4명에 대해 최종 면접자로 선정</li> </ul>
2023. 2. 3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이사 후보 추천(案)」 결의</li> <li>- 후보군 대상 2차 심층 면접 실시</li> <li>- 최종 대표이사 후보 추천 (임종룡)</li> </ul>
2023. 2. 8	제2차 정기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 후보 확정」 결의</li> <li>- 임종룡 후보자를 임기 3년의 대표이사 후보로 확정</li> </ul>
2023. 3. 24	제4기 정기주주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내이사 선임</li> </ul>
	제5차 임시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이사 선임</li> </ul>

##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당사의 경영승계규정 제6조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는 최고경영자 후군을 선발하며 후보군 선발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대해 매년 검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후보군의 자격요건 설정, 자격요건 검증, 후보군 확정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당사는 그룹경영의 안정적 지배구조 유지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보완 및 후보군 관리·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을 매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에 해당 내용을 준비하여 2024년 2월 6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그룹경영의 안정적 지배구조 유지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자회사 대표이사 등을 최고경영자 상시 내부후보군으로 선정하여 기존 임원과 차별화된 양성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최고경영자 내부 후보군으로서의 역량 개발 및 이사회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자문기관을 활용하여 상시 외부후보군 Pool을 추천받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자를 상시 외부후보군으로 관리하는 등 그룹을 이끌어갈 역량있는 CEO 후보군을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3) 후보군 현황

2024년 2월 6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

구분	후보군 수	추천경로
내부 후보군	5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 후보군 선정
외부 후보군	4	외부 자문기관 추천자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 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2023년도에는 새로운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그룹경영승계프로그램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2024년 2월 6일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보완 및 후보군 관리·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안건을 부의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내용은 경영승계절차

개시사유 및 시점, 후보군 자격요건, 후보군 선정 및 관리방법, 승계절차 등이며 관계법령 및 내규에 의거 연1회 이상 적정성 점검을 실시합니다.

###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경영승계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당사의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이사회 담당부서인 이사회사무국이며 이사회사무국은 실무책임자 포함 총 3명입니다.

이사회사무국은 최고경영자 승계업무와 관련하여 후보군을 관리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수행한 후보군 평가 및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후보군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승계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등 내역에 대해 연 1회 이상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부서명 : 이사회사무국

직원수 : 총 3명 (사무국장 1명, 팀원 2명)

운영 내역

일 자	세부내용	비고
2023. 1. 4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간담회 논의 지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간담회
2023. 1. 6	•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관련 실무 -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외부자문기관 선정 지원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3. 1. 18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보완 및 후보군 관리·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지원 - 대표이사 후보군(Long-list) 선정 지원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3. 1. 27	•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관련 실무 - 대표이사 후보군(Short-list) 선정 지원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3. 2. 1	•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관련 실무 - 후보군 대상 자격심사(PT 및 면접) 지원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3. 2. 3	•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관련 실무 - 최종 대표이사 후보 추천 지원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3. 2. 8	•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관련 실무 - 대표이사 후보 확정 지원	제2차 정기이사회
2023. 3. 24	•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관련 실무 지원 - 대표이사 선임 지원	제5차 임시이사회

# 6

##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다. 활동내역 및 평가

라. 감사보조조직 등

## 6. 감사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 총괄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회계전문가,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 § 정관 제52조(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의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이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 (2) 구체적 역할

감사위원회는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등의 안건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규정에 의거 감사보조기구의 담당임원(이하 "감사업무집행책임자")으로 하여금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등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제412조, 감사위원회규정 제4조, 제7조),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2조, 감사위원회규정 제12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그룹감사업무규정에 따라 감사업무집행책임자로 하여금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진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2023년 중 이사회 등의 안건을 포함한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206건의 사전일상감사와 1,058건의 사후일상감사 등 총 1,264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 실시 현황 및 감사 실시 현황,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등 연간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정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10조 4항). 이에 외부감사인 선정시 감사팀 역량(경험 및 산업전문성 등), 회계법인 역량(과거 수행업무의 적정성, 품질관리 능력 등), 감사운영 역량(위험분야에 대한 감사계획 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제1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3~2025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정하였고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23년 중 당사와 삼정회계법인과의 감사업무 및 미국 상장 관련 감사 업무, 비감사 업무 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사업무

내용	보수(부가세 제외)	시간
분·반기 별도/연결재무제표 검토, 연차 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964백만원	9,380시간

② 미국 상장 관련 감사 업무

내용	보수(부가세 제외)
미국 PCAOB 감사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보고내부통제 감사 (2023회계연도)	1,891백만원

③ 비감사 업무

내용	보수(부가세 제외)
법인세 세무조정(연결납세 적용 관련 검토 포함)	64백만원

또한,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사후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3년 제6차 감사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활동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을 감독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매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이 수행할 연간 감사계획을 보고받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그룹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매분(반)기 감사(검토) 결과, 핵심감사사항, 회계처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슈 가능사항 등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Communication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를 위하여 삼정회계법인 및 제휴회사(Member Firm)인 KPMG와의 비감사계약은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증권거래위원회규정 Regulation S-X Rule 2-01)

감사위원회는 회사를 포함한 그룹사와 외부감사인간 비감사업무에 대하여 세무조정 용역 비감사업무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승인함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시에는 계약 대상 업무가 美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tion 10A 및 증권거래위원회규정(Regulation S-X Rule 2-01),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직무제한)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독립성 훼손 가능성, 계약 필요성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선정 및 감독과 관련하여 검토·승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차	안 건 명
제2023-2차	그룹사 비감사계약 사전승인(案)
	2022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보고
제2023-5차	2022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보고내부통제에 대한 PCAOB기준 감사결과
	2023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계획
제2023-6차	2022회계연도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案)
	2023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제2023-7차	자회사등의 외부감사인 감사계약 사전승인(案)
	외부감사인의 비감사계약 사전승인(案)
제2023-9차	2023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제2023-10차	외부감사인의 비감사계약 사전승인(案)
	2023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제2023-11차	2024년도 회사의 외부감사인 감사계약 사전승인(案)
	자회사등의 외부감사인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사전승인(案)
	재무보고내부통제에 대한 PCAOB기준 감사 진행현황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2023년말 기준으로 회사는 별도의 상임감사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사장 직급의 경영진을 감사업무집행책임자로 임명하고 감사위원회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감사위원회규정 제16조(권한위임)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에 이사로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분(반)기 검토 및 감사결과와 외부감사인이 검토한 회사의 중요한 회계정책 및 방침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2023년 3월 3일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 2022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를 보고하였으며(감사의견:적정) 감사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1. 감사방법의 개요**

회계감사를 위하여 보고기구인 내부감사부서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 열람 등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 감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 확인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검토하였습니다.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2. 재무상태표·연결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

재무상태표·연결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4. 영업보고서에 관한 사항**

영업보고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상법 제447조의 4(감사보고서)
- 감사위원회규정 제12조(결의사항)

### (마)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의견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2023년 3월 3일 개최한 제2차 감사위원회는 제4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진술하는 것에 대해 확인하였고, 감사위원장은 2023년 3월 24일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출된 의안 및 서류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

- 상법 제413조(조사·보고의 의무)
- 감사위원회규정 제12조(결의사항)

### (바) 감사보조기구 성과평가

감사위원회는 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감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부서의 감사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23년 2월 8일 개최한 1차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부서의 2022년 감사업무 추진실적(그룹 내부감사 현황 및 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동일자 감사위원회에서 제2022-2차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성과평가 지표(계량 및 비계량)에 따라 2022년 감사부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성과평가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 4월 21일 개최한 5차 감사위원회 및 2023년 7월 21일 8차 감사위원회, 그리고 2023년 9월 22일 개최한 9차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부서의 2023년 1분기 및 상반기, 그리고 3분기 감사업무 추진실적(그룹 내부감사 현황 및 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 [관련 규정]

- 감사위원회규정 제12조(결의사항)

### (사)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위원회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연간 감사계획을 결의하고, 감사부가 실시한 감사결과를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제11차 감사위원회는 고위험/관리취약 부문 등 그룹 주요 현안 및 이슈사항에 대한 감사,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 자회사 내부감사기능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등 2024년도 지주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연간 감사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감사위원회규정 제12조(결의사항)
- 감사위원회규정 제18조(이사회 보고)

**(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감사위원회는 연 1회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8일 개최한 1차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 5요소인 통제환경 및 통제문화 / 리스크평가 / 통제활동 및 직무분리 / 회계, 정보 및 의사소통시스템 / 모니터링 등을 기반으로 지주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실태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2023년 3월 3일 개최한 2차 감사위원회에서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22년말 현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외부감사인(삼일)은 2022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기말감사 주요 보고사항, 주요 감사절차 등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동일자 감사위원회에서 그룹내부통제규정 개정(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체계 강화 위한 내부통제 체계 개편)에 대해 심의하였고,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 2022년말 현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6일 개최한 6차 감사위원회에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2023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범위, 평가방법 및 시기 등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련 규정]**

- 감사위원회규정 제13조(심의사항)

**(자) 재무활동의 건정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감사위원회는 재무활동의 건정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21일 개최한 5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삼일)으로부터 미국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기준 2022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보고내부통제에 대한 감사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개최한 11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삼정)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한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 진행현황에 대한 보고 받았습니다.

**[관련 규정]**

- 감사위원회규정 제13조(심의사항)

**(차) 자금세탁방지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감사위원회는 연 1회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8일 개최한 1차 감사위원회에서 자금세탁방지업무 정책, 절차 및 통제활동 설계·운영,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시스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원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감사위원회규정 제13조(심의사항)
- 감사위원회규정 제18조(이사회 보고)

**(카) 공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

감사위원회는 연 1회 회사의 공시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개최한 11차 감사위원회는 공시정책 수립 및 집행현황, 2023년도 공시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안건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감사위원회규정 제13조(심의사항)

**(타)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 검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의 보고내용을 심의합니다.

2023년 4월 21일 개최한 5차 감사위원회에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 체계 개선 및 내부통제 점검활동(자금세탁방지 부문 포함), 회의체 운영 및 보고 현황 등 2022년 중 준법감시인의 활동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9월 22일 개최한 9차 감사위원회에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 혁신과제 실시, 자회사 점검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 기타 내부통제 활동(자금세탁방지 부문 포함) 등 2023년 상반기 중 준법감시인의 활동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규정]**

- 감사위원회규정 제13조(심의사항)

##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 (1) 총괄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23년 말 현재 감사위원회는 모두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윤수영 이사, 정찬형 이사 및 신요환 이사는 재무전문가이고, 지성배 이사는 회계전문가입니다.

감사위원장은 금융분야 전문가인 윤수영 사외이사((前)키움증권(주) 부사장)로 재임기간 1년입니다.

### (2) 구성원

성명	사내/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윤수영	사외이사	위원장	2023.3.24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해당 (재무전문가)
정찬형	사외이사	위원	2019.1.11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해당 (재무전문가)
신요환	사외이사	위원	2022.1.27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해당 (재무전문가)
지성배	사외이사	위원	2023.3.24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해당 (회계전문가)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2023년에는 총 11회의 감사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결의사항 19건, 보고 및 심의사항 21건 등 총 40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98%입니다.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기구인 감사부를 두어 그룹사에 대한 업무감사의 실시, 자회사 감사활동의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부서의 감사업무 추진실적(그룹 내부감사 현황 및 결과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점검계획 등을 보고받고,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 적정성 평가 결과, 자금세탁방지업무 적정성 평가 결과,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3-1차 감사위원회 : 2023.2.8. (9:30~10:20)

[안건통지일 : 2023.1.31]

항 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정찬형	노성태	장동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년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심의안건				
가. 2022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 적정성 평가 결과(案)	특이사항 없음			
나. 2022년 자금세탁방지업무 적정성 평가 결과(案)	특이사항 없음			
5. 의결안건				
가. 2022년 감사부 성과평가(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3년 감사업무집행책임자·감사부 성과평가 기준 및 목표(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 보고안건

가) 감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부서의 2022년 감사업무 추진실적(그룹 내부감사 현황 및 결과 등)에 대한 보고

##### ■ 심의안건

가) 내부통제 5요소인 통제환경 및 통제문화, 리스크평가, 통제활동 및 직무분리, 회계, 정보 및 의사

소통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기반으로 지주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나) 자금세탁방지업무 정책, 절차 및 통제활동 설계·운영,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시스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원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

■ 의결안건

가) 제2022-2차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성과평가 지표(계량 및 비계량)에 따라 2022년 감사부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성과평가

나) 2023년도 감사업무집행책임자·감사부서의 성과평가 기준 및 목표의 수립

(나) 제2023-2차 감사위원회 : 2023.3.3. (10:30~11:20)

[안건통지일 : 2023.2.23.]

항 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정찬형	노성태	장동우	
1. 사외이사 성명	정찬형	노성태	장동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사항 없음			
나. 2022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심의안건				
가. 그룹내부통제규정 일부 개정(案)	특이사항 없음			
나.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案)	특이사항 없음			
5. 의결안건				
가. 2022회계연도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의견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그룹사비감사계약 사전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22년말 현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보고

나) 외부감사인(삼일)으로부터 2022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기말감사 주요 보고 사항, 주요 감사절차 등에 대한 보고

■ 심의안건

가) 그룹내부통제규정 개정(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체계 강화 위한 내부통제 체계 개편)에 대해 심의

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 2022년말 현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의결안건

- 가) 2022회계연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 재무상태표·연결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영업보고서는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감사보고서의 제출
- 나) 정기주주총회 제출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의견과 관련하여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진술하는 것에 대한 의결
- 다) 지주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세무조정 비감사계약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

(다) 제2023-3차 감사위원회 : 2023.3.7. (16:00~16:20)

[안건통지일 : 2023.3.7]<sup>1)</sup>

항 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정찬형	노성태	장동우	
1. 사외이사 성명	정찬형	노성태	장동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그룹감사업무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감사업무집행책임자 임면 동의(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감사위원회 소집절차 단축 동의서 전원 징구하여 소집절차 생략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안건

- 가) 그룹감사업무규정 개정에 대한 의결
- 나) 감사업무집행책임자 임면에 대한 의결

(라) 제2023-4차 감사위원회 : 2023.3.24. (13:25~13:30)

[안건통지일 : 2023.3.16]

항 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윤수영	정찬형	신요환	지성배	
1. 사외이사 성명	윤수영	정찬형	신요환	지성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감사위원회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순위 결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안건

- 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중에서 윤수영 감사위원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 나) 감사위원회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 순위 의결

(마) 제2023-5차 감사위원회 : 2023.4.21. (14:30~15:00)

[안건통지일 : 2023.4.13]

항 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윤수영	정찬형	신요환	지성배	
1. 사외이사 성명	윤수영	정찬형	신요환	지성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1분기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특이사항 없음				
나. 2022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한 PCAOB기준 감사결과	특이사항 없음				
다. 2023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계획	특이사항 없음				
4. 심의안건					
가. 2022년 내부통제 활동 보고	특이사항 없음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 가) 감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부서의 2023년 1분기 감사업무 추진실적(그룹 내 부감사 현황 및 결과 등)에 대한 보고
- 나) 외부감사인(삼일)으로부터 미국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기준 2022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보고내부통제에 대한 감사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 다) 외부감사인(삼정)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감사계획 및 일정, 중요성, 그룹감사범위, 감사팀 현황 등에 대한 보고

■ 심의안건

- 가)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 체계 개선 및 내부통제 점검활동(자금세탁방지 부문 포함), 회의체 운영 및 보고 현황 등 2022년 중 준법감시인의 활동에 대한 심의

(바) 제2023-6차 감사위원회 : 2023.5.26. (13:40~14:10)

[안건통지일 : 2023.5.18]

항 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윤수영	정찬형	신요환	지성배	
1. 사외이사 성명	윤수영	정찬형	신요환	지성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				
나. 2023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심의안건

가. 2022회계연도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案)	특이사항 없음
-------------------------------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 가) 외부감사인(삼정)로부터 2023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목적과 절차, 주요 재무정보 및 이슈사항, 독립된 감사인의 검토결과 등에 대한 보고
- 나)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2023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범위, 평가방법 및 시기 등 계획에 대한 보고

■ 심의안건

- 가) 외부감사법 등에 의거 감사위원회가 승인한 2022회계연도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및 감사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외부감사인이 준수했는지 여부를 사후평가·심의

(사) 제2023-7차 감사위원회 : 2023.6.23. (9:40~10:00)

[안건통지일 : 2023.6.15]

항 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윤수영	정찬형	신요환	지성배	
1. 사외이사 성명	윤수영	정찬형	신요환	지성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자회사등의 외부감사인 감사계약 사전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외부감사인의 비감사계약 사전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안건

- 가) 자회사 국외법인·지점 등의 외부감사인 감사계약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
- 나) 국내 자회사 및 우리은행 국외법인·지점의 외부감사인 비감사계약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

(아) 제2023-8차 감사위원회 : 2023.7.21. (9:00~9:30)

[안건통지일 : 2023.7.13.]

항 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윤수영	정찬형	신요환	지성배	
1. 사외이사 성명	윤수영	정찬형	신요환	지성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상반기 감사실적 및 하반기 감사계획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그룹감사업무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불참	찬성	가결
나. 감사보조기구의 부사장 임면 동의(案)	찬성	찬성	불참	찬성	가결
다. 2023년 상반기 감사부 성과평가(案)	찬성	찬성	불참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가) 감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부서의 2023년 상반기 감사업무 추진실적(그룹내 부감사 현황 및 결과 등) 및 하반기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

■ **의결안건**

- 가) 그룹감사업무규정 개정에 대한 의결
- 나) 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 임면에 대한 의결
- 다) 제2023-1차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성과평가 지표(계량 및 비계량)에 따라 2023년 상반기 감사부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성과평가

(자) 제2023-9차 감사위원회 : 2023.9.22. (9:50~10:20)

[안건통지일 : 2023.9.14]

항 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윤수영	정찬형	신요환	지성배	
1. 사외이사 성명	윤수영	정찬형	신요환	지성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				
나. 2023년 3분기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심의안건					
가. 2023년 상반기 준법감시인 활동 보고	특이사항 없음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 가) 외부감사인(삼정)로부터 2023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목적과 절차, 주요 재무정보 및 이슈사항, 독립된 감사인의 검토결과 등에 대한 보고
- 나) 감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부서의 2023년 3분기 감사업무 추진실적(그룹내부감사 현황 및 결과 등)에 대한 보고

■ **심의안건**

가)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 혁신과제 실시, 자회사 점검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 기타 내부통제 활동(자금세탁방지 부문 포함) 등 2023년 상반기 중 준법감시인의 활동에 대한 심의

(차) 제2023-10차 감사위원회 : 2023.11.24. (10:00~10:30)

[안건통지일 : 2023.11.16]

항 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윤수영	정찬형	신요환	지성배	
1. 사외이사 성명	윤수영	정찬형	신요환	지성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	---------

4. 의결안건

가. 외부감사인의 비감사계약 사전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	----	----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가) 외부감사인(삼정)로부터 2023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목적과 절차, 주요 재무정보 및 이슈사항, 독립된 감사인의 검토결과 등에 대한 보고

■ 의결안건

가) 우리은행 비감사계약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

(카) 제2023-11차 감사위원회 : 2023.12.15. (14:00~14:50)

[안건통지일 : 2023.12.7.]

항 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윤수영	정찬형	신요환	지성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재무보고내부통제에 대한 PCAOB기준 감사 진행현황	특이사항 없음				
4. 심의안건					
가.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 현황	특이사항 없음				
5. 의결안건					
가. 2024년도 감사 계획(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도 회사의 외부감사인 감사계약 사전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자회사등의 외부감사인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사전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 임면 동의(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가) 외부감사인(삼정)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재무보고내부통제에 대한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 진행현황에 대한 보고

■ 심의안건

가) 공시정책 수립 및 집행현황, 2023년도 공시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

■ 의결안건

- 가) 고위험/관리취약 부문 등 그룹 주요 현안 및 이슈사항에 대한 감사,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 자회사 내부감사기능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등 2024년도 지주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연간 감사계획 승인
- 나) 외부감사법 등에 의거 2024사업연도 외부감사인(삼정)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 등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승인
- 다) 국내외 자회사등의 외부감사인 감사계약 및 우리은행 국외법인 비감사계약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
- 라) 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 임면에 대한 의결

(3) 평가

감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평가 세부내용】

평가주체	위원 전원
평가근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2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제2항, 제3항
평가주기	1년(매년 2월 평가)
평가기준	구성/기능과 역할/운영/위원회와 담당 임원간 의사소통
평가방식	설문조사에 의한 절대평가 방식 (5점 척도 설문 평가)

이사회는 매년 2월 전년도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전문성), 기능과 역할, 운영 및 경영진간 의사소통 등이 포함되며, 동 평가결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원회는 그룹에 대한 감사업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회계 및 재무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등 이사들의 역량 및 경험을 고려하였습니다.
- 그룹 가치 제고 및 업무 운영 개선을 위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업무 수행 전반을 검토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규에 따라 적정하게 개최되고 있으며, 감사업무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위원 요청 시 추가자료가 적시성 있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지배구조법’은 감사위원회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감사부서 설치 근거를 내규에 규정하였으며, 감사보조기구의 담당임원인 감사업무집행책임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직무를 위임받아 감사업무를 통할하고 감사결과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부는 부서장 1명, 부원 8명(2023년말 현재)이며, 감사부원은 공인회계사(CPA), 재무위험관리사(FRM) 등의 책임자 이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자회사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회사의 감사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감사부는 전년도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회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업무 적정성 평가결과, 감사업무 추진실적,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를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부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지원한 주요 내용입니다.

일자	대상	보고 및 지원내용
2023.2.8	감사위원회	2022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 적정성 평가 결과(案)
		2022년 자금세탁방지업무 적정성 평가 결과(案)
		2022년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3.3.3	감사위원회	2022회계연도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案)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의견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案)
2023.3.7	감사위원회	그룹감사업무규정 개정(案)
		감사업무집행책임자 임면 동의(案)
2023.4.21	감사위원회	2023년 1분기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3.5.26	감사위원회	2022회계연도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案)
2023.7.21	감사위원회	그룹감사업무규정 개정(案)
		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 임면 동의(案)
		2023년 상반기 감사실적 및 하반기 감사계획
2023.9.22	감사위원회	2023년 3분기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3.12.15	감사위원회	2024년도 감사 계획(案)
		2024년도 회사의 외부감사인 감사계약 사전승인(案)
		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 임면 동의(案)

# 7

## 리스크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7. 리스크관리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 총괄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에서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 위원회 위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4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동 위원회 위원은 총 3인으로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13조에 따라 리스크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권한의 일부를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직원 또는 외부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2) 구체적 역할

##### (가)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리스크 철학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원칙 등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과 전략을 수립합니다.

당사는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전성과 수익성, 성장성의 균형을 도모하여 주주가치 창출과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한다”는 그룹 리스크 철학을 정하고 조직 구성원이 업무수행 시 항상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원칙은 리스크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규정, 관리체계, 의사결정 등을 도출하는 기준을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실천원칙 1. 모든 영업은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 실천원칙 2. 선제적 리스크관리로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다.
- 실천원칙 3. 신사업 및 신상품은 리스크 측정과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취급한다.
- 실천원칙 4.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추구한다.
- 실천원칙 5. 영업부문과 독립적인 리스크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 실천원칙 6. 건전한 리스크관리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동 위원회는 경제전망 및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2024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을 리스크관리 위원회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2023년 11월 24일에 개최된 제8차 동 위원회에서 「2024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안)」을 결의하였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 결정**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매년 국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을 고려하여 그룹 및 자회사별 부담가능한 위험성향을 결정합니다. 또한, 미래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대비하여 그룹이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5조에 따라 2023년 12월 14일에 개최된 제9차 동 위원회에서 「2024년 그룹 리스크한도 설정(안)」을 통해 리스크관리 전략, 경영계획등을 반영한 그룹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PE자산운용의 위험성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024년 그룹의 위험성향은 75.8%로 설정하였으며, 2023년말 기준 실제 위험성향은 76.9%로 내부자본적정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년 결정된 위험성향에 따라 가용자본 중 사용가능한 위험자본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를 리스크유형 및 그룹사별 허용한도를 결정하고 배분합니다. 또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5조에 따라 2023년 12월 14일에 개최된 제9차 동 위원회에서 「2024년 그룹 리스크한도 설정(안)」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위험자본 한도, Large Exposure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동일자에 「2024년 국가별/지역별 익스포져 한도 설정(안)」을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신용공여 집중 방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한도를 부여하였습니다.

**(라)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최적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규정 및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필요시 이를 개정·폐지합니다. 2023년 6월 22일에 개최된 제5차 동 위원회에서 「자체정상화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자산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적립규정 개정(안)」과 2023년 9월 21일에 개최된 제7차 동 위원회에서 「그룹리스크관리규정·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해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마) 기타**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조직의 변경, 신사업진출 및 대규모 투자 등 그룹 차원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수반되는 리스크관리 관련 사항을 심의하며 그룹의 리스크관리 현황 및 주요 이슈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25일에 개최된 제4차 동 위원회에서 「(주)우리금융지주-우리종합금융(주) 주식교환계약 체결(안)」, 「(주)우리금융지주-우리벤처파트너스(주) 주식교환계약 체결(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 (1) 총괄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4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매년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합니다.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2023년 말 기준, 동 위원회는 모두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2명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금융분야 전문가인 윤인섭 사외이사로 임기는 1년입니다.

### (2) 구성원

#### 【2023.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사내/사외/ 비상임	現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
윤인섭	사외이사	위원장	2022.3.25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해당 (금융전문가)
박상용	사외이사	위원			-
신요환	사외이사	위원			해당 (금융전문가)
송수영	사외이사	위원			-

#### 【2023.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사내/사외/ 비상임	現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
윤인섭	사외이사	위원장	2022.3.25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해당 (금융전문가)
송수영	사외이사	위원			-
윤수영	사외이사	위원	2023.3.24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해당 (금융전문가)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분기 1회 개최합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9회의 동 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48건이며, 동 위원회 위원은 모든 회차에 100% 참석하였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 (가) 2023년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3.3 (10:30~11:20)

[안건 통지일 : 2023.2.23.]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윤인섭	박상용	신요환	송수영	
1. 위원 성명	윤인섭	박상용	신요환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건					
가. 2022년 4분기 그룹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 없음				
나. 건전성 관리 위기대응체계 강화 운영(안)	특이사항 없음				
다. 그룹 리스크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2022년 4분기)	특이사항 없음				
라. 2022년 4분기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마. 2022년 4분기 그룹리스크관리 협의회심의·결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바. 2022년 하반기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결의사항 진행현황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2년 12월말 기준 그룹 통합위기 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특수금융 및 금융기관 평가모형 개선(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 보고안건

‘2022년 4분기 그룹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등 6건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 ▪ 의결안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시나리오 결정 절차 강화를 위해 ‘2022년 12월말 기준 그룹 통합위기사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과 특수금융 모형 개선 및 시스템 사용승인을 위해 ‘특수금융 및 금융기관 평가모형 개선(안)’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용 위원은 위기사황분석 시나리

오 옵션 분석의 합리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고, 윤인섭 위원장은 모형별 특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2023년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3.24 (13:20~13:25)**

[안건 통지일 : 2023.3.16.]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윤인섭	윤수영	송수영	
1. 위원 성명	윤인섭	윤수영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리스크관리조직 업무 분장 일부 개편(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안건**

‘리스크관리조직 업무 분장 일부 개편(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 2023년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4.20 (09:10~09:50)**

[안건 통지일 : 2023.4.12.]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윤인섭	윤수영	송수영	
1. 위원 성명	윤인섭	윤수영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그룹 리스크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 (2023년 1분기)	특이사항없음			
나.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2023년 1분기)	특이사항없음			
다.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심의·결의사항 (2023년 1분기)	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				
가.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결과 및 위기 대응계획 (2022년 12월말기준)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그룹 내부자본한도 일부 조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그룹 리스크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2023년 1분기)’ 등 3건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 **의결안건**

위기사 취약부분 진단과 대응방안 도출을 통한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위기 대응계획(2022년 12월말기준)'과 '그룹 내부자본한도 일부 조정(안)'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인섭 위원장은 파생상품 익스포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대응 절차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라) 2023년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5.25 (08:30~09:20)**

[안건 통지일 : 2023.5.17]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윤인섭	윤수영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년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완료 보고	특이사항 없음			
나. 그룹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2023년 1분기)	특이사항 없음			
다.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과 영향	특이사항 없음			
4. 심의안건				
가. (주)우리금융지주-우리종합금융(주) 주식교환계약 체결(안)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나. (주)우리금융지주-우리벤처파트너스(주) 주식교환계약 체결(안)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5. 의결안건				
가. 그룹 내부자본한도 일부 조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2022년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완료 보고' 등 3건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 **심의안건**

우리종합금융의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주식교환을 위해 '(주)우리금융지주-우리종합금융(주) 주식교환계약 체결(안)'과 '(주)우리금융지주-우리벤처파트너스(주) 주식교환계약 체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 **의결안건**

'그룹 내부자본한도 일부 조정(안)'을 결의하였습니다.

**(마) 2023년도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6.22 (09:40~10:10)**

[안건 통지일 : 2023.6.14.]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윤인섭	윤수영	송수영	
1. 위원 성명	윤인섭	윤수영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환율 상승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자체정상화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환율 상승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 **의결안건**  
 2022년 자체정상화계획 금융위원회 승인에 따른 구성위원변경을 위해 '자체정상화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을 결의하였습니다.

**(바) 2023년도 제6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7.20 (09:40~10:30)**

[안건 통지일 : 2022.7.12]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윤인섭	윤수영	송수영	
1. 위원 성명	윤인섭	윤수영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2023년 2분기)	특이사항 없음			
나.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심의·결의사항 (2023년 2분기)	특이사항 없음			
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결의사항 진행현황 (2023년 상반기)	특이사항 없음			
4. 심의안건				
가. 원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안)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5. 의결안건				
가. 리스크관리조직 업무 분장 일부 개편(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2023년 6월말기준)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신용리스크 측정요소(PD) 일부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2023년도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9.21 (09:40~10:30)**

[안건 통지일 : 2023.9.13]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윤인섭	윤수영	송수영	
1. 위원 성명	윤인섭	윤수영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그룹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2023년 2분기)	특이사항없음			
나. 그룹 리스크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 (2023년 2분기)	특이사항없음			
4. 심의안건				
가. 우리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수립(안)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5. 의결안건				
가. 그룹리스크관리규정·그룹리스크관리 협의회규정 일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위기 대응계획(2023년 6월말 기준)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그룹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2023년 2분기)’ 등 2건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 심의안건

‘우리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수립(안)’을 심의하였습니다.

■ 의결안건

자체정상화계획 관련 업무처리 기준 명확화 및 내규화 등을 위해 ‘그룹리스크관리규정·그룹리스크 관리협의회규정 일부 개정(안)’과 위기사취약부분진단 및 대응방안 도출을 통한 위기 대응력의 제고를 위한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위기대응계획(2023년 6월말 기준)’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송수영 위원은 모의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윤인섭 위원장은 위기대응계획 사전에 실시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 2023년도 제8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11.24 (09:00~09:50)**

[안건 통지일 : 2023.11.16]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윤인섭	윤수영	송수영	
1. 위원 성명	윤인섭	윤수영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그룹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2023년 3분기)	특이사항 없음	
나. 2022년 3분기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심의·결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다.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2023년 3분기)	특이사항 없음	
라.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심의·결의사항 (2023년 3분기)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4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 그룹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시장리스크 간편법 적용기준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그룹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2023년 3분기)’ 등 4건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 의결안건

경제전망 및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2024년 그룹 리스크관리전략의 수립을 위한 ‘2024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안)’, ‘2024년 그룹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 변경(안)’ 및 그룹연결펀드 간편법 제외 및 우리벤처파트너스 간편법 적용을 위한 ‘시장리스크 간편법 적용기준 변경(안)’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송수영 위원은 손익과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윤수영 위원은 디지털 리스크 관리 측면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자) 2023년도 제9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12.14 (08:50~09:40)**

[안건 통지일 : 2023.12.6., 2023.12.12.(심의 가.)(동의서 징구 후 소집통지 단축)]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윤인섭	윤수영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	---------	--

4. 심의안건

가. 우리종합금융 유상증자 참여(안)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나. 원화 조건부자본증권(신증자본증권) 발행(안)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5. 의결안건

가. 2024년 그룹 리스크 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 국가별/지역별 익스포져 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그룹 금융배출량 측정시스템 운영(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그룹 거액익스포져관리시스템 운영(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2023년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 심의안건

자회사 우리종합금융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안) 심의를 위한 ‘우리종합금융 유상증자 참여(안)’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 심의를 위한 ‘원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안)’을 심의하였습니다.

■ 의결안건

‘2024년 그룹 리스크 한도 설정(안)’, ‘2024년 국가별/지역별 익스포져 한도 설정(안)’, 시스템을 통한 금융배출량 측정 및 모니터링으로 기후리스크관련 사전대응을 위한 ‘그룹 금융배출량 측정시스템 운영(안)’ 및 일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감독당국의 거액익스포져규제 대응을 위한 ‘그룹 거액익스포져관리시스템 운영(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송수영 위원은 그룹 탄소배출량 측정시스템의 향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룹 거액익스포져관리시스템에서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평가**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동 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구체적 항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전문성),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리스크관리), 위원회의 운영(부의안건 적절성, 안건검토시간 제공), 위원회와 경영진간 의사소통 등이 포함됩니다. 평가방식은 동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위원회 의사록, 안건자료, 출석현황 등을 참고하여 평가합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 세부내용】**

평가주체	위원 전원
평가근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2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제2항, 제3항
평가주기	1년(매년 2월 평가)
평가기준	구성/기능과 역할/운영/위원회와 담당 임원간 의사소통
평가방식	설문조사에 의한 절대평가 방식 (5점 척도 설문 평가)

2023년 동 위원회의 평가결과는 2024년도 2차 이사회(2024.2.29.)에 보고합니다. 평가결과,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와 경영진간 의사소통 항목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8

##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나. 협의 절차(운영현황)

다. 구성

라. 활동내역 및 평가

## 8.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 총괄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결정,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의 심사·추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 우리펀드서비스, 우리PE자산운용, 우리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대표이사 후보 추천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 (2) 구체적 역할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 수립 및 적정성 점검 시행과 후보군 관리 및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나. 협의 절차(운영현황)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상정된 안건은 협의된 것으로 하며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직원 또는 외부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다. 구성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인 대표이사 1명과 사외이사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의 비율은 85.7%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와 선정을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3.3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손태승	사내이사	위원장	2022.3.25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노성태	사외이사	위원		
박상용	사외이사	위원		
윤인섭	사외이사	위원		
정찬형	사외이사	위원		
신요환	사외이사	위원		
장동우	사외이사	위원		
송수영	사외이사	위원		

**【2023.3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임종룡	사내이사	위원장	2023.3.24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윤수영	사외이사	위원		
윤인섭	사외이사	위원		
정찬형	사외이사	위원		
신요환	사외이사	위원		
지성배	사외이사	위원		
송수영	사외이사	위원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3년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11회 개최되었으며, 기간 중 부의된 결의안건은 11건으로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제1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다올인베스트먼트 (現 우리벤처파트너스) 대표이사 최종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제2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을 점검하고 후보군 관리 및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을 결의하였습니다.

제3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 우리펀드서비스, 우리PE자산운용의 대표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후보추천을 위해 후보군 선정(안)을 결의하였습니다.

제4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 우리펀드서비스, 우리PE자산운용의 대표이사 최종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제5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은행장 후보군 선정(안)을 결의하였습니다.

제6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은행장 후보 Long list 선정을 결의하였습니다.

제7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은행장 후보 Short list 선정을 결의하였습니다.

제8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은행장 최종후보 추천을 결의하였습니다.

제9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안)을 결의하였습니다.

제10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최종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제11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최종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회차	세부내용
2023-1차	• 다올인베스트먼트 (現 우리벤처파트너스) 대표이사 최종후보 추천
2023-2차	•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후보군 관리 및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결의
2023-3차	•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 우리펀드서비스, 우리PE자산운용의 대표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보 추천을 위해 후보군 선정(안) 결의
2023-4차	•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 우리펀드서비스, 우리PE자산운용의 대표이사 최종후보 추천
2023-5차	• 우리은행장 후보군 선정(안) 결의
2023-6차	• 우리은행장 후보 Long list 선정 결의
2023-7차	• 우리은행장 후보 Short list 선정 결의
2023-8차	• 우리은행장 최종후보 추천 결의
2023-9차	•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안) 결의
2023-10차	•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최종후보 추천
2023-11차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최종후보 추천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3년도 제1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3.02.24 (09:00~09:20)

[안건 통지일 : 2023.02.21]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손태승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송수영	
1. 위원 성명	손태승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결의안건									
가. 다올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최종후보 추천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안건 가) 김창규 후보를 다올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

2023년도 제1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8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자회사 편입 예정인 다올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 임기만료에 따라 김창규 현 대표이사를 후보로 추천하고 임기 2년으로 결의하였습니다.

**(나) 2023년도 제2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3.03.07 (14:00~14:30)**

[안건 통지일 : 2023.03.03]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손태승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송수영	
1. 위원 성명	손태승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자회사대표이사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및 후보군 관리·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안건 가)**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

2023년도 제2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그룹경영의 안정적 지배구조 유지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후보군 관리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하였습니다.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경영승계절차 개시사유 및 시점, 후보군 자격요건, 후보군 선정, 후보군 관리방안, 자회사 경영승계절차 등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검증하여 모두 적절한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다) 2023년도 제3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3.03.07 (14:30~15:00)**

[안건 통지일 : 2023.03.03]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손태승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송수영	
1. 위원 성명	손태승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자회사대표이사 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안건 가)**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

용, 우리펀드서비스, 우리PE자산운용의 대표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보 추천을 위해 후보군 선정(안)을 결의

2023년도 제3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8개 자회사의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대표이사 후보추천을 위한 후보군 선정을 의결하였습니다.

**(라) 2023년도 제4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3.03.07 (15:00~15:30)**

[안건 통지일 : 2023.03.03]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손태승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송수영	
1. 위원 성명	손태승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자회사대표이사 최종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안건 가) 박완식(우리카드), 조병규(우리금융캐피탈), 김응철(우리종합금융), 이종근(우리자산신탁), 전상욱(우리금융저축은행), 남기천(우리자산운용), 김정록(우리펀드서비스), 김경우(우리PE자산운용) 후보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

2023년도 제4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제3차 자추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활발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8개 자회사 대표이사 최종 후보 추천을 완료하였습니다.

**(마) 2023년도 제5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3.03.24 (13:30~14:00)**

[안건 통지일 :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징구]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임종룡	윤인섭	정찬형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1. 위원 성명	임종룡	윤인섭	정찬형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우리은행장 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안건 가) 은행장 경영승계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우리은행장 후보군 선정(안) 결의

2023년도 제5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며, 현 은행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지체 없이 은행장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우리은행장 후보군을 선정하였습니다.

**(바) 2023년도 제6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3.03.24 (14:00~14:30)**

[안건 통지일 :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징구]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임종룡	윤인섭	정찬형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1. 위원 성명	임종룡	윤인섭	정찬형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우리은행장 후보 Long list 선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안건 가) 이석태, 강신국, 박완식, 조병규 후보를 우리은행장 Long list 후보군으로 선정

2023년도 제6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총 4명의 후보를 Long list로 선정하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Long list 후보군에 대해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역량검증 절차를 거치는 은행장 선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 2023년도 제7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3.05.25 (09:20~11:20)**

[안건 통지일 : 2023.05.24]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임종룡	윤인섭	정찬형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1. 위원 성명	임종룡	윤인섭	정찬형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우리은행장 후보 Short list 선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안건 가) 이석태, 조병규 후보를 우리은행장 Short list 후보군으로 선정

2023년도 제7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Long list 4명 중 Short list 선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위원들은 프로그램 단계별 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우리은행장 Short list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아) 2023년도 제8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3.05.26 (08:30~11:30)**

[안건 통지일 : 2023.05.24]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임종룡	윤인섭	정찬형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1. 위원 성명	임종룡	윤인섭	정찬형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안건 가) 조병규 후보를 우리은행장 후보로 선정

2023년도 제8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위원들은 맞춤형 심층면접을 통해 검증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영업에 대한 경험과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우리금융캐피탈 조병규 대표가 우리은행의 기업금융 영업력을 극대화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책임자라고 평가하여 우리은행장 최종후보로 추천하고, 임기는 2024년 12월 말까지로 부여하는 것으로 결의 하였습니다.

**(자) 2023년도 제9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3.06.09 (08:00~08:30)**

[안건 통지일 : 2023.06.07]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임종룡	윤인섭	정찬형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1. 위원 성명	임종룡	윤인섭	정찬형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안건

가)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여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안) 결 의: 2023년도 제9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 으며, 우리금융캐피탈 대표가 은행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우리금융캐피탈의 경영 연속성을 유지하 기 위해 속히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캐피탈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 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장 경영이 가능한 그룹내 현 직 경영진을 후보군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여 후보군 선정(안)을 의결하였습 니다.

**(차) 2023년도 제10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3.06.09 (08:30~09:00)**

[안건 통지일 : 2023.06.07]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임종룡	윤인섭	정찬형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1. 위원 성명	임종룡	윤인섭	정찬형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최종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안건 가) 정연기 후보를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

2023년도 제10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최종후보로 정연기 후보를 추천하고 임기는 2024년 12월 말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카) 2023년도 제11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3.07.21 (09:40~10:30)**

[안건 통지일 : 2023.07.13]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임종룡	윤인섭	정찬형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1. 위원 성명	임종룡	윤인섭	정찬형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안건 가) 박정훈 후보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

2023년도 제11차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국내외 금융 경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뿐만 아니라 그룹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곳인 만큼 거시경제와 금융산업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들은 박정훈 후보를 추천하고 임기는 2025년 7월 말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 (3) 평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전년도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세부 평가기준은 위원회의 구성, 기능과 역할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 및 육성), 위원회 운영 (안건 검토 시간 제공) 및 의사소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평가는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5점 척도 방식으로 평가한 후 각 항목값을 단순 산술평균하여 결과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지원부서는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 세부내용】

평가주체	위원 전원
평가근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2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제2항, 제3항
평가주기	1년(매년 2월 평가)
평가기준	구성 / 기능과 역할 / 운영 / 위원회와 담당 임원간 의사소통
평가방식	설문조사에 의한 절대평가 방식 (5점 척도 설문 평가)

2023년도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부문에서는 업종에 맞는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자격검증이 가능하도록 위원회의 구성원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부문에서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부문에서는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년도에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체계를 유지·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당해연도에 이를 반영하여 운영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소통 부문에서 위원들이 요청한 사항 및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의 이사회 참여기회 제공,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 9

## ESG경영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나. 구성(ESG경영위원회 위원)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9. ESG경영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 총괄

당사는 2021년 'ESG원년'을 선언한 이후 ESG 중장기 전략 수립, ESG 주요 원칙/정책 제정 등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ESG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그룹의 ESG경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동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결의함으로써 그룹의 ESG 경영에 관한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된 사항을 결정합니다.

#### (2) 구체적 역할

당사 ESG경영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ESG경영 전략의 방향 및 정책 수립, 관련 규정의 제정·개폐 등 ESG경영 관련 중요 의사결정 등을 수행하며, ESG 관련 그룹사 추진현황, ESG경영 관련 보고서 발간, ESG 대외평가 결과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동 등을 보고받습니다.

[관련규정] 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0조의3 (ESG경영위원회)  
나) ESG경영위원회규정 제8조 (결의사항 등)

구분	내용
(가) ESG경영 전략 방향 및 정책 수립	• 그룹의 ESG 비전 및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실천을 위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금융 지원 등 그룹의 ESG 전략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함
(나) ESG경영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그룹의 ESG와 관련된 기존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의 제정을 결의함
(다) 기타	• ESG경영 관련 그룹사의 추진 현황, 보고서 발간, ESG 대외평가 결과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동 현황 등을 ESG경영위원회에 보고함

### 나. 구성(ESG경영위원회 위원)

#### (1) 총괄

ESG경영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구성원 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회에 의해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합니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2) 구성원

【2023.3월 주주총회 이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송수영	사외이사	위원장	2022.3.25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노성태	사외이사	위원		
박상용	사외이사	위원		
정찬형	사외이사	위원		
장동우	사외이사	위원		
윤인섭	사외이사	위원		
신요환	사외이사	위원		
손태승	사내이사	위원		
이원덕	비상임이사	위원		

【2023.3월 주주총회 이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송수영	사외이사	위원장	2023.3.24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정찬형	사외이사	위원		
윤인섭	사외이사	위원		
윤수영	사외이사	위원		
신요환	사외이사	위원		
지성배	사외이사	위원		
임종룡	사내이사	위원		
이원덕	비상임이사	위원		

【2023.7월 3일 이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송수영	사외이사	위원장	2023.3.24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정찬형	사외이사	위원		
윤인섭	사외이사	위원		
윤수영	사외이사	위원		
신요환	사외이사	위원		
지성배	사외이사	위원		
임종룡	사내이사	위원		

※ 일신상의 사유로 이원덕 비상임위원 사임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ESG경영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2023년 중 총 3회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6건으로 결의안건 2건과 보고안건 4건이며, 결의안건은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동 위원회 위원은 모든 회차에 92% (1차: 88%, 2차: 88%, 3차: 100%) 참석하였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 (가) 2023년도 제1차 ESG경영위원회 : 2023.4.21

[안건 통지일 : 2023.4.13.]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송수영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임종룡	이원덕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출장)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대외 ESG 평가 대응 현황 및 계획(안)	특이사항 없음								
4 결의안건에 대한 의견									
(결의안건 없음)	-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 보고안건

- 가) 우리금융그룹의 국내·외 ESG 평가 현황, 그룹 기후리스크 대응 현황, ESG 중대성 이슈 관련 내용 및 다양성 정책 등 대응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요환 위원은 향후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고, 송수영 위원장은 원만한 기후리스크 대응을 통해 투자자 요구 충족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윤인섭 위원은 향후 그룹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성 확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나) 2023년도 제2차 ESG경영위원회 : 2023.6.23

[안건 통지일 : 2023.6.15.]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송수영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임종룡	이원덕		
1. 위원 성명	송수영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임종룡	이원덕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출장)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발간(안)										
								특이사항 없음		
4 결의안건에 대한 의견										
가. ESG 관련 주요 정책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출장)	가결
나. 그룹 탄소감축목표수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출장)	가결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개요, ESG 성과 및 하이라이트 등 관련 내용 및 ESG 각 분야별 전년 대비 차별화 요소 등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전반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 결의안건

가) ESG 관련 정책 중 세무정책, 사외이사 다양성 가이드라인, ESG 금융 원칙에 대한 일부 개정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나) 그룹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수립에 대한 주요 내용, SBTi 기준 그룹 탄소 감축목표 제출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호 미래사업추진부문장은 ESG 경영 차원에서의 탄소중립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 2023년도 제3차 ESG경영위원회 : 2023.10.27**

[안건 통지일 : 2023.10.19.]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송수영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임종룡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ESG 주요추진 성과 및 2024년 추진계획(안)	특이사항 없음							
나. 블룸버그 양성평등지수 (BGEI) 편입 추진 (안)	특이사항 없음							
4 결의안건에 대한 의견								
(결의안건 없음)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 가) 2023년 그룹 ESG 주요 추진사항, 2024년 국내·외 ESG 환경변화 전망 분석 및 2024년 ESG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송수영 위원장은 ESG 공시 관련 국내외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나) 블룸버그 양성평등지수 편입을 위한 평가 동향 및 추진 현황, 다양성&포용성 보고서 관련 내용 등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요환 위원은 ESG 평가 대응을 위한 다양성 목표의 달성분 아니라 조직 차원의 여성인력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통한 다양성 개선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평가**

이사회는 매년 2월 전년도 ESG경영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동 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ESG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 점검기준에는 동 위원회와 경영진간 의사소통, 위원회의 전문성,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 제공 수준, 위원회 활동성과 등이 포함됩니다.

**【ESG경영위원회 평가 세부내용】**

평가주체	위원 전원
평가근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2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제2항, 제3항
평가주기	1년(매년 2월 평가)
평가기준	구성/기능과 역할/운영/위원회와 담당 임원간 의사소통
평가방식	설문조사에 의한 절대평가 방식 (5점 척도 설문 평가)

동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결과**

- 당사 ESG경영위원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들이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소집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사전에 제출함. ESG 경영과 관련하여 위원들의 역량 및 경험을 반영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위원들의 요청 시 추가자료를 적시성 있게 제공함
-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규에 따라 적정하게 개최되고 있으며, 회의시간 분배도 적정히 이루어짐
- ESG경영과 관련한 전략, 정책 등을 적시성 있게 의결하였으며, ESG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 위원회와 경영진 간 의사소통을 충실히 함

# 10

## 그룹경영협의회

가. 역할

나. 구성

다. 운영현황

라. 활동내역

## 10. 그룹경영협의회

### 가. 역할

당사는 그룹경영협의회규정 제1조에 따라 그룹사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금융 환경 변화 대응 및 그룹의 기업가치 제고 및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룹경영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경영협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합니다.

- ① 그룹 전략, 비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과 관련된 사항
- ② 그룹 전략 실행을 위해 지주 및 그룹 내 협조·조정이 필요한 사항
- ③ 시너지 창출 극대화 등 그룹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 ④ 자회사의 경영현안으로 그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⑤ 그룹 차원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사항
- ⑥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 구성

그룹경영협의회규정 제2조에 따라 지주회사 대표이사, 자회사 대표이사 및 지주회사 대표 이사가 지정하는 자로 구성됩니다.

#### 【그룹경영협의회 위원 현황】

(2023.12.31. 기준)

성명	직위	위원 선임일	비고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2023.03.24.	의장
조병규	우리은행 은행장	2023.07.03.	-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이사	2023.03.23.	-
정연기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2023.07.03.	-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이사	2023.03.23.	-
이종근	우리자산신탁 대표이사	2023.03.23.	-
전상욱	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이사	2023.03.23.	-
최동수	우리금융에프앤아이 대표이사	2022.01.07.	-
남기천	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	2023.03.23.	-
김창규	우리벤처파트너스 대표이사	2023.03.23.	-
황우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대표이사	2022.12.28.	-
김경우	우리PE자산운용 대표이사	2019.01.11.	-
이중호	우리신용정보 대표이사	2022.03.04.	-
김정록	우리펀드서비스 대표이사	2023.03.22.	-

성명	직위	위원 선임일	비고
고정현	우리에프아이에스 대표이사	2022.02.25.	-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2023.08.01.	
이성욱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2020.02.11	재무부문
장광익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2023.04.03	브랜드부문
옥일진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2022.02.25.	디지털혁신부문
박장근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2023.03.07	리스크관리부문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2023.03.07	전략부문
송윤홍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2023.12.08	성장지원부문
전재화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2023.03.07	준법감시인
정규황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2023.03.07	감사부문
이해광	우리금융지주 상무	2023.03.07	경영지원부문

### 다. 운영현황

그룹경영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지주사 전략기획부는 그룹경영협의회 주관부서로 지주사와 자회사 유관부서로부터 협의 안건을 사전에 파악하며, 의장이 정한 협의회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각 위원 및 참석자에게 사전에 통지합니다.

의장은 필요시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설명을 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안에 대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여 추진하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로 하여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의장 또는 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라. 활동내역

그룹경영협의회는 2023년 총 11회 개최하여 그룹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협의사항은 2024년 그룹 및 자회사 경영계획, 리스크관리/재무관리/내부통제 등 그룹의 중점과제, 자회사별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사항, 그룹 시너지 추진 현황, 경영 트렌드 및 대응방안 등 그룹의 전략 실행을 위해 협조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11

##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나. 협의절차 (운영현황)

다. 구성

라. 활동내역 및 평가

## 11.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 총괄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수립한 리스크관리 정책을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별로 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에 대하여 결의할 수 있으며, 그룹 전체 및 각 회사의 리스크관리 현황의 파악 및 각 자회사 등 리스크관리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2) 구체적 역할

##### (가) 결의사항

-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 제5조에서 결의하도록 한 사항
- 리스크관리 관련 지침의 제정·개폐. 단, 관계법령, 감독당국의 규정 등 상위규정의 변경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단순한 용어·자구 수정은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장에게 위임하며,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장은 협의회에 사후 보고

##### (나) 심의사항

- 위원회 상정 안건에 관한 사항(단, 심의안건은 지주회사 리스크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생략 가능)
-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중 중요 사안 및 그 실행 결과
- 이사회 규정 제7조(결의사항 등)에서 정한 결의 대상 중 “조직의 변경, 신사업진출, 대규모 투자” 등을 포함한 그룹 차원의 중요 경영사항에 수반되는 리스크
-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손충당금등 적립에 관한 조정사항
- 그룹차원의 신상품 도입에 관한 사항
- 위원이 의장에게 심의를 요청하거나 의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 보고사항

-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한 진행현황 및 관리현황
- 그룹의 리스크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 기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 협의절차 (운영현황)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안건에 따라 전체 위원 중 관련 자회사 등의 위원을 지정

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혹은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 의결은 결의안건에 따라 소집 대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 다. 구성

### (1) 총괄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위원은 지주회사 리스크관리책임자 및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장, 각 자회사 등 리스크관리책임자(리스크관리업무 담당임원 포함) 중 지주회사 리스크관리책임자가 정하는 자로 구성됩니다.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의 의장은 지주회사 리스크관리책임자이며 의장은 협의안건에 따라 리스크관리책임자가 아닌 자회사 등의 소관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지정하여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 (2) 구성원

성명	그룹사	직위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	임기 만료일
박장근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2023.3.7	2025.3.6
박장근	우리은행	부행장	2023.3.7	2025.3.6
김동곤	우리카드	상무대우	2023.4.1	2025.3.31
이기홍	우리금융캐피탈	상무	2023.4.1	2025.3.31
전주이	우리종합금융	전무	2023.4.1	2025.3.31
김창현	우리자산신탁	상무	2023.4.1	2024.2.26
주종석	우리금융저축은행	상무대우	2022.1.1	2023.12.31
박경운	우리자산운용	이사대우	2022.5.1	2024.4.30
안홍주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전무	-	-
금경환	우리벤처파트너스	이사	-	-
배병철	우리PE자산운용	상무	2022.4.1	2024.3.31
최돈관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상무	2022.12.28	2024.12.27
박연호	우리금융지주	부장	-	-

## 라.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2023년에는 총 13회의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가 소집되었고,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의결안건 4건, 심의안건 49건, 보고안건 66건이었습니다.

의결안건은 그룹BIS자기자본비율관리지침 일부 개정, 특수금융기관 평가모형 개선 및 관련 지침 일부 개정, 계열 Large Exposure 한도설정을 위한 주채무계열기업군 Re-Grouping, 그룹 거액익스 포져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련 지침 제정 등 총 4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의안건은 주로 우리은행 대손충당금 산출요소 변경 적용,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결과 및 위기대응 계획, 그룹 내부자본한도 일부 조정, 신용리스크 측정요소(PD) 일부 변경, 2024년 그룹 리스크 한도 설정(안) 등 총 49건으로 모두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보고안건은 주로 리스크관리그룹 사업계획, 그룹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그룹 리스크 적합성 검증 결과, 그룹 기업신용평가모형 운영현황 등 총 66건이 보고되었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 (가) 2023년도 제1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 2023.1.26. (11:00~11: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정석영	홍윤기	김인수	전주이	구본신	주종석	박경운	배병철	최돈관	박연호	
1. 위원 성명	정석영	홍윤기	김인수	전주이	구본신	주종석	박경운	배병철	최돈관	박연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우리은행 2023년 리스크 관리그룹 사업계획	특이사항없음										
나. 우리카드 2023년 리스크 부문 사업계획	특이사항없음										
다. 우리금융캐피탈 2023년 리스크부문 사업계획	특이사항없음										
라. 우리종합금융 2023년 리스크부문 사업계획	특이사항없음										
마. 우리자산신탁 2023년 리스크부문 사업계획	특이사항없음										
바. 우리금융저축은행 2023년 리스크부문 사업계획	특이사항없음										
사. 우리자산운용 2023년 리스크부문 사업계획	특이사항없음										

아. 우리금융에프앤아이 2023년 리스크부문 사업계획	특이사항없음	
자. 우리PE자산운용 2023년 리스크부문 사업계획	특이사항없음	
차. 우리글로벌자산운용 2022년 리스크부문 사업계획	특이사항없음	

4. 심의안건

가. 우리금융캐피탈_리스크관리 조직신하팀 신설 및 업무분장(안)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나. 우리은행 대손충당금 산출요소 변경 적용(안)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2023년도 제1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는 재적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으며, 10개 그룹사 부문의 2023년 리스크부문의 사업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캐피탈\_리스크관리 조직 산하 팀 신설 및 업무분장(안)과 우리은행 대손충당금 산출요소 변경 적용(안) 2건을 심의 하였으며 참석 위원 8명 전원 동의하에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나) 2023년도 제2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 2023.2.22 (15:20~16: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정석영	홍윤기	김인수	전주이	구본신	주종석	박경운	배병철	최돈관	박연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년 4분기 그룹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나. 우리은행 2022년 4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다. 우리카드 2022년 4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라. 우리금융캐피탈 2022년 4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마. 우리종합금융 2022년 4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바. 우리자산신탁 2022년 4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사. 우리금융저축은행 2022년 4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아. 우리자산운용 2022년 4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자. 우리금융에프앤아이 2022년 4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차. 우리PE자산운용 2022년 4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카. 우리글로벌자산운용 2022년 4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타. 그룹 리스크 적합성검증 결과보고(2022년 4분기)	특이사항없음
파. 2022년 하반기 그룹리스크관리 협의회 심의·결의 진행현황	특이사항없음

4. 심의안건

가. 2022년 12월말기준 그룹 통합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찬성	-	찬성	원안 통과								
---	----	---	----	----	----	----	----	----	----	----	----	-------

4. 심의의결 안건

나. 특수금융금융기관 평가모형 개선 및 관련 지침 일부 개정(안)	찬성	-	찬성	원안 통과/가결								
--------------------------------------	----	---	----	----	----	----	----	----	----	----	----	----------

2023년도 제2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는 재적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으며, 10개 그룹사 부문의 2022년 4분기 리스크관리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2022년 4분기 그룹 리스크 적합성검증 결과, 2022년 하반기 그룹리스크 관리협의회 심의·결의 진행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말 기준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을 심의하고 특수금융기관 평가모형 개선 및 관련 지침 일부 개정(안) 심의 및 의결하였으며, 참석 위원 9명 전원 동의하에 각각 원안 통과 및 가결 되었습니다.

(다) 2023년도 제3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 2023.3.16 (09:30~09:4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박장근	홍윤기	김인수	전주이	구분신	주종석	박경운	배병철	최돈관	박연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안건												
가. 리스크관리조직 업무 분장 일부 개편(안)	찬성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나. 우리은행 리스크관리조직 업무 분장 일부 개편(안)	찬성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2023년도 제3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는 재적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으며, 리스크관리조직 업무 분장 일부 개편(안)과 우리은행 리스크관리조직 업무 분장 일부 개편(안) 2건을

심의하였으며 참석 위원 8명 전원 동의하에 원안 통과 되었습니다.

**(라) 2023년도 제4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 2023.4.13 (10:30~11:2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박장근	김동근	이기홍	전주이	김창현	주종석	박경운	배병철	최돈관	박연호		
1. 위원 성명	박장근	김동근	이기홍	전주이	김창현	주종석	박경운	배병철	최돈관	박연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년 12월말 기준 그룹 기업신용평가모형 운영현황 보고	특이사항없음											
나. 우리은행 IB그룹 PI자산 보고	특이사항없음											
다. 그룹 리스크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2023년 1분기)	특이사항없음											
4. 심의안건												
가. 2022년 12월말 기준 그룹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위기대응계획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나. 그룹 내부자본한도 일부 조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다. 우리자산신탁 내부자본 한도 일부 조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2023년도 제4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는 재적위원 10명 전원 참석하여 성원 되었으며, 2022년 12월말 기준 그룹기업신용평가모형 운영현황, 우리은행 IB그룹 PI자산, 2023년 1분기 기준 그룹 리스크 적합성 검증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말 기준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위기 대응계획, 그룹 내부자본한도 일부 조정(안), 우리자산신탁 내부자본한도 일부 조정(안)을 심의하고 참석 위원 10명 전원 동의하에 원안 통과 되었습니다.

**(마) 2023년도 제5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 2023.5.18 (15:00~15: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박장근	김동근	이기홍	전주이	김창현	주종석	박경운	배병철	최돈관	박연호		
1. 위원 성명	박장근	김동근	이기홍	전주이	김창현	주종석	박경운	배병철	최돈관	박연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년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완료 보고	특이사항없음	
나. 그룹 부문별 리스크관리현황 (2023년 1분기)	특이사항없음	
다. 우리은행 2023년 1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라. 우리카드 2023년 1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마. 우리금융캐피탈 2023년 1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바. 우리종합금융 2023년 1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사. 우리자산신탁 2023년 1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아. 우리금융저축은행 2023년 1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자. 우리자산운용 2023년 1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차. 우리금융에프앤아이 2023년 1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카. 우리PE자산운용 2023년 1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타. 우리글로벌자산운용 2023년 1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4. 심의안건

가. 그룹 내부자본한도 일부 조정(안)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원안 통과
-----------------------	----	----	----	---	----	----	----	----	---	----	-------

2023년도 제5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는 재적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으며, 10개 그룹사 부문의 2023년 1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2022년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완료 등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룹 내부자본한도 일부 조정(안)을 심의하였으며 참석 위원 8명 전원 동의하에 원안 통과 되었습니다.

**(바) 2023년도 제6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 2023.6.15. (11:00~11: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박장근	김동근	이기홍	전주이	김창현	주종석	박경운	배병철	최돈관	박연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안건											
가. 자체정상화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2023년도 제6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는 재적위원 10명 전원 참석하여 성원 되었으며, 자체정상화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였으며 참석 위원 10명 전원 동의하에 원안 통과 되었습니다.

**(사) 2023년도 제7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 2023.7.13 (11:00~11: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박장근	김동근	이기홍	전주이	김창현	주종석	박경운	배병철	최돈관	박연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심의·결의 사항 진행현황(2023년 상반기)	특이사항없음										
4. 심의안건											
가.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2023년 6월말기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나. 우리은행 대손충당금 산출요소 변경 적용(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다. 신용리스크 측정요소(PD) 일부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라. 리스크관리조직 업무 분장 일부 개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마. 우리은행 리스크관리조직 업무 분장 일부 개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바. 우리자산신탁 리스크관리조직 업무 분장 일부 개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사. 우리금융저축은행 리스크관리조직 업무 분장 일부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아. 우리카드 리스크조직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2023년도 제7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는 재적위원 10명 전원 참석하여 성원 되었으며, 2023년 상반기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심의·결의 사항 진행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6월말 기준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우리은행 대손충당금 산출요소 변경 적용(안), 신용리스크 측정요소(PD) 일부 변경(안) 등을 심의하였으며 참석 위원 10명 전원 동의하에 원안 통과 되었습니다.

**(아) 2023년도 제8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 2023.8.17. (15:30~16:1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박장근	김동근	이기홍	전주이	김창현	주종석	박경운	안홍주	금경환	배병철	최돈관	박연호		
1. 위원 성명	박장근	김동근	이기홍	전주이	김창현	주종석	박경운	안홍주	금경환	배병철	최돈관	박연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불참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그룹 리스크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2023년 2분기 기준)	특이사항없음													
나. 우리은행 IB그룹 PI자산 보고 (2023년 2분기 기준)	특이사항없음													
4. 심의안건														
가. 리스크관리 업무 분장 조정(안)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원안 통과						
5. 의결안건														
가. 그룹BIS자기자본비율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가결						
나. 계열 Large Exposure 한도 설정을 위한 주채무계열기업군 Re-Grouping(안)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가결						

2023년도 제8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는 재적위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으며, 2023년 2분기 기준 그룹 리스크 적합성 검증 결과, 우리은행 IB그룹 PI자산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리스크관리 업무 분장 조정(안) 1건을 심의하였으며 참석 위원 10명 전원 동의하에 원안 통과 되었습니다. 또한, 그룹BIS자기자본비율관리지침 일부 개정(안)과 계열 Large Exposure 한도설정을 위한 주채무계열기업군 Re-Grouping(안) 2건을 의결하였으며 참석 위원 10명 전원 동의하에 가결되었습니다.

(자) 2023년도 제9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 2023.09.14 (11:00~11: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박장근	김동곤	이기홍	전주이	김창현	주종석	박경운	안홍주	김경환	배병철	최돈관	박연호	
1. 위원 성명	박장근	김동곤	이기홍	전주이	김창현	주종석	박경운	안홍주	김경환	배병철	최돈관	박연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그룹 기업신용평가모형 운영현황 보고(2023년 6월말 기준)		특이사항없음	
나. 그룹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2023년 2분기)		특이사항없음	
다. 우리은행 2023년 2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라. 우리카드 2023년 2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마. 우리금융캐피탈 2023년 2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바. 우리종합금융 2023년 2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사. 우리자산신탁 2023년 2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아. 우리금융저축은행 2023년 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자. 우리자산운용 2023년 2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차. 우리금융에프앤아이 2023년 2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카. 우리PE자산운용 2023년 2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타. 우리글로벌자산운용 2023년 2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4. 심의안건

가. 그룹리스크관리규정·그룹 리스크 관리협의회규정 일부 개정(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나. 그룹 통합위기사황분석 결과 및 위기대응계획 (2023년 6월말 기준)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2023년도 제9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는 재적위원 12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으며, 2023년 6월말 기준 그룹 기업신용평가모형 운영현황, 그룹사 2023년 2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룹리스크관리규정·그룹 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 일부 개정(안),

2023년 6월말 기준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결과 및 위기대응계획 2건을 심의하였으며 참석 위원 11명 전원 동의하에 원안 통과 되었습니다.

**(차) 2023년도 제10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 2023.10.23 (10:30~10:5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박장근	김동곤	이기홍	전주이	김창현	주종석	박경운	안홍주	김경환	배병철	최돈관	박연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안건													
가. 대손충당금 산출요소 변경 적용(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2023년도 제10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는 재적위원 12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으며, 대 손충당금 산출요소 변경 적용(안) 1건을 심의하였으며 참석 위원 11명 전원 동의하에 원안 통과되었 습니다.

**(카) 2023년도 제11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 2023.11.16 (10:30~11: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박장근	김동곤	이기홍	전주이	김창현	주종석	박경운	안홍주	김경환	배병철	최돈관	박연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그룹 리스크 적합성검증 결과보고(2023년 3분기)	특이사항없음												
나. 그룹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2023년 3분기)	특이사항없음												
다. 우리은행 2023년 3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라. 우리카드 2023년 3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마. 우리금융캐피탈 2023년 3분기 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바. 우리종합금융 2023년 3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사. 우리자산신탁 2023년 3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아. 우리금융저축은행 2023년 3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자. 우리자산운용 2023년 3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차. 우리금융에프앤아이 2023년 3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카. 우리PE자산운용 2023년 3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타. 우리글로벌자산운용 2023년 3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없음

4. 심의안건

가. 2024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안)	찬성	원안 통과												
다. 우리은행 2024년 리스크관리 전략(안)	찬성	원안 통과												
라. 우리카드 2024년 리스크관리 전략(안)	찬성	원안 통과												
마. 우리금융캐피탈 2024년 리스크관리 전략(안)	찬성	원안 통과												
바. 우리종합금융 2024년 리스크관리 전략(안)	찬성	원안 통과												
사. 우리자산신탁 2024년 리스크관리 전략(안)	찬성	원안 통과												
사. 우리금융저축은행 2024년 리스크관리 전략(안)	찬성	원안 통과												
아. 2024년 그룹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 변경(안)	찬성	원안 통과												
자. 시장리스크 간편법 적용기준 변경(안)	찬성	원안 통과												

2023년도 제11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는 재적위원 12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으며, 2023년 3분기 기준 그룹 리스크 적합성검증 결과, 그룹사 10개 부문 2023년 3분기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을 보고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안), 2024년 그룹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 변경(안), 시장리스크 간편법 적용기준 변경(안) 등 9건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참석위원 전원 동의하에 원안 통과 되었습니다.

(타) 2023년도 제12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 2023.12.07 (10:00~11: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박장근	김동곤	이기홍	전주이	김창현	주종석	박경운	안홍주	금경환	배병철	최돈관	박연호		
1. 위원 성명	박장근	김동곤	이기홍	전주이	김창현	주종석	박경운	안홍주	금경환	배병철	최돈관	박연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	특이사항없음													
4. 심의안건														
가. 2024년 그룹 리스크 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나. 우리은행 2024년 내부자본 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다. 우리카드 2024년 내부자본배분 및 리스크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라. 우리금융캐피탈 2024년 리스크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마. 우리종합금융 2024년 내부 자본배분 및 한도설정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바. 우리자산신탁 2024년 내부자본 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사. 우리금융저축은행 2024년 내부자본 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아. 우리자산운용 2024년 내부 자본 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자. 우리금융에프앤아이 2024년 리스크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차. 우리벤처파트너스 내부자본 한도 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카. 우리PE 2024년도 내부자본 및 PI한도 운영(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타. 2024년 국가별/지역별 익스포져 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파. 우리은행 2024년 국가별/지역별 신용공여한도 정기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하. 그룹 금융배출량 측정시스템 운영(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	

5. 심의의결안건

가. 그룹 거액익스포저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련 지침 제정(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안 통과/가결							
--------------------------------------	----	----	----	----	----	----	----	----	---	----	----	----	----	----------

2023년도 제12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는 재적위원 12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으며, 2023년 그룹 내부자본적정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2024년 그룹 리스크 한도 설정(안), 2024년 국가별/지역별 익스포저 한도 설정(안), 그룹 금융배출량 측정시스템 운영(안) 등 14건에 대해 심의하고, 그룹 거액익스포저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련 지침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참석 위원 11명 전원 동의하에 각각 원안 통과 및 가결 되었습니다.

**(따) 2023년도 제13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 2023.12.13 (서면개최)**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박장근	김동곤	이기홍	전주이	김창현	주종석	박경운	안홍주	금경환	배병철	최돈관	박연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4. 심의안건

가. 2024년 그룹 리스크 한도 설정(안)	찬성	원안 통과												
나. 우리벤처파트너스 내부자본 한도 심의 건	찬성	원안 통과												

2023년도 제13차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는 2024년 그룹 리스크 한도 설정(안), 우리벤처파트너스 내부자본 한도 등 2건을 서면 개최하여 심의하였으며, 재적위원 12명 전원 동의하에 원안 통과 되었습니다.

# 12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 12.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해당사항 없음

# 13

##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가.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활동 내역

## 13.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가.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활동 내역

- (1)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승인한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 이사회가 내부통제 취약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 대표이사에게 징계조치를 요구한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제 2 절

# 보상체계 연차보고서

# 1

## 보상위원회

가. 총괄

나. 구성

다. 권한과 책임

라. 보상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 1. 보상위원회

### 가. 총괄

당사의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은 그룹의 보상정책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임원 등에 대한 보상체계가 그룹의 경영성과, 전략목표 달성 및 리스크 구조가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과 추구를 통한 기업 핵심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 운영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과보수 체계를 주주의 이해와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인 보상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 및 보상 정책을 상기 내용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보상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며,『이사회규정』 제9조 (이사회내 위원회)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하여 2019년 1월부터 운영되어왔습니다.

위원장은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합니다.

또한, 『보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 나. 구성

#### (1) 총괄

보상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 보상위원회 규정 제5조에 의거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사외이사를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보상체계에 리스크관리 측면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 1인 이상을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제고했습니다.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총 4인(신요환, 윤인섭, 정찬형, 윤수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이고 신요환 이사가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어, 보상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인섭, 윤수영 이사는 현재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보상 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관리 측면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요환 이사는 금융 및 경영, 윤인섭 이사는 금융 및 회계, 정찬형 이사는 금융 및 재무, 윤수영 이사는 금융 및 경제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24일까지 노성태(사외이사), 박상용(사외이사)가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력
신요환	사외이사	사외이사	有	신영증권 대표이사
노성태	사외이사	사외이사	有	한화생명 경제연구원장
박상용	사외이사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有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윤인섭	사외이사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有	푸본현대생명 이사회 의장(회장)
정찬형	사외이사	사외이사	有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윤수영	사외이사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有	키움증권 부사장

## (2) 구성원

【2023년 3월 24일 이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신요환	사외이사	위원장	2022.1.27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노성태	사외이사	위원	2019.1.11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박상용	사외이사	위원	2019.1.11	
윤인섭	사외이사	위원	2022.1.27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정찬형	사외이사	위원	2019.1.11	

**【2023년 3월 24일 이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신요환	사외이사	위원장	2022.1.27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윤인섭	사외이사	위원	2022.1.27	
정찬형	사외이사	위원	2019.1.11	
윤수영	사외이사	위원	2023.3.24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상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당사 보상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임원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외부인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성과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상위원회는 2023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상위원회에서 아래 내용을 결의하였습니다.

- 임원을 포함한 경영진(이하 경영진)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보상을 결정하고 보상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보상 및 지급방식은 아래 보상의 세부정보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 기본급과 수당은 개인별 산정금액에 따라 매달 나누어 지급하며, 성과급은 연봉 기준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운용하여, 평가 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과급은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나누어 단기성과급은 2023년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장기성과급은 장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만 3년이 경과하는 2027년에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3)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상위원회는 2023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상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보상체계 연차 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보상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은행연합회에서 정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보상체계 연차보고서’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당사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되,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의결하는 보상위원회가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 (4) 보상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상위원회는 2023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상위원회에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경영진 성과평가지표와 보상기준 관련 논의를 통해 사내이사의 재무 및 비재무 부문의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책임자 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아니 하는 별도의 보상기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단, 리스크관리책임자의 경우,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자본적정성, 리스크반영 수익성, 건전성 부문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경영진의 장기성과지표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설정하여 장기성과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 보상위원회는 2023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상위원회에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연차보상평가 결의를 통하여 당사의 보상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5) 보상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상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는 동 보상체계연차보고서 ‘1.보상위원회-라.보상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1)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중 보상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 (6)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당사 보상위원회는 2023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상위원회에서 아래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 현재 당사의 보상체계가 당사의 손익규모 및 자본 등과 같은 재무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상위원회에서 임원 성과평가지표 결의시 보통주자본 비율, RAROC,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의 지표가 반영되어 당사의 보상체계가 재무상황 및 위험과 적절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년간 장기성과평가 후 장기성과급 지급 시 만 3년 이상의 이연기간을 적용하여 경영진이 과도하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성과보수의 원칙, 이연지급과 같은 보상체계 관련 법규 전반에 관해 내규 및 운용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상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상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는 2023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상위원회에서 연차보상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동 평가에서 당사의 보상정책 및 운영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보상위원회의 구성, 보상 제도의 설계 및 운영, 성과평가기준의 구성, 보상기준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8) 보상위원회 보상정책의 적용 범위**

- ① 국내 :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적용
- ② 해외 : 해당 사항 없음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보상위원회규정』 제7조에 보상위원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임원 등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3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상위원회에서 변동보상의 대상자를 경영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영진은 대표이사 회장, 사장, 수석부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보) 등 임원을 범주로 하였습니다. 해당 범주에 따라 2023년 12월 말 기준 임원은 대표이사 회장 1명, 부사장 9명, 상무 1명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인원수 (2023.12.31.)	직명
경영진	11명	회장, 부사장, 상무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명	해당 사항 없음

**라. 보상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상위원회는 위원장(현재 신요환 이사)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023년도 결의사항 중 별도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2023년에는 총 2회의 보상위원회가 소집되었고, 보상위원의 평균 참석률은 100%입니다. 평균 참석률을 90% 이상을 유지하여 실질적인 보상위원회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3년도 1차 보상위원회 : 2023년 3월 3일 (09:00 ~ 10:20)**

[안건 통지일 : 2023.02.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신요환	윤인섭	정찬형	노성태	박상용	
1. 위원 성명	신요환	윤인섭	정찬형	노성태	박상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sup>1)</sup> (2022년 지주사 경영실적 평가 및 2023년 지주사 성과평가기준(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sup>2)</sup> (2022년 자회사 경영실적 평가 및 2023년 자회사 성과평가기준(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sup>3)</sup> (2022년 지주사 경영진 보상(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안건 <sup>4)</sup> (2023년 지주사 경영진 보상기준(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5호안건 <sup>5)</sup> (2022년 연차보상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6호안건 <sup>6)</sup> (보상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2022년 지주사 경영실적 평가 및 2023년 지주사 성과평가기준(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기 위함
- 2) 2022년 자회사 경영실적 평가 및 2023년 자회사 성과평가기준(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기 위함
- 3) 2022년 경영진에 대한 보상(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기 위함
- 4) 2023년 경영진에 적용할 보상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기 위함
- 5) 당사의 보상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하기 위함
-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해 보상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내용을 확정하고 공시하기 위함

(나) 제2023년도 2차 보상위원회 : 2023년 4월 20일 (09:40 ~ 10:40)

[안건 통지일 : 2023.04.1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신요환	윤인섭	정찬형	윤수영	
1. 위원 성명	신요환	윤인섭	정찬형	윤수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sup>1)</sup> (조직개편에 따른 비재무지표 조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sup>2)</sup> (2023년 우리벤처파트너스 성과 평가기준(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sup>3)</sup> (2023년 지주사 경영진 보상 기준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2023년 조직개편에 따라 경영진에 적용할 성과평가기준을 변경하여 운용하기 위함
- 2) 2023년 자회사에 적용할 성과평가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기 위함
- 3) 2023년 직위 신설에 따라 경영진에 적용할 보상기준을 변경하여 운용하기 위함

(4) 평가

당사는 보상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상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임시이사회(2019.12.20.)에서 평가방법을 수립·결의 하였으며,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보상위원회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 운영실적 평가 세부 항목에는 구성(전문성), 기능과 역할, 운영, 위원회와 경영진간 의사소통이 포함됩니다.

【보상위원회 평가 세부내용】

평가주체	위원 전원
평가근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2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제2항, 제3항
평가주기	1년(매년 2월 평가)
평가기준	구성 / 기능과 역할 / 운영 / 위원회와 담당 임원간 의사소통
평가방식	설문조사에 의한 절대평가 방식 (5점 척도 설문 평가)

2023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구성 부문에서는 이사들의 역량과 경험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토의와 활동을 하기 적절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기능과 역할 부문에서는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경

영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운영 부문에서는 안전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 제공과 건설적인 비판 및 대안제시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위원회와 경영진간 의사소통 부문에서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경영지원부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지원이 원활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실적 평가는 보상위원회 위원들의 평가와 동 결과를 취합 후 전체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2

## 보상체계

가. 주요사항

나. 보상 세부사항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상 세부사항

## 2. 보상체계

### 가. 주요사항

####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상의 연계방식

#####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당사는 수익성 및 건전성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지표로는 수익성 지표 (ROE, ROA, RAROC 등), 건전성 지표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본적정성 지표 (보통주자본비율 등), 효율성 지표 (C/I Ratio 등) 등을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주요 경영관리 부문을 평가하기 위한 경영과제(Biz 핵심역량 Value-up, 차별적 미래성장 추진, 고객중심 디지털 플랫폼 확장, 불확실성 대응 리스크관리 강화, 내부통제 체계 견고화, ESG 부문 Top-Tier 도약, 그룹체계 Level-up 등), 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관리 강화) 및 내부회계(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이수, 내부회계 운영실태 평가) 등을 비재무지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CEO 및 경영진은 그룹 전체 재무성과 지표 및 담당업무별 고유 업무를 반영한 경영과제 등 비재무 지표를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업무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담당임원, 리스크담당 임원, 준법감시인의 경우에는 재무 성과와 무관한 지표로 성과지표를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 리스크담당임원의 경우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자본적정성, 리스크반영 수익성, 건전성 부문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재무 성과지표	비재무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성과평가 지표 : ROE, ROA, RAROC, 보통주자본비율, C/I Ratio, 고정이하여신비율</li> <li>• 장기 성과평가 지표 : 상대적주주수익률, ROE, 당기순이익, C/I Ratio, 고정이하여신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z 핵심역량 Value-up</li> <li>- 차별적 미래성장 추진</li> <li>- 고객중심 디지털 플랫폼 확장</li> <li>- 불확실성 대응 리스크관리 강화</li> <li>- 내부통제 체계 견고화</li> <li>- ESG부문 Top-Tier 도약</li> <li>- 그룹체계 Level-up</li> </ul>

#####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상의 연계방법

경영진은 그룹사 재무성과 평가결과와 개인별 성과측정 지표로서 해당 임원의 전략과제 등 비재무 성과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성과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및 감사의 보상 세부 지급기준은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내이사의 보수 체계

는 기본급 및 활동수당, 장·단기 성과급, 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급은 자본 적정성, 수익성, 효율성, 자산건전성 등의 재무지표와 경영과제 등의 비재무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단기)재무지표 : 보통주자본비율,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위험조정자기자본이익률, 판매관리비용률,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 (장기)재무지표 : 상대적주주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 판매관리비용률,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사외이사의 보수체계는 기본급 및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역할 및 활동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상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상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직급별 직무의 특성 및 업무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총보상(기본급, 성과급) 중 변동보상(성과급) 비율을 확대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변동보상액 중 당해 연도 성과 측정 결과에 따라 산정된 변동보상의 33% ~ 57%는 즉시 지급하나, 43% ~ 67%는 당해 연도 성과가 당해 연도 이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별도평가를 통하여 3년간 이연 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경영진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변동보상(성과급)비율	71%	63%	62%	60%	58%
이연비율	67%	53%	50%	47%	43%
이연기간	당해연도 제외 만3년				

**(나) 이연된 보상액 또는 지급된 보상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CEO 및 경영진은 성과평가 점수와 성과보상이 연계되어 있어 성과 미달 시 평가점수 하락으로 인해 성과보상이 축소됩니다. 부여 이후 4년간의 평균 성과에 의해 최종 지급 수량이 결정되고, 지급 시점의 주가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당사 장기성과급 구조상 지급 이전에 목표에 미달할 경우 장기보수 전체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어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자연히 보수 금액이 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 이연보상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CEO 및 경영진의 경우, 장기성과급은 당해 연도 성과를 포함하여 4개년의 장기성과 측정결과와 이연지급 시점의 주가 등에 따라 지급액 및 지급여부가 확정됩니다.

###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 (가) 전체 보상액 중 고정보상액과 변동보상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상액 중 고정보상액과 변동보상액의 배분기준은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고정보상액은 기본급으로, 성과평가에 따른 변동보상액은 성과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상액 중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상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나) 성과보상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변동보상의 지급 형태는 현금보상과 현금 결제형 주식기준보상 형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다) 성과보상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경영진의 경우 성과보상액 중 40% 이상을 장기성과와 연동하기 위하여 현금 결제형 주식기준보상 형태로 보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성과보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 (라) 성과보상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변동보상액은 직위와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이연지급의 배분비율을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을 포함한 경영진의 경우 성과보상액 중 33% ~ 57%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 43% ~ 67%는 장기성과와 연동하여 3년 동안 이연하고 있습니다.

### (4) 일반직원의 보상체계

####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제도

당사는 성과주의 문화 정착 및 일반 직원의 회사에 대한 주인 의식 함양 그리고 성과공유라는 취지에서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를 도입,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소속집단별 경영실적 결과, 개인별 성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연공서열에 의한 직급별 호봉제 대신 연봉제를 도입하여 임금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보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보상위원회 위원들에게 임직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보상위원회의 결의 대상이 되는 경영진이 보상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 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관련 보험을 활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7) 보상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는 2023년 3월 3일 제1차 보상위원회 결의에 의거하여 2023년 적용 경영진의 장·단기 성과지 표를 결의하였습니다.

**나. 보상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상**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상총액 (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상 (A/C)
			비율 (A/B)		
전년도 (2022년)	311.7	37,492.4	0.83%	159	1.96
당해년도 (2023년)	248.5	44,853.7	0.55%	122	2.04

- 주1) 임직원보상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그룹연결기준의 (t-1)기의 금액을 기재  
[예시 : 연도가 2023년인 경우 2022년 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재]
- 주3) 임직원보상총액(A), 임직원수(C)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공시기준에 따라 작성

**(2) 직급별 보상총액 및 성과보상액**

(단위 : 억원)

구분		임원주 <sup>1,2)</sup>		직원주 <sup>1,2)</sup>			
		등기	미등기	부부장이상	차장/과장	대리급 이하	기타직원
전년도 (2022년)	보상총액	19.3	46.9	129.1	89.3	2.4	24.8
	성과보상액	5.4	13.5	24.1	11.4	0.3	3.8
당해년도 (2023년)	보상총액	24.5	32.8	84.7	65.8	1.2	39.5
	성과보상액	7.9	7.4	12.9	8.2	0.1	6.3

- 주1) 경영진 중 임원이 아닌 대상자 및 기타 계약인력은 기타직원에 기재
- 주2)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공시기준에 따라 작성

###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상 세부사항

#### (1)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sup>주2)</sup>	기본급 <sup>주3)</sup>	성과보상액 <sup>주3)</sup>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22년)	임원	19	47.3	46.8	25.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3년)	임원	작성중 (2024년 3월 15일前 공시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주1)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 및 당사 보상위원회에서 경영진으로 결정한 직원을 포함 (이하 동일)

주2) 해당년도 중 6개월 이상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특정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3)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상'으로 분류

#### (2) 성과보상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상액	성과보상액				
		현금	주식 <sup>주1)</sup>	주식연계상품 <sup>주2)</sup>	기타 <sup>주3)</sup>	
전년도 (2022년)	임원	46.8	27.5	-	19.3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3년)	임원	작성중 (2024년 3월 15일前 공시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주1) 주식 :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 등)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주2) 주식연계상품 :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 주2)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상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주3) 기타 :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한다.

(3)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sup>주1)</sup>		
			지급확정 <sup>주2)</sup>	지급미확정 <sup>주2)</sup>
전년도 (2022년)	임원	75.1	-	75.1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3년)	임원	작성중 (2024년 3월 15일前 공시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주1) 이연보상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상액을 기재한다.

주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상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

(4) 이연보상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22년)	임원	75.1	15.2	-	59.9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3년)	임원	작성중 (2024년 3월 15일前 공시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5)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22년)	임원	75.1	25.2	24.8	15.8	9.3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3년)	임원	작성중 (2024년 3월 15일前 공시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23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상액을 2023년(t기) 발생분, 2022년(t-1기) 발생분, 2021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상의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sup>주4)</sup>	
	축소액 <sup>주1)</sup>	직접적 조정 <sup>주2)</sup>	간접적 조정 <sup>주3)</sup>		
전년도 (2022년)	임원	-	-	-	75.1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3년)	임원	작성중 (2024년 3월 15일前 공시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상을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상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 주2) 이연보상이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 주3) 이연보상이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 주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상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상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상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22년)	임원	(해당 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3년)	임원	작성중 (2024년 3월 15일前 공시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 사항 없음)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상액에서 제외

## [첨부] 관련규정 첨부

1. 정관
2. 지배구조 내부규범
3. 이사회규정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5. 감사위원회규정
6.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7. 보상위원회규정
8.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9. ESG경영위원회규정
10. 그룹경영협의회 규정
11. 경영승계규정

## 정관

[시행 2023.03.24.] [규정 2023.03.24.,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라 한다. 영문으로는 Woori Financial Group Inc.라 표기한다.

**제2조(사업의 목적)** 이 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소유 및 자회사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등 금융지주회사법에 정의된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3. 기타 법령상 허용하는 업무
4. 위 각 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woorifg.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2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80,164,306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수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5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범위내로 한다.

**제9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개정 2020.03.25.>

**제10조(배당우선 영구주식)**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영구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종류주식의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② 이사회는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률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이사회가 정함),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자산가액의 결정방법, 이익배당하는 조건을 정한다. 단,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한다.

③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이거나 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비율은 보통주식에 적용하는 주식배정비율과 동일하게 한다.

**제10조의2(배당우선 상환주식)** ① 이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고,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종류주식은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 신주 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배정비율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③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선택에 의해 상환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5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간 이전에 상환할 수 있다.
2. 회사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3. 회사가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이 승인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한다.
4.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상환시의 시가」, 「발행가액」, 「발행가액에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산한 금액」중에서 종류주식의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5. 상환기간 최종일에 상환하여야 하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6.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청구에 의해 상환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청구기간은 제3항제1호를 준용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상환기간”은 “상환청구기간”으로 본다.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 관련은 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3. 상환가액은 제3항제4호를 준용한다.
4. 상환연장은 제3항제5호를 준용한다. 다만, 제3항제5호의 “상환기간”은 “상환청구기간”으로 본다.
5.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6.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배당우선 전환주식)** ① 이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종류주식은 보통주식 혹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내로 한다.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 신주 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배정비율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단, 제3항제1호 단서에 의한 전환비율 조정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시의 배정비율은 조정된 그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른다.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이 회사가 전환하거나 또는 주주가 회사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1.03.26.>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발행시 이사회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주권의 희석방지 관례를 감안하여 관련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희석방지 조항에 의하여 전환비율은 조정될 수 있다.
2. 전환 또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 혹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④ 종류주식은 제2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 경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종류주식”으로 본다)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1.03.26.>

**제10조의4(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 ① 이 회사가 발행할 4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종류주식은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하고, 보통주식 혹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내로 한다.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 신주 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배정비율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단, 제10조의3제3항제1호 단서에 의한 전환비율 조정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시의 배정비율은 조정된 그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른다.

③ 종류주식의 상환은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종류주식의 전환은 제10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⑤ 삭제<2021.03.26.>

**제10조의5(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 ① 이 회사가 발행할 5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종류주식의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내로 한다.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 신주 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배정비율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단, 제10조의3제3항제1호 단서에 의한 전환비율 조정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시의 배정비율은 조정된 그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른다.

③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5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동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누적적 종류주식의 경우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며, 전환비율은 제10조의3제3항제1호 단서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④ 삭제<2021.03.26.>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 등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⑤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회사의 이사가 아닌 자에게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설립 ·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제1항의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상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는 제외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이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성과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⑩ 삭제<2021.03.26.>

**제13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개정 2021.03.26.>

[제목개정 2021.03.26.]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개정 2020.03.25.>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내규에 따른다.

**제15조(소유자명세의 작성 요청)**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 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 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3.26.]

**제16조(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개정 2021.03.26.>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3.26.>

### 제3장 사채

**제17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삭제<2020.03.25.>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 등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이사회는 제1항의 전환사채를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개정 2021.03.26.>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 등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삭제<2021.03.26.>

**제20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이익배당참가에 관한 사항은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기준으로 하여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21조(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 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본 조에서 순차적으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하고, 총칭하는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이라고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액면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액면총액이 20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이 회사가 발행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 발행의 주식으로 전환된다. 이 회사의 이사회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당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1. 이 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이 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④ 이 회사가 발행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금의 상환 및 이자 지급의 무가 감면(이하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된다. 이 회사의 이사회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당시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⑤ 이 회사의 주주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배정할 수 있다.

1. 해당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2. 해당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등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3.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형 조건부자

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20.03.25.>

**제22조의2(사채 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신주인수증권 및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신주인수권증권 및 조건부자본증권 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03.26.>

[본조신설 2020.03.25.]

## 제4장 주주총회

**제23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개정 2021.03.26.>

**제24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이사가 소집한다.

**제25조(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 및 상법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상장회사가 통지·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항을 제4조 단서에서 정하는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상장회사가 통지·공고해야 하는 사항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상법 기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와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0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제33조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한다.

**제33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주주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 까지 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5장 이사·이사회

**제35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15인 이내로 한다.

②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로 구분하고,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36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개정 2020.03.25.>

- 제37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년 이내로 연임할 수 있으며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임기는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한다.

- 제38조(사외이사의 자격조건)**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및 정보기술 등 관련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 제39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보선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0조(대표이사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 1명을 선임한다.

- 제41조(대표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방향에 따라 회사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2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관련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이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이사회결의의 구성과 역할)**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

련법령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과 기타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주주이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세부사항 및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44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②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③ 의장 유고시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이사회 소집)** ① 이 회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다른 이사는 의장에게 이사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각 이사에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6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7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

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8조(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03.25., 2021.03.26., 2023.03.24.>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상위원회
5.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6. ESG경영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의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9조(이사의 보수 등)** 이사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등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50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 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장 감사위원회

**제51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위원 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위원장)를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의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이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53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7장 계산

**제54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제2항의 서류와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방법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56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8조(주식의 소각)** 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에 의할 것. 이 경우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또는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3.26., 2023.03.24.>
- ③ 제1항에 의해 회사가 기타의 재산으로 배당하는 경우 주주는 배당되는 기타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기타의 재산 대신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개정 2022.03.25., 2023.03.24.>

-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3.03.24.>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2021.03.26., 2023.03.24.>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 ④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5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3.26., 2023.03.24.>
- ⑤ 삭제<2021.03.26.>
- [제목개정 2023.03.24.]

**제61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62조(보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른다.

**부칙**<4, 2023.03.24.>

이 정관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지배구조 내부규범

[시행 2023.03.24.] [규정 2023.03.24.,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이하“지주회사”라 한다)가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이하“지배구조 내부규범”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그룹”이란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이하에서 정의)으로 구성된 회사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3.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4. “이사회등”이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5.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6.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지주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자회사등”이란 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등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정의된 회사를 말한다.
8. “손자회사등”이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회사로서 자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한다.
9. “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0. “경영진”이란 임원 중에서 사외이사과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3조(공시)** 지주회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변경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제정·변경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정 및 변경 등)**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변경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사항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장 이사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절 이사회 의 구성

**제5조(구성기준)** ① 지주회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주회사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이나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6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를 주재한다.  
 ③ 이사회 의장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한다.  
 ⑤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7조(이사의 자격요건)** ① 이사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 단,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② 이사는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는 투철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며, 지주회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고와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 제8조(이사회 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회는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이사회 의 권한으로 정한 것과 지주회사의 중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 임원 등과 지주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이사회 의 결의사항의 집행결과와 그 실적
  2. 종합적인 경영분석보고
  3. 각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
  4. 기타 법령, 내부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보고를 요구하거나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 및 지주회사의 장기적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지주회사, 주주 및 금융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 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주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기간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영업상 비밀을 타 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지주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에는 지주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⑤ 지주회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이사 재임 시의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 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⑥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 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지주회사(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지주회사가 회원, 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 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외이사가 지주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 제4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0조(이사 선임의 기준 및 절차)** ①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②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는 대표이사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20.03.25.>

④ 비상임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신설 2020.03.25.>

⑤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 이전에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1. 사내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2.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⑥ 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활동기간 동안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⑦ 사외이사는 6년 이상 재직할 수 없으며,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 재직할 수 없다.

**제11조(이사 퇴임의 기준 및 절차)**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가 만료한 경우
2.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정관에서 정한 당연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법령·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 또는 직무의 현저한 부적정 사유가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된 경우

②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라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지 않을 때에는 그의 보궐 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궐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요건

에 맞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절 이사회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제12조(이사회 소집절차)**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④ 의장이 아닌 다른 이사는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각 이사에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 의결권 행사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6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4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 개최 및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제1항에서 수립·결의한 연간계획과 이사회 운영 내역을 기초로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15조(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 ① 지주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고 상시적으로 운영한다.<개정 2020.03.25., 2021.03.26., 2023.03.24.>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 4. 보상위원회
- 5.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 6. ESG경영위원회

- ② 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특별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 ④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

**제16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위원은 이사회 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은 이사회 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 결의사항 등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17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위원 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2.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요청
  - 3.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서 감사위원회 의 업무로 정한 사항과 이사회 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 ④ 감사위원회 의 결의사항 등은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18조(리스크관리위원회)** 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회 의 결의로 선임한다. 이때 위원 중 1명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이사회 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2.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 결정

-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4.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 5.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 ④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 등은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19조(보상위원회)** ① 보상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위원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이 때 위원 중 1명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보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3.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서 보상위원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 ④ 보상위원회의 결의사항 등은 보상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20조(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개정 2020.03.25.>

- ②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임기는 대표이사 임기까지로 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0.03.25.>
  -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여부 검증
  - 3. 그 밖에 이상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위임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등은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03.25.>

**제20조의2** 삭제<2023.03.24.>

**제20조의3(ESG경영위원회)** ① ESG경영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ESG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ESG경영 전략 방향 및 정책 수립

2. ESG경영 관련 중요 의사결정

④ ESG경영위원회의 결의사항 등은 ESG경영위원회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03.26.]

**제21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1주간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22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안건의 적정성, 위원들의 참석률,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③ 이사회는 평가결과를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

④ 본 조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23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임원(등기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 단,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② 임원은 금융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및 도덕성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지주회사는 전문성, 윤리성 등 별도의 자격기준을 둘 수 있다.

**제2절 임원의 권한과 책임**

**제24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 대표이사는 지주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에 결의사항을 집행하고 이사회가 정한 방향에 따라 지주회사 업무 전반을 통할한다.

②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정한 업무분장에 의거 지주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담당직무에 상응하는 전결권을 행사한다.<개정 2020.03.25.>

③ 임원은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정관, 지주회사의 내규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3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25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등기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은 대표이사의 임용결정에 따른 임용계약을 통해 선임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재선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약기간을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요업무집행책임자(전략기획, 재무관리, 리스크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와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④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퇴임)** ① 임원(등기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가 만료한 경우

2. 의원 사직하는 경우

3.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및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관련법령, 정관, 지주회사의 내규 및 제반 지시사항 위반 등 임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및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해임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준법감시인 또는 리스크관리책임자를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27조(임원에 대한 교육)** ① 지주회사는 신임임원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전략, 금융, 재무,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주회사는 임원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③ 지주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또는 연수의 평가결과를 해당 임원의 재선임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 ① 지주회사는 장기 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해 임원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평가결과를 임원 선임 및 재선임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업무특성에 따라 특별한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임원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29조(임원 성과평가)** ①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는 보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임원에 대한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임원이 연임할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성과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상위원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 성과보수(단기성과급 및 장기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구분한다.

- ②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는 평가결과 등에 따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지급액은 보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임원(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성과보수의 100분의 40이상에 대하여 3년 이상 이연 지급한다.

### 제5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31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① 지주회사는 그룹의 장기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하여 안정적 경영승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경영승계 절차개시 사유는 최고경영자의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사임, 유고 등으로 하며, 이사회는 지주회사의 상황,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또는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지주회사 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등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
- ⑥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을 따르되, 해당 규정이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32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①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이사회 담당부서로 한다.

- ②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33조(최고경영자의 자격)** ① 최고경영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

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지주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제34조(최고경영자 후보의 추천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지주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지주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린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6조(책임경영체제 확립)** ① 최고경영자의 임기, 선임 및 퇴임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최고경영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관련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최고경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장 공시

**제37조(정기공시)** ① 지주회사는 매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라 한다)와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대한 보고서(이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등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② 지주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수시공시)** ① 지주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임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임원을 선임한 경우: 임원이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담당하는 업무·직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임원을 해임한 경우: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포함할 것
3. 일반인이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할 것
4. 지주회사가 공고한 것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것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통지에 갈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을,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후보 인선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인선자문단의 명단 및 약력
4. 사외이사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지주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한다.)
5. 사외이사 후보자와 지주회사(자회사등을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6. 관련법령 및 제7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7.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등
8.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9.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9조(주주총회)** ① 이사회 의장,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장은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② 지주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주주의 참석률, 안건별 찬반 주식수 비율, 발행 주식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수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40조(공시방법)**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공시는 지주회사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여야 한다.

부칙<3, 2022.03.24.>

이 규범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이사회규정

[시행 2023.03.24.] [규정 2023.03.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금융지주(이하“지주회사”라 한다)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정관 또는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필요한 경우 이사회 운영에 관한 별도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이 규정 내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한 관련법령 또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권한과 책임)** ① 이사회는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과 지주회사의 중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 및 지주회사의 장기적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이사회는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5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를 주재한다.  
 ③ 이사회 의장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한다.  
 ⑤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6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이 아닌 다른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결의사항 등)** ① 이사회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03.25., 2021.03.26.>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 소집
  - 나. 주주총회에 제출할 사항
  - 다.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2. 경영 일반에 관한 사항
  - 가. 그룹 경영목표, 경영전략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
3. 조직에 관한 사항
  - 가. 해산, 영업양도, 합병 및 분할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 나. 자회사등의 편입 또는 제외에 관한 사항. 다만, 손자회사등의 편입 및 제외의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자회사등이 손자회사등에 출자한 금액(다른 자회사등과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각 자회사등별 출자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이 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자금조달 및 자본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주식의 발행 또는 소각
  - 나. 사채의 발행
  - 다. 자본금의 변경, 준비금의 자본전입
5.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이사 후보(임기포함)의 확정
  - 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사외이사의 선임 및 해임
  - 다. 사내이사인 경영진(회장 제외)의 선임 및 해임<개정 2022.02.14.>
  - 라.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폐해, 각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마.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위의 결정
  - 바.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 이사 보수의 결정
  - 사. 상법상 경업금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관련 승인
  - 아.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평가방법의 결정
  - 자.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6. 중요한 계약, 소송 등에 관한 사항
  - 가.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계약(차입 포함). 단, 용역계약의 경우 건당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나.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 및 자금지원

- 다. 건당 소가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소의 제기, 취하 및 인낙
  - 7.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가. 정관의 변경
    -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경영승계규정, 경영진운영규정, 그룹내부통제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 및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이사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 다. 관련법령, 지주회사의 내규 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8. 윤리강령,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폐 (단,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의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 회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9.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10. 대주주·임원 등과 지주회사 간의 이해상충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의 사항
    - 가.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 다.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라. 이사회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가 결의한 사항 중 재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마.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바. 관련법령, 지주회사의 내규 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 사. 그 밖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해당 안건을 상정할 이사회 개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 또는 당해 회계연도 6월말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 중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 등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기준을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③ 이사회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와 그 실적
  2. 종합적인 경영분석보고
  3. 각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
  4.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외이사(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을 포함한다)가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비영리법인등이 지주회사(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받은 기부금등의 보고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기타 법령, 내부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보고를 요구하거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서 별

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사회내 위원회)** ① 지주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고 상시적으로 운영한다.<개정 2020.03.25., 2021.03.26., 2023.03.24.>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상위원회
5.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6. ESG경영위원회

② 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특별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10조(관계자 출석)** ①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나 외부 관계인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정기이사회는 전 임원이 배석하고, 임시이사회는 안건 관련 임원이 배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이사회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여 모든 이사에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의사록은 제3항에 따라 모든 이사에 발송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의사록 승인 전에 감독기관 제출·등기 등 기타 사정으로 긴급하게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장소)** 이사회는 지주회사 내 이사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① 지주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주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등의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회계·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① 지주회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따라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주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평가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외이사의 보수)** ① 지주회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각 이사회내 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수립하여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주회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지주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지원조직)** ① 지주회사는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지시사항 처리 및 사외이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지원조직으로 이사회사무국을 운영한다.

② 이사회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하는 자는 전략기획부장 또는 별도로 임명하는 자로 하되, 이사회 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개정 2020.03.25.>

③ 이사회사무국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업무 지원
2.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3. 이사회 및 이사의 평가에 관한 실무 지원
4. 이사 선임 관련 실무 지원
5.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부칙<4, 2023.03.24.>

이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시행 2019.01.11.] [규정 2019.01.1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주회사의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설치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이사회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역할 및 권한)** ① 위원회는 관련법령, 내규 등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 및 역량을 갖춘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심사·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지주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임원 후보군 탐색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지주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임원 후보자가 관련법령, 내규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공정하게 검증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 중 사외이사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결의로 선임하되,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서로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추천하는 대표이사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즉시 해당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매년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이사회결의로 선임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결의사항 등)** ①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2. 경영승계규정에 따른 경영승계계획의 수립·점검·보완

3. 후보자의 선정원칙 및 자격요건의 설정

4. 후보자 발굴,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② 위원회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후보자 발굴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내용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단,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9조(관계자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나 외부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 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대표이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공시)** 위원회가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지주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전에 [별표1] 및 [별표2]의 양식에 따라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부칙<0, 2019.01.11.>

이 규정은 2019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내역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내역

I.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

II.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회의 구성		총 00명	
3. 위원회 위원		약력	참석여부
	위원장		
	위원		
	위원		

III. 대표이사 후보자 관련

1. 000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나. 후보자 경력	
다. 후보 제안자	
1) 인적사항	
2) 후보자와의 관계	
3) 추천 이유	
라.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총족여부	총족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나)		
다)		
2) 적극적 요건		
가)		
나)		
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 작성요령 >

1. 'I.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위한 내부 절차를 상세히 기재
2. 'Ⅲ. 대표이사 후보자 관련'은 각 대표이사 후보 별로 작성하며, 'Ⅲ. 1. 다. 후보제안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예비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제안한 자를 기준으로 기재
3. 'Ⅲ. 1. 나. 후보자 경력' 대표이사 후보자의 그 동안의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
4. 'Ⅲ. 1. 다. 2) 후보자와의 관계'는 민법상 친족관계, 고등학교 이상의 교우 관계, 동일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내 근무한 직장관계를 각 기재
5. 'Ⅲ. 1. 라. 1) 소극적 요건'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소극적(결격) 요건과 후보자의 총족 여부를 기재
6. 'Ⅲ. 1. 라. 2) 적극적 요건'은 대표이사 후보자가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
7. 'Ⅲ. 1.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 결과'는 각 위원별 찬반내역을 기재

[별표 2]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내역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내역

I.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

II.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회의 구성	총 00명	
3. 위원회 위원	약력	참석여부
위원장		
위원		
위원		

III. 사외이사 후보자 관련

1. 000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나. 후보자 경력	
다. 사외이사 경력	
라. 후보 제안자	
1) 인적사항	
2) 후보자와의 관계	
3) 추천 이유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 회사와의 관계		
2) 대주주와의 관계		
3) 임원과의 관계		
바.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나)		
다)		
2) 적극적 요건		
가)		
나)		
다)		
사. 사외이사 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2) 적극적요건 충족		
3) 현재 겸직업무		
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 작성요령 >

1. 'I.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는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을 위한 내부절차를 상세히 기재
2. 'Ⅲ. 사외이사 후보자 관련'은 각 사외이사 후보 별로 작성하며, '라. 후보 제안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예비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제안한 자를 기준으로 기재
3. 'Ⅲ. 1. 나. 후보자 경력'은 사외이사 후보자의 그 동안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
4. 'Ⅲ. 1. 다. 사외이사 경력'은 후보자가 지주회사의 사외이사로 일한 경우 근무 기간, 주요 실적 등을 기재
5. 'Ⅲ. 1. 라. 2) 후보자와의 관계'와 'Ⅲ. 1. 마. 3). 임원과의 관계'는 민법상 친족관계, 고등학교 이상의 교

우관계, 동일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내 근무한 직장관계를 각 기재

6. 'Ⅲ. 1. 바. 1) 소극적 요건'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소극적(결격) 요건과 후보자의 충족 여부를 기재
7. 'Ⅲ. 1. 바. 2) 적극적 요건'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과 후보자가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호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8. 'Ⅲ. 1.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3) 현재 겸직 업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50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근무해야하는 모든 업무 및 당해 업무를 위한 연간 근무 시간을 기재
9. 'Ⅲ. 1. 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 결과'는 각 위원별 찬반내역을 기재

## 감사위원회규정

[시행 2020.12.24.] [규정 2020.12.18.,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이하“지주회사”라 한다)의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설치된 감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이사회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역할)** ① 위원회는 관련법령,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 규정」 및 본 규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감사와 이에 부수되는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권한)** ①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구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제공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금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지주회사나 자회사등의 임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이외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독립성)** 위원회는 지주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경영정보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요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지주회사의 임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2장 구성

- 제8조(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위원 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 제9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장 회의

- 제10조(회의 종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결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개정 2020.12.18.>

1. 임시주주총회 및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2.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의견
3.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4.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5.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요청
6.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의 제정 및 개폐
7.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
8. 감사업무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폐
9. 감사업무집행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10. 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 및 성과 평가
11. 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에 대한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12. 관련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
13. 기타 이사회가 위임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12.18.>

1.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4.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5. 자금세탁방지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6. 공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
7. 외부감사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
8.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
9.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10. 감사위원회규정의 개정 및 폐지
11. 그룹내부통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12.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
13.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조직의 업무수행 적정성 평가
14. 관련법령,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15. 기타 이사회가 심의를 요구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4장 감사 및 보고

**제15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위임)**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업무집행책임자에게 위임하며, 감사업무집행책임자는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8.>

1. 위원회가 수립한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보고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그 이행 여부 점검
3. 감사업무관련 지침의 제정 및 개폐
4.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5. 기타 일상적인 감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제17조(직무대행)** ① 사안이 긴급하거나 위원의 사고 등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할 사안을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업무 대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감사업무집행책임자가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18.>

**제18조(이사회 보고)** ① 위원회는 감사 수행결과를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이사회 상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및 검토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이사회에 상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19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감사업무집행책임자는 제16조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을 포함한 중요 업무 수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8.>

**제20조(외부감사인 등과의 관계)**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감사목적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감사보조기구)**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기구를 둔다.

② 감사보조기구에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 전문성 있는 인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록)**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수정 및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사회에 사후 보고한다.

부칙<1, 2020.12.18.>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19.01.11.] [규정 2019.01.1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주회사의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설치된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이사회규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역할)** 위원회는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을 총칭하여 "그룹"이라 하고, 그룹에 속하는 각 회사를 "그룹사"라 한다)에서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 측정,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결의사항)** ①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리스크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가.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나.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라. 그룹리스크관리규정,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폐
    - 마.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2. 리스크측정기준 및 측정방법의 수립 및 변경
  3.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리스크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 승인에 관한 사항
  5.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자금조달계획
  6.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등 적립 기준
  7.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 대상 신용평가 시스템 및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사항
  8.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의사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절차 또는 세부기준 등을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하거나,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 라목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감독당국 규정 등 상위규정의 변경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단

순한 용어·자구 수정은 리스크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하며,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6조(심의·보고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이사회 규정」 제7조(결의사항 등)에서 정한 결의 대상 중 다음 각 목 등을 포함한 그룹 차원의 중요 경영사항에 수반되는 리스크
  - 가. 조직의 변경
    - (1) 지주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분할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 (2) 자회사등이 실행주체인 조직의 변경과 관련하여 자회사등에 대한 자본의 출자 및 신용공여
  - 나. 신사업 진출
    - (1) 자회사등의 설립 또는 편입을 통한 신사업 진출
    - (2) 신사업 진출을 위한 타 금융기관 등과의 업무제휴 또는 자본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협약 체결
  - 다. 대규모 투자
    - (1)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이사회 규정」 제7조제1항제6호라목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 신용공여 또는 투자
    - (2)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중요한 계약 체결(차입포함, 단 용역계약은 제외)
2.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부문별 리스크관리 상태 및 한도관리 현황
2.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가 심의·결의한 사항
3.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
4. 위원회가 심의·결의하거나 지시한 사항에 대한 진행 현황
5. 그룹의 리스크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6. 그룹 내부등급법 대상 신용평가 시스템 및 신용리스크 측정요소에 대한 적합성 검증(Validation) 결과
7.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9조(결의사항의 처리)**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결의사항 및 지시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자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직원 또는 외부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조직)** ①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실무지원을 담당한다.

- ②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준비를 총괄하고 의사진행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13조(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를 두며, 권한의 일부를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부칙<0, 2019.01.11.>

이 규정은 2019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보상위원회규정

[시행 2019.01.11.] [규정 2019.01.1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주회사의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진'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등을 포함하는 자로서 위원회가 결정한 자를 의미한다.
2. '금융투자업무담당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위원회가 결정한 자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이사회 규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역할 및 권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상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및 심의
2. 보상체계와 재무상황, 리스크와의 연계성 및 관련법령, 감독규정 및 지주회사 내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3. 매년 정기적인 보상체계 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4. 이 규정에서 보상위원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
5. 그 밖에 보상체계와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성과보상 및 보상체계 관련 자료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그 밖에 성과보상 및 보상체계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상기 역할과 권한 범위 내에서 자회사등의 보상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하며,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이사회결의로 선임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및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매년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이사회결의로 선임된다.

④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지주회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결정
  2.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평가, 보상의 결정,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3.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보상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5.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자회사 성과평가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 ③ 위원회는 자회사등의 보상위원회(또는 이사회) 결의사항 중 제1항 각호 사안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9조(관계자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0, 2019.01.11.>

이 규정은 2019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시행 2020.03.25.] [규정 2020.0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주회사의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3.25.>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이사회규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역할)**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의 심사·추천과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20.01.28.>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임기는 대표이사 임기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신설 2020.01.28.>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여부 검증

3.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수립·변경

4. 그 밖에 이상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위임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금융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자회사별로 경영승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경영승계계획을 수립·관리할 수 있다.<신설 2020.01.28.>

④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0.01.28.>

**제7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8조(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시기)** ① 경영승계 절차 개시사유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하며, 위원회는 자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또는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되,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2을 초과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1.28.]

**제9조(관계자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나 외부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비상계획)** ①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유고 등의 상황 발생시 경영승계계획을 반영한 비상계획을 실행하고 빠른 시일 이내에 후임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자회사는 대표이사 유고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해당 회사의 정관,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한순위에 따라 직무대행 순위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대표이사의 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하되, 회사의 상무(상무) 범위를 벗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회사 이사회에 결의를 받아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01.28.]

**제11조(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 결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수정 및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사회에 사후 보고한다.

부칙<2, 2020.03.25.>

이 규정은 2020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ESG경영위원회규정

[시행 2021.03.26.] [규정 2021.03.2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이하 “지주회사”라 한다)의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설치된 ESG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SG”란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인 성과 요소인 환경 (Environment)·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영문 약칭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이사회규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함으로써 그룹(이하 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을 총칭하여 “그룹”이라 하고, 그룹에 속하는 각 회사를 “그룹사”라 한다) ESG경영에 관한 방향 및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제5조(권한)** ①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구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룹사가 보유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제공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3. 외부인사(전문가) 출석 및 의견 청취 등
4.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그룹의 임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의 결의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ESG경영 전략 방향 및 정책 수립
2. ESG경영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ESG 관련 그룹사 추진 현황 보고
2. ESG경영 관련 보고서 발간 보고
3. ESG 대외평가 결과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동 보고
4.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관계자 출석)**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룹 임직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안건 관련 임원은 위원회에 배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조직)** ① 지주회사 ESG경영 담당 임원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준비를 총괄하고 의사진행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지주회사 ESG경영 담당 부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실무지원을 담당한다.

**제13조(규정의개폐)**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내규의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따른 단순한 자구수정으로서 실질적인 내용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주회사 ESG경영 담당 임원이 개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칙<0, 2021.03.26.>

이 규정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그룹경영협의회규정

[시행 2019.01.11.] [규정 2019.01.1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금융지주(이하“지주회사”라 한다)와 자회사등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우리금융그룹(이하“그룹”이라 한다)의 기업가치 제고 및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룹 경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지주회사 대표이사, 자회사 대표이사 및 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지주회사 대표이사로 한다.  
 ③ 지주회사의 부서장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설명을 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조(소집)** ① 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일시와 장소는 의장이 지정하며,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사전에 각 위원 및 참석자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소집 예외적용)** ① 의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서 정한 협의사항의 관련정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석 대상자를 한정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회 참석 대상자는 의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한다.

1. 그룹 전략, 비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과 관련된 사항
2. 그룹 전략 실행을 위해 지주 및 그룹 내 협조·조정 필요한 사항
3. 시너지 창출 극대화 등 그룹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자회사의 경영현안으로 그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그룹 차원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내부 회의기구 운영)**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부에 별도 회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회의기구의 구성, 회의개최, 운영방법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협의회 결과시행 등 보고)**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실행하기로 협의된 사안에 대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로 하여금 협의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의장 또는 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작성)** 주관부서장은 협의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0, 2019.0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경영승계규정

[시행 2020.01.28.] [규정 2020.01.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주회사 최고경영자 자격요건과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주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1.28.>

**제2조(적용범위)**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이사회규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규정 내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또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정의를 따른다.<개정 2020.01.28.>

**제4조(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그룹의 장기비전 기반 위에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승계계획을 수립·관리한다.<개정 2020.01.28.>  
②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0.01.28.>

**제5조(자격요건)** ① 최고경영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0.01.28.>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③ 최고경영자 선임 및 재선임시 연령은 만 70세 미만이어야 한다.

**제6조(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발하며 후보군 선발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01.28.>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대해 매년 검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01.28.>

**제7조(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시기)** ① 경영승계 절차 개시사유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또는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01.28.>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 후임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이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사임, 해임, 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다.<개정 2020.01.28.>  
③ 회사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

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의 운영 및 향후 최고 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관련법령 및 내규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01.28.>

**제8조(후보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각종 평가와 검증 등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추천한다.<개정 2020.01.28.>

② 관련법령, 회사의 정관 및 내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고,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한다.<개정 2020.01.28.>

**제9조(비상계획)**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유고 등의 상황 발생시 경영승계계획을 반영한 비상계획을 실행하고 빠른 시일 이내에 후임 최고경영자를 추천한다.<개정 2020.01.28.>

② 최고경영자 유고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직무대행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20.01.28.>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최고경영자의 일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하되, 회사의 상무(상무) 범위를 벗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의 결의를 받아 결정한다.<개정 2020.01.28.>

**제10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①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이사회 담당부서로 한다.

②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11조(제정 및 개폐)** ① 이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수정 및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사회에 사후 보고한다.

부칙<1, 2020.01.28.>

이 규정은 2020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 중임 사외이사 검토보고서



##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 검토 보고서

대상자	종합 의견
정찬형	적합

본 위원회는 상기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2023년 3월 2일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장 동 우

사외이사 후보	정찬형	검토의견	적합
---------	-----	------	----

1) 소극적 자격요건 심사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충족	법령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2) 적극적 자격요건 심사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가. 전문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충족	금융·재무 분야의 충분한 역량 및 전문성 보유
나. 직무공정성 (정관 제38조 제1항)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정관 제38조 제1항)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정관 제38조 제1항)	충족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3) 사외이사 평가결과

평가결과
<p>기업 경영인으로서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업 전반에 대한 높은 지식과 업무 이해도가 탁월합니다. 특히 정보수집력과 분석력이 뛰어나고 경영 현안 관련 이슈 및 의사결정이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잡힌 의견을 제시하는 등 그룹 재무 및 감사관련 논의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위원장으로서는 그룹 재무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등 회사의 건전경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세심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적극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선보이며 사외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p>